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2015 정보공개 사례집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2015 정보공개 사례집



Contents

- A		
제1장	정보공개는 인권이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김유승)	16
투명 서울로 나아가다	최근 정보공개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평가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경건)	22
	영업의 비밀과 정보공개의 기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광윤)	32
71071	 정보공개의 원칙	44
제2장	개인에 관한 사항	51
주제별 정보공개 사례	공무원 관련 정보	54
	회의 관련 정보	56
	업무추진비	63
	사업 관련 정보	68
	부존재 정보	73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75
	정보의 공개방법	77
제3장	 [©]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82
	⁹² 국방 등 국익침해	106
정보공개 분야 결정례	⁹³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141
	⁹⁴ 재판 관련 정보 등	152
	⁹⁵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176
	⁶⁶ 개인의 사생활 보호	231
	♡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293
	[∞]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357
	⁹⁹ 정보부존재 등 기타	396
71] 4 7 }		446
제4장	2013년도 개최내역	45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4년도 개최내역	464

판례 목차

01_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호	
의 타인이 제출한 민원 내용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제주) 2013누88] 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대법원 2010두2913] 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사업개시 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5855] 의 타인이 제출한 민원문서(진정서)와 답변서(개인 신상정보 제외)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1-192]	83 89 95 98
<u>☞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법령 해석례 11-0350]</u>	104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법령 해석례 11−0348]	10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법령 해석례 11-0345]	104
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법령 해석례 11−0014]	105
02_ 국방 등 국익침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2호}	
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침 및 라오스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서 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140]	107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원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999]	110
[™] 한 · 미 FTA에 관련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 한 · 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 · 교환된 문서	11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478]	
역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교신문서 등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130
03_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의 제보자의 신원정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466]	142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약력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147
04_ 재판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4호	
	1.50
[©] 농지취득자격, 취득농지의 사후관리, 직불금 관련 자료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353] ☞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관련 자료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028]	153 157
☞ 일차계획한기, 전치전용하기, 중치전용하기 전한 자료 [경구시공합된 2012구합2026] ☞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161
● 교도관 근무보고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대법원 2009두12785]	170
THE CITTO IN CONTROL OF THE CONTROL	170
05_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의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대법원 2013두20301]	177
◎ 방송문화진흥원 이사회 회의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80847]	182
[™] 본인이 제출한 답안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36]	187
^열 내부 감사과정에서 제출된 경위서 [대구고등법원 2012누2796]	190
^쁘 세부항목별 근무성적평정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656]	196
쁘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6364]	202
□ 문제은행 출제방식 국가시험의 문제지, 정답지 [대법원 2006두15936]	206
[∞] 본인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	209
약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의결과,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273]	213
¹⁹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대법원 2002두12946]	219
^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 위촉현황, 임용시험 공고문, 타응시자 필기시험 점수 및 면접시험 평가결과 등 [중앙행정시판위원회 2009–20126]	223
[중앙행장심펀쉬현외 2009-20120]	
06_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6호}	
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첨대상자 명단 및 체력검정기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4-338]	233
= 기단세근도시 제공 구급대경시 경근 및 제국급경기국 [시골득골시경경급단위전역 2014~300] ≌ 방송사업 신청법인의 주주구성, 지역적 · 문화적 · 사회적 기여 실적 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890]	236
의 민사 및 행정소송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923]	247
의 1년동안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434]	251
[™] 공공기관 청사 CCTV녹화물 [대법원 2012두25729]	255
[™]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사, 진술조사 [대법원 2011두2361]	259
♥ 타인의 민원상담 내용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221]	27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원의 주소, 주택 유무 및 전(월)세 금액, 월수입 등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575]	274
^쁘 검사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개인식별정보 제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276
[™] 사업제안서 및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9463] [™] 건축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3-768]	283
	287

07_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7호	
의 법인택시 사업장별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및 보수총액신고서 등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20]	294
의 문전기사 개인별 운송수입현황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248]	298
☞ 용역 원가산정내역서, 용역계약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059]	300
● 아파트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대법원 2011두4602]	303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공사비 명세 [대법원 2010두24647]	307
™ 방송사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 등 [대법원 2008두13101]	309
의 네 사업 추진현황 및 실시협약서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317
[™]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2398]	322
☞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327
™ 택시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7528]	334
-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 관련 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4651]	341
™ 법률자문 의뢰 내용, 자문결과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계약서 작성일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5236]	349
¹³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법령 해석례 11-0395]	356
¹⁴ 집행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법령 해석례 06-0037]	356
08_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정보공개법 제외조제(항제)호호	
^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기품목 리스트 등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358
^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내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7824]	363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관련 자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6580]	368
⁶⁴ 주택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5150]	373
[∞] o o 풍력발전 관련 불협의 공문 일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9174]	382
⁶⁶ 전국 국유림 목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09112]	386
☞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건설원가 관련 자료, 시공사 관련 계약서, 건축비 산출내역서 등	39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02297]	
09_ 정보부존재 등 기타 ^{정보부존재 등 기타}	
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포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396
역 법인카드 집행내역(형식적으로는 공개처분이나 실질적으로 거부처분인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20698]	403
☞ 종교인 개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06
[대법원 2013두4309]	
역 민원처리경위를 일지형식으로 저장한 자료 (내부적인 용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3833]	410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 [대법원 2008年8680]	413
[®]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416]	415
 쯔 정보공개처리대장,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등(부분공개의 의미, 정보보유의 입증책임) [대법원 2003두12707] ☞ 감사에 적발되어 처범받은 내역서(부존재 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6077] 	418
	428
[®] 공중연결통로 허가현황(부존재 정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4─200]	431
¹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자료(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3─10965]	434
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법령 해석례 14-0292]	438
² 공개여부 결정 관련 시행문 [법령 해석례 13-0423]	438
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 [법령 해석례 13-0362]	439
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사록 [법령 해석례 13-0110]	439
¹⁵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법령 해석례 12-0195]	440
¹⁶ 의원의 서류제출요구 [법령 해석례 12−0203]	440
[™] 정보공개법상 문서의 결재여부 [법령 해석례 12-0188]	441
¹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의 공개 요청 [법령 해석례 11-0698]	442
¹² 민사소송법 제162조 [법령 해석례 11−0457] ²⁴ '동일한 민원' 및 '지체없이'의 의미 [법령 해석례 11−0134]	442
** 공일인 인편 및 지세없이의 의미 [합당 해석례 N=0.54]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법령 해석례 07=0376]	443 443
~ 의현의 지유제굴 요구 [합당 예식례 07~0576]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는 정보의 공개 [법령 해석례 06~0058]	444
	777

Index

가격		38, 39, 68, 69, 78, 79, 164, 168, 169, 303~305, 322~325, 357, 361, 362, 373, i~378, 380, 381, 393, 394, 448, 460, 463
가족		53, 59, 91, 108, 260, 262
가치	판단	60, 170, 180
간담호	<u>ā</u>	64, 65, 332, 404
감정	평가서	322, 369, 370, 372, 377, 393, 456
강연기	다	244, 245
개발	부담금	70,320
개발기	데한구역	375~377
개인	식별정보 261	25~27, 86, 232, 241, 250, 259, , 263, 266, 272, 276~278, 280, 420, 426
개인경	정보 보호밭	건 72, 265, 397, 401, 402
건강	34, 3	5, 53, 260, 262, 293, 311, 315, 346, 353, 355, 362, 371, 454, 470
건설원	원가	39, 392, 393, 395
건축물	물(관리)대경	장 74, 370, 433, 431
건축	4	392, 394, 395
건축설	설계도	287, 289, 291
건축설	심의회	288
건축	<u> </u>	287, 289, 291, 471
건축	허가	288~290,471
검토기	7	434, 436, 437
격려		39, 64, 65, 66, 332, 333
결산		37, 56, 184, 325, 419, 422~424
결재		45, 46, 410~412, 434, 436, 437, 441, 452, 465~467, 469, 471, 472, 474~477
결정	통지서	117, 118, 251~254, 284, 337, 351, 375, 383, 388, 393, 404, 434, 436, 437
경력	53	3, 179, 211, 244, 260, 262, 448, 451, 456
경위/	Ч	190~194, 461

계약금액	356
계약단가	356
계약서	270, 300, 349, 352, 355, 369, 370, 392, 447, 459, 476
계좌번호	38, 53, 66, 67, 245, 327, 328, 333, 370~372, 468
고소	25, 76, 158, 160, 170, 171, 173, 190, 191, 193, 194, 259, 260, 269, 335, 336
공개방법	22, 47, 77, 415, 417, 420, 435
공고문	223, 224, 459
공공복리	45, 315
공공성	70, 205, 276, 277, 281, 314, 320
공동주택	377, 381
공문(서)	173, 382, 383, 411, 434, 438, 446, 450, 452, 453, 460, 462, 465, 467, 471
공사비	40, 71, 307, 308, 392, 395
공시제도	78, 79, 303, 305
공영방송	314
공용문서	46, 115, 121
공익법인	34, 245, 307, 311, 314, 319
공익사업	35, 69, 305, 322, 325
공인	37, 284, 472
공적심사위원회	60, 177~180
공적인 임무	223, 229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91, 366, 406, 473
공직자	151, 276, 277, 279, 281
공표 1	7, 64, 122, 125, 148, 231, 255, 277, 332
과세	95~97, 113
광고	356, 452
교도관	170~174

¬.H	440 447 404 407 407
교섭	112, 117, 121, 125, 126, 132, 133, 136, 138, 335, 338, 339
교육	21, 37, 53, 83, 196, 197, 199, 200, 207, 209~212, 224, 260, 262, 338, 457, 475
교정	58, 73, 152, 162, 167, 170~174, 419, 421~427
구체적 위임	22, 57, 378
구체적인 이익	106, 113, 138, 140
국가기밀	356, 386, 387, 390
국가안전보장	45, 106~108, 130, 131, 138, 144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 53, 274, 275
국민신문고	352, 354
국세	96, 97, 105, 408
국세기본법	95~97, 104, 105
국유림	365, 384~390
국유재산	363~365, 367, 384, 386~389
국유지	367, 386, 387, 389, 390
국제중재기관	112
국제중재신청서	110
국토계획법	434~4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4, 435, 437
국회법	440, 441
권리(의)남용	23, 24, 76, 254, 313, 336, 413
권리보전	367, 384, 387, 389, 390
권익	52, 84, 86, 98, 99, 101~103, 139, 272, 315, 476
근로소득	407,408
근무보고서	170, 171, 173, 174
근무성적평정	53, 54, 196, 197, 200, 210~212
근무지	55, 456
근무평정	209~212
금품	64~66, 135, 278, 330, 332, 333, 338
기간제근로자	233, 234, 235

	기능분류모델	283~286, 455
	기록물대장	411
	기본권	16, 17, 21, 44, 45, 48~50, 120, 130, 138, 171, 172, 243, 261, 281, 296
	기술능력	341~344, 347
	기초자료	73, 74, 200, 256, 328, 331, 380, 407
	기출문제	208, 473
L	낙찰	300, 341, 347
	납세자	95, 97, 104, 213
	내부감찰조사	191, 194
	노동조합	335~337, 339, 340, 468
	노조	335, 338~340
	논술형 시험	188
	농지보전부담금	70, 320
	농지전용허가	157, 160
	농지취득자격	153, 156
⊏	다면평가	196, 197, 199, 200
	단면도	287, 289, 291
	단체교섭	335, 338, 339
	단체협약	334~340, 468
	대부계약	363, 364, 367
	대여금	159, 160
	대외비	117, 118
	대출	36
	대표이사	53, 184, 243~245
	대표자	52, 213, 272, 277, 281, 449
	도덕성	277, 279, 281
	도면	39, 74, 287, 289, 291, 431, 433, 452, 458, 465, 470, 471

72, 270, 397, 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	449, 457	민원상담	52, 214, 270~272, 455
	도시계획	41, 157, 382, 383, 436, 437, 440, 457, 473		
	도시계획위		발언내용	57, 58, 60, 61, 174, 179, 203~205, 219~221, 459, 472
	도시정비법		발언자	60, 61, 179, 202~205, 219~221, 447, 470
	동일한 민원	원 443	방어권	87, 166, 267, 459
	동종 업무	193, 380	배치도	287, 289, 291, 474
	등기부등본		법규명령	82, 89, 91, 376
	디지털예신	· 한회계시스템 365~368, 390	법률상(의) 이 303, 3	의 30, 49, 77,123, 132, 133, 215, 295, 304, 309, 310, 327, 329, 336, 378, 406, 407
2	로비	30, 61, 149, 150	법률자문	349, 352, 354, 457, 460
			법익	48, 142, 145, 171, 172, 231, 296, 350
0	마진	392	법인등록번호	243
	매뉴얼	107, 477	법인카드	403, 404
	онон	322, 324, 325, 373, 374, 376~378, 380, 381	병역	53, 260, 262
	매점매석	357, 359, 361, 366, 367, 369,	보도자료	120, 404
	매출	371, 374, 377, 379, 382~390 36, 37, 39, 405	보상비	40, 303, 392, 394, 476
	면적	155, 156, 290, 322, 324, 363, 365,	보수총액신고) 294
	_ '	367, 376, 381, 384, 388, 390, 399	보안림	383, 389
	면접	223~230, 457, 470, 471	보조금	38, 57, 70, 320, 428, 460, 466
	명단	38, 62, 147, 150, 151, 179, 202, 227, 233~235, 283, 284, 363, 364, 367, 399, 408,	보직	55, 456
		6, 447, 450, 454, 456, 460, 461, 467, 468, 472	본적	53, 260, 262
	명부	72, 211, 396, 397, 398, 399, 400, 402, 456, 469, 476	부작위	124, 126, 365, 378
	명예회복	52, 272	부존재 455, 45	18, 30, 31, 72, 428, 429, 431, 447, 448, 58~460, 464, 467~469, 470, 471, 473, 474
	명예훼손	87, 271	북한이탈주민	107~109
	문제은행	206~208	분양가	39, 57, 78, 79, 303, 305, 374, 376, 392, 393, 395
	문제지	206~208	분양가상한저	78, 79, 303, 305, 377
	민간투자비	318, 319	분양가심사우	l원회 57, 374~377, 379, 380
	민간투자자	308	분양계약	160, 393, 394
	민사소송법	78, 140, 146, 333, 442	분양원가	39, 48, 69, 303~305, 395
	민원사항	52, 84, 85, 98, 99, 101, 102, 105, 474	불기소처분	25, 191

	불복방법	185, 405	설립목적	적 49, 183, 215	
	불복절차	185, 186, 269, 405	성적	53, 54, 189, 196, 197, 199, 200, 210~212, 234	
	불필요한 논란	60, 180	세금계신	산서 245	
	비공개요청 287, 290,	48, 49, 52, 99, 101, 113, 158, 272, 291, 296, 297, 369, 413, 414, 444, 460	세부기준		
	비교·형량 :	36, 41, 45, 130, 138, 235, 323, 326, 362	소 제기	75, 76	
	비밀유지의무	68, 87, 318, 321, 369	소득세	406~408	
			소유권	155, 156, 317, 319, 387, 389, 390, 454	
Ļ	사면권	62, 148, 151	소유주	372, 432, 473	
	사업계획서	217, 238, 239	소의 이	[일 122, 310, 312, 313, 330	
	사업시행자	70, 72, 156, 303, 319, 320, 399~401	소재지	155, 156, 365, 384, 388~390	
	사업실적	352, 355, 463	손해배성	상 75,76,87,131,132,135, 137~139,145,159,182,185	
	사업자 선정	237, 243, 244, 343, 344, 463	수도권	375~377	
	사업자등록번호	40, 333	수령 방법	반법 252~254	
	사유림	384, 387, 389, 390	수령자	39, 64, 65, 330, 332	
	사회간접시설	71,308	수사기록	록 23, 268	
	사회단체	53, 57, 213, 260, 262	수사절치	차 268	
	사회적 지위	51, 231, 280, 476	수상자	244, 245	
	산재보험	294, 296	수의계약	약 350	
	산지전용허가	157, 160	수익금	419, 422, 423, 461	
	산출내역	39, 69, 305, 322~326, 392, 393, 395, 447, 469	수험번호	호 53	
	상벌	53, 55, 200	승진	53, 55, 196, 198, 200, 209~211, 455	
	상호(商號)	40, 66, 67, 333	시공사	392	
	상훈	53, 244, 262	시행문	438	
	생년월일	53, 244, 282, 400	신념	51, 231, 277, 280	
	서류제출요구	440, 441, 443, 444	신뢰성	111,207,210	
	서면결의서	72, 398, 439	신문구독	독현황 419, 422, 426	
	서훈	177~179	신문조시	선 25, 53, 259, 260, 261, 263, 266~269	
	선정업체	342~434, 459	신상정보	보 52,57,61,62,84,86,98~102,105, 150,223,229,272,298,349,367,401,476	
	설계감리비	392	신용	36, 268, 293, 340, 346, 354	
	설계도	39, 287~292	실시설계	계 68, 162, 164, 165, 168	

	실시협약서	40, 68, 71, 307, 308, 317, 318, 321, 470, 475		_
	심의자료	434, 435		_
				_
0	약력	62, 147, 149, 151		C
	업무추진비	38~40, 63, 64, 327, 328, 330, 331, 404		C
	여권번호	236, 239, 243, 246		Ċ
	연락처	53, 143, 146, 260, 262, 266, 283, 286, 306, 436, 437, 456, 472, 473		0
	연찬회	64, 65, 332		
	영수증	245		
	영업소명	66, 67, 333		
	예금	36, 135, 136, 324, 370~372		
	예산서	184, 214, 419, 422~424		0
	예산요구서	213~218		E
	예산집행	63, 318, 328, 332		E
	외교기밀	136, 139		E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 300~302	_	
	운송수입금	298, 299, 338	Χ	7
	원가산정내역	300~302		7
	원본 46,11	5, 121, 257, 309, 312, 360, 362, 462, 470		7
	위임 18	3, 22, 57, 59, 82, 84, 85, 89, 91, 92, 98, 99,		7
		101~105, 126, 203, 291, 366, 374~376, 378, 379, 423, 469, 475		7
	위촉	61, 150, 223~226, 228~231, 284, 286, 346, 366, 472		7
	유권해석	98, 186, 435		7
	유류비	298		J
	응시자	189, 223, 226, 230, 233~235		J
	의견청취	49, 100, 352, 465, 468		J
	의사개진	56, 184		J
		72, 132, 134, 135, 137, 184, 186, 439, 468		J
	의약품	359, 360~362, 466		2
		, , , , ,		2

의원	18, 203, 205, 217, 440, 441, 443, 448
의정비심의위원	호 202, 203, 205
의정활동비	203, 205
이메일	46, 107, 183, 410~412, 434, 435
이사회	56, 72, 182~186, 237, 463
익명	60, 180, 271, 453, 474
인사정보	55
	2,53,75,204,205,219,220,259~261, 270~272,279,330,448,449,452,458
인터넷	16, 77, 148, 309, 310, 312, 399, 442
일괄입찰공사	68, 162~164, 168
임금협정서	334, 337, 338
임야대장	386, 387, 390
입면도	287, 289, 291
입주자대표회의	98~100, 102
입증책임	30, 48, 73, 74, 122, 418, 421, 422, 429

	자격시험	187
	자기결정권	243, 267, 268, 359
	자문	62, 149, 151, 349, 351, 352, 354, 434, 453, 454, 456, 457, 460, 472
	자본금	39
	자산	36, 39, 456
	자유무역협정	114, 116, 127
	자치위원회	58, 59, 89~93, 452, 465
	재건축	40, 72, 270, 446
	재량권	22,77,417,435
	재무모델	70, 318, 320
	재소자	23, 73, 152, 170~172, 418, 421~424, 426
	재판기록	78, 111
	적격심의	163~165
	적법성	31, 41, 173, 198, 210, 212, 363

전과	53, 260, 262
전자적 형태	73, 122, 256, 258, 406, 407, 436
전화번호	53, 72, 75, 126, 275, 396~402, 436, 437, 456, 458
절차적 하자	49, 118, 124
점수	189, 199, 200, 211, 223, 224, 342~344, 346, 457, 463, 475
정관	56, 184, 214, 447, 467
정답지	206~208
정보공개처리대장	418~421
	24, 44, 45, 49, 50, 77, 92, 101, 130, 4, 310, 312, 313, 327, 329, 339, 359
정보의 범위	26, 47, 102, 105, 254, 264, 265
정보의 존부	29
정보자유법	16
정보접근권	16, 17
정부3.0	18, 19
제3자 의견서	100, 289, 337, 351
제보자	142~146
제안서 283	, 284, 342~344, 455, 467, 473, 474
조성원가	322~326, 392, 395
조세	70, 97, 320
조합설립	52, 270~272, 396, 398, 400
조합원명부	72, 396~402, 456
조합해산동의서	399, 400
종교	34, 35, 53, 260, 262, 406~408
주관적 판단	54, 60, 178, 180, 188, 189, 211
주민참여예산제도	215
주택공급계약	376
주택임대차보호법	438
주행거리	299
증거자료	140, 154, 272

증명책임	29, 30, 304, 418
지방자치	법 205, 443, 444
지방재경	운영 213, 215, 216, 218
지번	90, 365, 367, 384, 389, 390, 399, 454, 455, 476
지체없이	48, 101, 354, 414, 443
지출증당	46, 65~67, 332
직급	226, 436
직업	53, 75, 230, 231, 250, 260, 262, 266, 281, 284, 286, 346, 366, 407, 408, 448
직위	53, 55, 211, 223, 229, 231, 242, 243, 276~280, 86, 366, 408, 436, 447, 448, 456, 461, 462, 476
직접공기	비 392, 395
진료비	136, 419, 422, 424, 425
진술조기	25, 53, 259, 266~268
진정서	98~100, 102, 191, 194
집행내역	236, 318, 329, 330, 403, 404
징계	53, 55, 58, 87, 93, 276~282, 338, 429, 455, 462
징벌	58, 170~175
착수계	283, 284, 455
참석자	57, 64, 65, 179, 330, 332, 436, 449
참여인력	283~285, 445
채용	233~235, 455, 462
채점결과	187~189, 223, 224~226, 228, 230, 342
초안	56, 116, 185
추가경정	예산 213, 214
추정금역	68, 69, 161, 162, 165, 167, 168
출생지	53, 244
출연금	39
출자내역	40
출자액	53, 242, 243

56, 70, 183, 184, 318~320, 475

출자자

	취득가액	323, 325
	취득농지	153, 156
	취합	74, 214, 431, 433
₽	컴퓨터	73, 74, 256, 257, 360, 407, 410, 411
E	탈북(민)자	107, 108
	택시	39, 40, 294, 296, 297, 334~336, 449, 450, 453, 460, 463, 466, 474
	택지분양가	392, 395
	택지수용가	392, 394, 395
	택지조성비	40,303
	턴키방식	68, 163, 165
	토지등소유자	72, 396, 398~402
	토지매입비	306
	통계자료	425, 426, 454
	투자협정	110,113
	특별사면	61, 148~150, 151
п	판결문	247, 248
	평가결과	189, 223, 225, 230, 344, 346, 448, 463, 476
	평가기준	188, 189, 197, 223, 230
	평가점수	343, 344, 346, 463
	평면도	287, 289, 291
	평정결과	54, 200, 209, 211, 457
	폐기	30, 73, 192, 295, 418, 421, 422
	표현의 자유	17, 44, 45, 50, 113, 138
	프라이버시	267, 268, 329, 330
	필기시험	223~228, 230
ਰ	학교폭력	58, 59, 89~93, 452, 453, 465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원회 60,219,220
한·미FTA	115~117, 119~122, 125, 127
한일회담	130~134, 137~140
(불)합격자	189, 223~228, 230
항고소송	22, 85, 123, 166
행복추구권	50, 210, 212
행정감시	367
협정문	116, 117, 120, 122, 125, 127, 129
형사고발	145
홍보	64, 65, 332
확정일자	438
회계정보	245
회의결과	57, 379, 434, 436, 447, 457, 458, 465, 469, 470, 471

기타	4대강 정비	사업	161~163
	BTL		70, 71, 317, 319, 321
	CCTV(A A	티 <u>브</u> 이)	53, 255, 256, 257, 258, 470
	FTA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7
	WTO		120





제1장

투명 서울로 나아가다

정보공개는 인권이다	16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김유승)	
최근 정보공개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평가	22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경 건)	
영업의 비밀과 정보공개의 기준	32
(110 = 111 = 12 12 12 12 12 12 1	

정보공개는 이권이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김유승



♣ 정보공개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이다

1766년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제도가 스웨덴에서 법제되었다. 그리고 지난 250여 년,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세계 각국으 로 확산되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미국의 정보자유법', 1992년 '유럽연합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선언' 등, 20세기를 관통한 정보공개의 발전 은 괄목할 만하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었던 초기 정보공개제도는.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제도를 바탕으로 한 접근과 이용의 개념으로. 다시 선제적, 능동적 정보공개에 기반을 둔 공유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21세기의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동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로부터 촉발되어 세계적 트랜드로 자리잡은 정부2.0은 이 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가 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 에, 누구나 정보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 한 핵심 정보는 일반 시민의 손길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다. 인터넷, 소셜네 트워크, 미디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와 소수의 사람들만 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간의 양극화는 해소되고 있지 않다. 정작 알아야 하 는 또는 알고자 하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되어 있고, 시민들이 가지는 합당한 의구심과 다양한 의견들이 '괴담'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여전 히 다수의 정보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로 남아 있다. 그들이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기만을 기다리기도 난망한 일이다. 정보의 독점이 권력과 자본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의 수요와 응답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정보공개의의미는 단순한 정보접근권을 넘어서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사회의 시민이 누려야할 모든 기본권의 내재적, 묵시적 전제다. 수동적 자유권과 적극적 사회권이 복합된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출발점이자, 이를 구성하는 불가결의 요소다. 정보공개와 정보자유는 21세기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보공개는 어디에 와 있는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잘 보호되고, 행사되고 있는가? 무엇이 정보의 접근을 막고, 우리의권리를 제한하고 있는가? 숱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 정보공개 어디만큼 와 있는가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법제화 한 지 20년이 지났다. 1996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법제화는 전 세계 13번째였다. 1999년의 일본, 2000년의 영국, 2005년의 독일보다 빨랐다. 시작만 빨랐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전부개정된〈정보공개법〉은 기존 비공개대상 정보의범주를 축소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를 명시하였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각급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프리즘, 알리오, 내고장살림, 클린아이 등 행정정보 사전공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2회 연속 전자정부 지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우리 정부의 저력은 정보공개 영역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2006년 참여정부는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검색으로부터, 청구, 접수, 결정통지, 수수료납부, 열람에 이르는 정보공개 전과정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했다. '열린정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웹

서비스는 이명박정부에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행정정보 원문 공개 서비스를 탑재한 '대한민국 정보공개포 털'로 확장되었다. 정부3.0 정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 중심으로' 라는 정보 공개의 3대 원칙을 통해 '투명한 정부' 구현을 천명한 바 있다.

정보공개청구의 양은 가파르게 상승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전부 공개율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13년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집계된 전부공개율은 중앙행정부처 74%, 지방자치단체 90%, 교 육청 89%, 공공기관 92%로 평균 87%이다. 이러한 법령과 제도, 슬로건, 지 표들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 다. 적어도 겉은 번드르하다. 하지만 한 겹만 들추어보면 제도의 운영은 사 뭇 다른 모습이다. 2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는 문화로 안착되 지 못했다. 시민들에겐 여전히 낯선 제도로, 공공기관에겐 그리 즐겁지 않은 업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법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는 공적 행위를 귀결된다. 그리고 그 공적 행위는 본연의 취지에 따라 시민을 위해 복무한다. 이것이 법이 제도로. 제도가 행위로. 행위가 문화로 성장하는 과 정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스물 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이제야 걸 음마를 떼고 있다.

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주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은 새 삼스럽지도 않다. 업무 편의성에 대한 우려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지 장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일단락된 의사결정을 과정 중의 것으로 확대 해석 하기도 한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 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정작 적 용 법률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의 공개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 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회의원실 에는 군말없이 제공했던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는 비공개하기도 한다. 대다 수 서면으로 진행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회의체로서의 합의 과정에 대한 생 략은 물론, 심의결과에 대한 공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 보공개포털 서비스의 부실과 기술적 결함은 다수의 연구와 시민단체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나타나는 높은 정보부존재

결정 비율은 정보공개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변화는 미미하다.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없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분야에서 7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세계 144개국 중 133위를 차지했다. 과연 우리가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인지 의심스럽다.

♣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의 교훈

한 때 서울시는 정보공개에서 최악의 기관 중 하나로 꼽혔다. 정보 공개 순위는 늘 하위권에 머물렀고,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이 내 려진 정보의 공개를 미루고,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다가 시민단체의 위자료 소송에 패소하기도 했다.

이랬던 서울시의 정보공개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던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매번 격론이 벌어졌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부서 담당자들과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조항에 대해 토론해야만했고, 왜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설득하고 이해시켜야했다.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업무의 과중과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업무의 과중 여부가 정보공개 심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노릇이었다. 4시간 넘게 심의회가 진행된 적도 드물지 않았다.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평균 회의시간은 수년에 걸친 정보공개의 경험과 이해의 축적 덕에 점차 짧아졌다. 정보공개제도의 기초부터 논의해야 하던 곤혹스런 일들이 점차 줄어들었고, 담당자와 심의회가 합리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도 한결 개선되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변화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다.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선도적 정보공개정책을 가시화 하였다. 첫째, 시 민사회 중심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였다. 기관의 내부의 의견보 다는 외부의 의견이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심의회가 구성되었고, 기 관 내부 위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관례도 없어졌다. 둘째, 심의회 운영방식을 전면적 대면 회의로 전환하였다. 서면 심의가 지닌 소통의 한계 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기적 심의회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인력풀 을 확보하고, 두 개의 심의회를 가동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비공개 결정한 청구를 직권 심의하고 있다. 담 당부서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비공개를 근절하고자 하고. 서울시 전반의 정 보공개율 상승을 도모한 조치다. 최근 직권 심의 건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가 담당부서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비율이 상당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단위 부서의 인식의 확산과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보공개정책과 운영을 전담하는 정보공개정 책과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를 둔 것은 최초의 사례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방대한 산하기관과 조직을 거느 린 광역자치단체로서 여전히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의 정보공개 정책 방향과 의지가 산하 모든 기관의 단위 부서까지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보공개에 있어 최근 몇 해 동안의 행 보는 최고의 모범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이러한 정책과 구체적 실행의 지속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다. 필 자는 정보공개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공공정보 품질 제고.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정보공개 제도 개선"은 공공정보의 생산단계부터 업무처리부서에서 공 표, 공개, 비공개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체적인 정보공개표준안의 마련, 그리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법률, 조례, 규칙 등의 지속적 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공공정보 품질 제고"는 기록관리 실태조사와 기록생산 및 관리과정 개선이 전제될 때 가능한다. "조직 문화 개선"은 가장 넘기 어려운 과제다. 구성원들의 정보 공개, 공유, 활용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개선하고, 실제 업무처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 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직무 연수과정에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고, 다양한 교육 보조 매체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이들 각각의 과제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과제는 또 다른 과제의 전제 조건이 되며, 한 과제의 부재는 또 다른 과제의 실패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조직문화의 개선이 있을 때, 일상 업무로서의 공공정보의 관리 강화와 공개 확산이 가능하다. 개선된 제도 역시 조직 문화가 뒷받침해줄 때,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감히 말한다. 오랜 세월 속에 다져진 기관의 문화와 업무 관행이 이 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이다. 변화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다. 21세기 민주사회의 기본권, 21세기 민주시민의 인권을 위해, 정보공개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이제 어렵사리 한 걸음 옮겨놓았을뿐임을 잊지 말자. 혹시라도 이 걸음을 멈추라 할지 모른다. 되돌아가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시작된 변화의 흐름은 이어져야 한다.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말하지 말자. 갈 길이 멀다.

최근 정보공개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평가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경 건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을 통해 정보공개법의 적용 · 해석과 관련한 의미 있는 판단을 해왔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및 시행 이전부터도 공문서열람·복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정보공개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시행 초기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에 매우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 된다. 특히, 1998년부터 2003년에 이르는 정보공개법 시행 초기 몇 년 동안 당시의 대법원이 형성한 판례이론(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한 판결, 개별법에 의한 비공개사유의 확장에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본 판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 다가 비공개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판결 등)은 2004년 정보공개법 전부 개정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선도적이었다.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평 가는 이처럼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근래 대법원의 정보공개 관련 판결들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종래의 판례를 기본적으로는 답습하고 있기 에. 여전히 정보공개에 우호적 또는 적어도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몇몇 쟁점 또는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에 소극적 또는 적어도 조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근래 여러 영역에서 지적되 고 있는 사법부의 보수화와 전반적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최근 2~3년 동안 대법원에서 선고한 정보공개 관련 판결 가운데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쟁점이나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것들 그리고 시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사회적 주목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개인적 평가를 간단히 덧붙이고자 한다.

♣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의 허용 여부

먼저 소개할 사안은 복역 중인 재소자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수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이다. 이 재소자는 복역 중 수백 회에 걸쳐 다수의 국가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해 왔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다.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출석하기 위해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백만 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이 판결은 권리남용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최초 의 사례일 듯하다. 종래에도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배경으로 한 판례는 여럿 있었으나, 특정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종래 정보공개청구권 의 남용이 문제된 것은 '오로지 공공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 개를 청구한 경우'뿐이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악용 한 부당이득'의 경우도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사례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 미가 있다.

행정실무에서는 이른바 악성민원인에 의한 권리남용적 정보공개청구의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공공 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로부터의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입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이 명 확하지 아니할 경우, 오히려 '권리남용'을 핑계로 성가신 정보공개청구에 공 공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 인다

이번 판결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의식한 탓인지, 권리남용에 해당함이 '명 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권리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①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우 및 ② 오로지 공 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의 두 가 지를 예시하고 있다. 이 사안은 정보공개청구의 동기와 관련하여 ①에 해당 하는데,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 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였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평가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을 일 반적으로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를 지우기 어렵다.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는 정보 공개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보공개청구의 동기'를 문제 삼 는 것은 매우 구별하기 어려운 청구인의 내심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실무에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어떤 메시지로 읽힐 지, 또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하거나 재판과정에 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동기를 문제 삼을 때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 지 지켜볼 일이다.

♣ 비공개사유로서 의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개인식별정보와 사생활정보

선고된 지 꽤 시간이 흘렀고, 이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로 소개되어, 두루 알려진 내용이기는 하지만, 비공개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원용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 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파급력이 큰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개인정보의 해석을 둘러싼 아래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된 사건 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및 참고인 등 개 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 특히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별개의견】"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 정보공개 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와 다르지 않다고 새기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문언뿐 아니라 개정 경위 및 취지,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 운 해석에 두루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 인 해석이다."

다수의견에서 9명의 대법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 에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정보(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 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본 반 면, 4명의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현행의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는, 개정전인 1998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인 정보, 즉 개인식별정보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개인식 별정보는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당연히 포함 된다고 보았으며, 그 외에 사생활정보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그를 긍정 하는 다수의견과 그를 부정하는 별개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2004년 정보공개법의 전문개정 과정이나 개정의 취지. 개정 전후 조문의 비교, 그리고 무엇보다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문언 적 해석에 의하면, 2004년 개정은 1998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가 개인식별정보형 개인정보 규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점(개인 식별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개인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과 한계(그 자체로는 개인식별성이 없음에도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를 인식하고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 것인 점, 2004년 개정조문에서 개인식별성은 명시적으로 제거된 점, 2004년 개정조 문은 개인에 관한 사항일 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모두,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로 보았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개인식별정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연히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여야 하고, 나아가 사생활정보도 개인정보로서 비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이유로 하는 비공개의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판례의 형성은 매우 우려스럽다.

♣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한계

매우 좁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일반시민이나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낯선 논의겠지만, 행정재판 실무에서는 꽤나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라는 쟁점이 있다. 말 그대로, 진행중인 재판에서 피고인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처분의 근거ㆍ이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은특히 불이익처분인 비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처분 당시 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시 제시하지 않았던 근거ㆍ이유의 무제한적 추가ㆍ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기준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적용이 늘용이하지는 않다.

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경제개혁연대와 그 소속 연구원이 금융위원 회 위원장 등에게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발행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 이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은 당시 대법원에서 행정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 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였고, 비공개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과정에서는 (처분시점에서는 진 행중이던 행정재판이 이제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제기된 다른 소송 사건(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당초의 비공개결정은 여전히 정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 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 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 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 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 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당초 거부처분사유로 위 정보가 대법원 2007두11412호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였다는 취지를 명기 하였다면 이와 전혀 별개 사건인 서울증앙지방법원 2006고합1352. 1295. 1351호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인용한 앞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 주목할 부분은 뒷 부분이다. 공공기관은 비공개결정시 '진행 중인 재판'으로 특정하였던 행정재판 이외에 소송과정에 서 즉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 중에 3건의 형사재판을 추가하였는데, 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 더라도, 처분시 제시한 행정재판과 소송과정에서 제시한 형사재판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사건번호별로 '진행 중인 재판'의 개별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지,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처럼 재판의 큰 유형 별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달리한다는 것인지, 사건의 쟁점 또는 청구원인의 동일성을 가지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당사자가 공통된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동일성 나아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은 분명하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열거된 8가지 비공개사유 가운데 어느하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대법원이 이처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있음으로부터, 8가지 비공개사유 사이의 추가 · 변경은 원칙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비공개사유의 선택과 제시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공개사유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정보의 존부 및 소재에 대한 증명 책임

드물기는 하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에 관한 기록 일체'와 같은 경우) 정보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공개가 청구되어 정보의 존부 또는 소재를 둘러싸고 청구인과 공공기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개별 공공기관의 관할·업무범위나 공공기록 생산·관리에 문외한인 청구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우

고 위험을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청구인 과 공공기관 사이에 증명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국가정보원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등 의 혐의를 받고 있던 어느 민간기업에 대한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당해 기업이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국 가정보원장이 보고서의 존재를 부인하며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다.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 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 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 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 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 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 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 유 ·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종전부터 되풀이되어 온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재확인한 것이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충분히 특정되 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각하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 인이 일정한 수준(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에서 특정하여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지 않은 경 우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정보공개청구 기각결정)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대법원 도 그러한 방식의 처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부존재를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보의 부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인 청구인에게 협의의 소익(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각하판결을 하게 됨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원고패소판결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나, 전자의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패소한 원고는 동일사항으로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소송판결이므로 비공개결정의 정당성 즉 비공개사유 해당성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영업의 비밀과 정보공개의 기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광유



🚣 머리말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 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 중에서도 제7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자유 민주 국가의 기본적 경제 질서인 시장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경쟁과 공정거래에 관한 문 제이다. 이것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로 그 파장은 크나 이에 관한 법 규 정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정보공개법의 비교법적 개관

공공정보의 공개 원칙은 행정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민주 사회의 초석 이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 등의 많 은 나라가 정보공개권을 시민에게 인정하고 있다.

(1) 최근에 인정된 권리

정보공개법이 가장 먼저 제정된 곳은 스웨덴으로, 1776년부터 정보공개권

이 인정되어 오다가 1974년 헌법률에 의하여 입법화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 ≪ Freedom of Information Act ≫가 1966년에 제정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978년 법률로, 스페인에서는 1978년 헌법이 정보공개권을 인정하였다. 호주는 1982년, 캐나다는 1983년, 이태리에서는 1990년 8월 7일 법률이, 일본에서는 2001년 정보공개법을 도입되었다. 영국에서는 2005년에 두 개의 법률로, 그리고 독일에서는 2006년 연방 법률이 정보공개권을 인정하였다.

정보공개권은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통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에 직결되어 있는 문서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의회의 문서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3자와도 공유한다.²

(2) 공개의 한계

각국은 공개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독일과 영국에서는 출간된 자료는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전, 국방, 외교, 통화정책, 경제정책, 사생활, 영업의 비밀은 모든 국가에서 공개가 제한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절차나 범죄의 예방, 처벌에관한 것도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태리, 독일, 미국에서는 결정에 대한 준비행위도 결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공개가제한된다.

🚣 영업의 비밀

영업의 비밀은 공개제한 사유 중에서도 그 공개가 경쟁 환경에 미칠 영향 때문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가장 미묘한 문제이다.

(1) 우리나라 법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 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상의 비밀이 전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그 중에 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 비 공개 대상이다. 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의 범위는 현저히 축소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당한 이익"이 무엇인지 는 전적으로 해석에 달려 있는 불확정 개념이다.

이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우선 "법인 · 단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여기에는 "회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아니라 학교 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도 포함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기타 단체에 포함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서 말하는 법인 등에는 포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는 이 호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적용된다"³고 봄이 일반적이다.

(2) 일본 법 규정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7호는 정보의 공개범위에 관하여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것은 일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의 "법인 기타 단체 (국가, 독립 행정법 인 등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법인 등"이라한다)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다만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다 — 이 공개됨으로써 당해 법인 등 또는 당해 개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보공개법에서는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익'이란 경쟁법상 보호되는 경쟁상의 지위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법인의 성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이라면 학문의 자유가문제로 될 수 있고, 종교법인은 신앙의 자유가 문제로 될 수 있다. 독점 또는 과점기업이라는 것도 정당한 이익의 판단요소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사업의 경우 다른 경우에 비교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서 정의된 '영업비밀', 즉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5 그러므로 위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자산이나 부채, 이윤, 손실, 시장점유율에 관한 데이터, 매출통계, 고객 또는 납품자 목록, 총경비, 운영비, 연구데이터 등 상업적 정보 및 예금 대출상황 등의 금융데이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6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법인 등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영업상 비밀관련정보는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적 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제3자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비공개 여부의 결 정은 공공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 서서 공개에 의한 공익과 그것에 의하여 당 해 법인 등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

(4) 프랑스 정보공개위원회^{CADA; Commission d'acc'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의 해석 프랑스 정보공개위원회의 해석은 매우 구체적이라서 특별한 참고 가치가 있다.

영업의 비밀은 1 과정상의 비밀 2 경제 및 금융 정보 3 영업 전략의 세 가 지로 분류된다.9

1) 과정상의 비밀

과정상의 비밀은 기업의 노하우 노출을 방지한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소각 및 페기물 처리 시설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2005년 7월 7일의 고 시 제 20052675호)
- 분류 시설 운영의 연례 검토(2006년 6월 8일 위원회 재결 20062199)

- 낚시와 물고기 농업 협회(1995년 5월 24일 고시 제 19,951,344
 호)의 군 연맹 조서에 설명 된 개인 양식장의 관리 및 운영 양식
- 천연 광천수의 경우 : 소스의 위치를 설명하는 계획, 구현 또는 제안 된 집수 작업의 설명; 이용 서비스
- 건물 및 물 처리 설비 :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설명(1993년 2월 25일의 통지 19930483)
- 특히, 접근 및 방법, 계산 및 작업 장치(2008년 1월 24일의 공지 20080123)의 프레젠테이션을 제작 한 회사의 프로세스를 보여 주는 감사 보고서
- 승인을 신청하는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 장비 및 교재에 대한 설명서(2009년 4월 2일의 공지 20,090,975). 이 비밀의 윤 곽은 때때로 특별 규정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식물성 보호 제품 시장에서 출시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서는 원고가 관리 권한을 명시적으로 언급 한 경우에만 이 비밀에서 제외된다.

2) 경제 및 재무 정보

경제 및 금융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 환경, 재무의 건전성, 부채 등 기업 활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약국의 매출전표(2005년 1월 6일의 공지 번호 20050114), 제약 회사(TA 파리, 1985년 1월 14일 발렌티) 또는 민간 의료 비영리 기관의 판매, 생산성, 영업 활동의 상세하고 세분화된 정보(2005년 4월 28일 위원회 재결 20050285)
- 약국 자금 이체 행위(1994년 3월 2일의 19.940.208 의견)
- 공인 건강 센터를 구성하는 상호조합 치과 관행의 연간 활동 보고서의 일부(1994년 9월 2일의 위원회 재결 19,942,021)
- 와인 메이커에 의한 와인 수확 신고(2004년 5월 27일의 공지 20042153)
- 광물 추출의 결산보고(2007년 2월 22일 고시 제 20070747)
- 우유 생산량 신고(1993년 9월 2일의 공지 19932183)

- ONILAIT 납부 화급자 명단(2006년 12월 21일의 공지 20065445)
- 일요일 개방 허가 신청 회사가 제공하는 회계 기록(1992년 3월 5일의 위 원회 재결 19920491)
- 총액이 공개 가능한 경우에도 군(郡) 경영 사업에 대한 상세한 회계 기 록(1996년 10월 17일의 위원회 재결 19.963.414)
- Sausheim에 위치한 쁘죠 회사의 세무 기준(1993년 4월 8일 위원회 재 결 19930874)
- 회사가 지불한 도시 간 주민세액(2005년 3월 31일 위원회 재결 20051400)
- 감사 보고서(2001년 12월 20일 통지 20014200)
- 유럽 지역 개발 기금 구조 기금 보조금 청구 서류-ERDF(2005년 10월 6일 위원회 재결 20053107)
- CECEI에 대한 은행 설립 승인 청구 서류(2006년 9월 28일의 공지 사항 20064035)

3) 영업전략

영업 전략은 기업의 경쟁 환경에서의 전략적 결정에 대한 비밀을 말한다.

- 가격과 연습 할인, 공급 업체의 목록, 수출 개발 정책(2006년 12월 21일 공지 20065445), 제약 회사가 주장한 의료 서비스 개선 수준(2007년 5 월 3일 위원회 재결 20071444). 회사의 입찰참가 철회 사유(2008년 10 월 23일 위원회 재결 20084066) 포장마차 개점일(2008년 12월 11일 공 ス] 20084484)
- 회사의 특정 약물 치료와 관련된 환자 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실(2007년 11월 22일 위원회 재결 20074594). 장기 가스 공급 계약과 관련한 GDF SUEZ와 딜러 간의 협상 조건에 관한 정보(2009년 1월 15일 공지 20090193)

🚣 우리나라 판례 및 재결

(1) 비공개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출관계 서류 등에 포함된 법인 · 단체 또 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우리나라 판례 및 재결

- 에 관한 정보(대판 2003.4.22. 2002두9391, 대판 2004.8.20. 2003두8302)
- 2) 택시회사 재무회계서류(서울행정판 2001.4.4. 2000구35838, 운전기사별 운송수입현황: 광주지방법원 2012.12.6. 2012구합 3248)
- 3) 아파트단지 설계도면(서울행정판 2000.7.26. 2000구4258).
- 4) 세무조사 자료(서울고판 2003.12.2. 2002누19086)
- 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 (대판 2010 12 23, 2008두13101)

(2) 공개 사례

- 1) 일본뇌염백신 제조업체들의 자산,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일본뇌염백신 제조사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일본뇌염백 신 제품의 특성, 유통경로 및 가격결정구조, 일본뇌염백신 가격 결정경위 등(서울고판 2000,10,24, 2000누613)
- 2)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내 온 각종 출연금(각 업체별 출연내역)은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것이나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서울행정판 2002.6.20. 2001구36616)
- 3)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분양건설원가인 택지비, 아파트 건축비 등 정보의 공개는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7.6.1. 2006두20587, 서울행정판 2006.6.1. 2005구합37311, 같은 취지에서 한 주택재개발아파트의 분양가산출근거에 관하여는 서울행정판 2000.11.29. 2000구14473, 임대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에 관하여는 서울행정판 2000.1.7. 99구19984)
- 4)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에 면담장소 등으로 이용한 식당 등의 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격려금수령자 등 특정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서울고판 2001,5,29.

2000누8693)

- 5)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출 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법인 · 단체 또 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상호, 단체명, 영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대판 2003.4.22. 2002두9391)
- 6)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하는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 단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 상기 출자총액 중 적용제외 및 제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서울행정판 2003.8.19, 2002구합33790)
- 7) 원고가 제조하여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검사받은 공 기총의 연도별 수량에 관한 정보(서울행정판 2006.2.3. 2005구합 32927)
- 8)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 및 정책기획센 터장, 노사협력팀장의 업무추진비 및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 행서류(서울행정판 2006.5.26. 2006구합132)
- 9)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대판 2006.1.13. 2003두9459)
- 10) 신공항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명세서(대판 2011.10.27. 2010두24647)
- 1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대판 2011.7.28, 2011 두4602)
- 12)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수와 그들의 보수와 관련된 정보와 고용 산 재보험의 가입 및 해당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와 관련된 정보(대전 지방법원 2013.12.18. 2012구합5420)



위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 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프랑스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1.기업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정보. 2.기업 활동의 수준 을 알 수 있는 정보. 3.경쟁 환경에서의 전략적 결정에 해당하는 정보로 분 류할 수 있다. 단순히 공개사례와 비공개 사례로 나누어 암기 하는 것 보다 는 이와 같은 분류를 인식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이다. 특히 영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경쟁 질서 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공개 사유에 해

당한다 하더라도 공개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익적 필요성과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입된 "비교형량의 법칙"이 영업의 비밀에 대한 공개·비공개 결정에도 최종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² Site, Commission d'acc'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ADA)

³ 김의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⁴ 변현철, 정보공개법의 실무적 연구-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외국사법연수논집(20) 89집, 2000

⁵ 김의환, 주 2) 같은 자료

⁶ 한위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비밀", 행정재판실무편람(II), 서울행정법원 2002, 501.

⁷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216

⁸ 경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264

^{9 2005}년 1월 6일의 정보공개위원회 conseil n° 20045291 재결





제2장

주제별 정보공개 사례

정보공개의 원칙	44
개인에 관한 사항	51
공무원 관련 정보	54
회의 관련 정보	56
업무추진비	63
사업 관련 정보	68
부존재 정보	73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75
정보의 공개방법	77

🛶 정보공개의 워칙



🚣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일반적으로 알권리는 그 근거를 국민주권의 원리, 인간의 존엄ㆍ행 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헌법상 표현 의 자유에서 도출되었다고 해석된다. 헌법 제21조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언 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 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 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 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 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 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 수집 · 처리 의 자유. 즉 '알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88헌마22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 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 으며.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 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정 보공개법 제5조제1항), 이러한 알 권리라도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291, 헌법재판소 2003헌바81 등

🚣 공개여부의 판단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 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한다.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 '정보'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및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령 해석례 12-0188

🚣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 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 · 사 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 의 조직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 · 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6두3049,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478

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 을 제기한 甲의 민원처리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 퓨터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위 토지의 불법성토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는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해 준 자료는 공무원 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 서이므로 이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상급기 관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 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점. 정보공개법 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 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 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 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자료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정보라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3833

🚣 정보의 특정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 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 ·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 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청구

♣ 정보의 특정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정보공 개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함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제2호). 한편,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표목이나 작성 매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인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개 대상 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였다면 그로써 정보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 부분공개

▲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두12707

♣ 비공개 이유제시 의무

▶ 행정청은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정당성 · 합리성을 판단할

🚣 비공개 이유제시 의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가 추상적으로만 제시되어 처분의 당사자 가 어떠한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 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입증하 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개청구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 2013누848, 대법원 2003두1370, 대법원 2006두4899 등

이 사건 행정정보의 어느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현행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과 주택사 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끝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이 사건 행정정보의 공 개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처분사유를 제시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두4899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 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 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 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 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두8680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전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 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비공개 근거가될 수 없는 제11조제3항(공공기관은 그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면 족하고 그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어서 적법한 처분 근거 및 이유의 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682

❖ 정보공개법상 '국민'의 범위

▲ (개정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6425, 대법원 2003두8050 등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

한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인에게도 기본 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법인이나 기 타 공법인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개 인 내지 사법인의 권리로서 역사적으로 국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권 리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주체로서 자치행정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헌법상 보장을 받는 것이지 기본권을 보호받 는다는 측면에서 그 헌법상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독자성과 행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

정자치권을 가지면서 오히려 개인이나 사법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 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 가 아니라 권한질서의 문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지방자 치단체에게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행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의 본질적 구성 요소를 이루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알권리는 기본 적으로 정신적 자유 영역인 표현의 자유 내지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된 권리인 점,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로 인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점, 지방자치단 체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 장되는 행정자치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지방자치단 체는 공권력기관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위치에 있다고 보아 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알권리로서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적어도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볼 수 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484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 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두17384, 대법원 2007두2555 판결 등

- 개인에 관한 사항



🚣 사생활의 비밀

▲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 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 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518

□ 현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개인의 삶을 영위해가 며 개성을 신장시키기를 바라고 사생활에 관하여 외부적 간섭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 개인의 민원상담 관련 정보

-민원상담 내용 중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민원인은 민원상담을 요청함에 있어서 민원상담의 내용이 개인에게 있어서 민감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를 염려하여 비공개요청을 하고 있는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 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민원상담 내용 중 비공개부분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개 인식별정보와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거의 없는 반면, 원고의 명예회복 내지 원고 가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의 재판진행을 위하여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221

♣ 판례 속 비공개 개인정보

피의자신문조서 내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및 진술내용,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	대법원 2011두2361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5-17455
세부항목별 근무성적평정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656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대법원 2009두6001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대법원 2009두2702
CCTV에 녹화된 통행인 얼굴	대법원 2012두25729
배우자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혼인관계,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경위, 부동산 매입자금 등 재산형성과정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9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전 가구의 가구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575
사업승인 심사자료에 포함된 개인 주주의 성명, 출자액, 신규발행 주식 수, 총투자액, 주식 수, 주식대금총액, 업종, 소속 및 직위, 국적, 법인 주주대표이사 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경력, 비용지출 수령인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수령금액 등 정보 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890

🕶 공무원 관련 정보



🚣 근무성적평정 정보

근무성적평정은 근본적으로 평정대상자에 대한 평정자의 종합적 인 분석 · 평가이므로 그 평정요소의 내용이나 기준이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 밖에 없고 또 아무리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의하여 평정을 한다 하더라도 평정의 과정에 있어서 평정자나 확인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다 할 것인데. 근무성적평정을 사후에라도 공개하게 되면 평정대상자 에 대한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셈이 되어, 평 정자나 확인자로서는 그 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담을 갖게 되고 또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가능 성이 커,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정자가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후에도 평정 자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평정대상자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되어 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조항이 근무 평정결과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과 정당 성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

♣ 특정 공무원의 인사정보

►▲ 특정 공무원의 이전 근무지, 직위 및 보직 이력은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대상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372

▲ (전 공무원 8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에 대하여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전 경찰청소속의 공무원 8명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있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5-17455

🚥 회의 관련 정보



🚣 회의록의 공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아직 형성과정에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공개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임명 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장의 선임,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정관 의 변경.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기본운 영계획,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 항들을 심의 · 의결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직 위이고. 상법상의 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과 비치가 강제되 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인하여 이사들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우 려가 다소 있을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다소 위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 측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 사들의 날인 등이 없어서 완성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안 형태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내용도 이미 특정되어 있었으며, 그 작성에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의 공 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80847

🚣 회의록의 공개

□ 「주택법 시행령」제42조의7제6항 및 제42조의10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 위임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주택법시행령」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취지이지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하라는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점, 「주택법시행령」제42조의10제1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과정 및 그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사항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는의무를부과하는조항일 뿐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이 전부 비공개사항임을 규정하는조항으로볼수는 없는점등을고려해볼때,동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법률 또는법률이 위임한명령에 의하여비밀 또는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정보'에 해당한다는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5150

♣ 회의록의 부분공개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회의록의 경우 이미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것으로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고, 원고가 성명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를 구하고 있어 회의참석자의 발언내용 중에서도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면 될 것이며, 회의과정에서의 발언을 반드시 비공개로 하여야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닌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682

🚣 회의록의 부분공개

원심은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원고를 참석시켜 징벌절차 를 진행한 다음 비공개로 심사 · 의결한 내용이 기재된 위 각 회의록 중 비공 개 심사·의결 부분은 그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내용이 공개된다면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어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그에 앞 서 원고 참석하에 이루어진 원고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원고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이를 공개한다 해서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 을 침해하거나 교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 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분리공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 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각 징 벌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및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 등에 의하면, 위와 같 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두12785

🚣 회의록의 비공개

학교폭력법 제12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두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 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 · 의결이 보 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 · 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 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각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 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 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 어 자유로운 심의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학교폭력법 제21조제3항이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자치위원회 운 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 교 · 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

♣ 회의록의 비공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법 제21조제1항, 제2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되 그구체적인 비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비밀의 범위를 "1. 학교폭력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으로 열거하고있으며, 학교폭력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법 제21조제3항이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두2913

독립유공자 등록의 요건인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그 객관적인 사

🚣 회의록의 비공개

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 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 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헌법재판소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이와 아울러 등록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 시까지 행적 또한 평 가의 대상이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 의 전문적 · 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사의 본 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 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 위와 같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 및 심사의 본질 등 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심사 결 과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개로 인 하여 신청당사자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 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심사위원들로서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 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는 이 사건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 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 · 교량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두20301

🚣 심의회 발언자 정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정화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 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 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 요성 즉,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 심의회 발언자 정보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다

대법원 2002두12946

♣ 심의위원 신상정보 공개

▶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속되어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사면법 제10조의2 제2항, 제3항).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사면법 시행규칙 제3조). 이러한 인적 구성에 비추어 보면 특히, 공무원이 아닌 4인 이상의 위원들이 광범위한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심사과정에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에도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 심의위원 신상정보 공개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 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 경우에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 을 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그 의사결정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문기구에 불 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 하도록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 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 침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시책추진 업 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 진을 위한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편성되 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는 것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 정 사실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 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 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 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 할 필요가 크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 지출 증빙 중 개인정보

-기관은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통상적인 조직은영, 홍보, 대민활 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 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피고들이 보유 하고 있는 지출 증빙 중에는 간담회, 연찬회 등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시 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으로서 사인(私人)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 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첫째, 이와 같은 경우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공적 예산의 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인인 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 자신의 참석사실 또는 금품수령 사실의 공 표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법 제7조제1항제6호 (현행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나목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둘째, 위 참석자나 금 품수령자 등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 참석 사실 또는 금품수령 사실 과 그 액수 등이 공표될 경우 이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생 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 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권자가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지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위 각 추진비의 특성상, 이를 무조건 공개하도 록 할 경우 시정운영에 필요함에도 금원을 지출하지 못하거나 공개를 의식하 여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지출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 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 2001누2162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지출 증빙 중에는 간담회. 연찬회 등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인 개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피고가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한 명목 으로 지급한 금품의 최종수령자인 개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 지출 증빙 중 개인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권자가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 어느정도 재량을 가지고 지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위 각 추진비의 특성상, 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할 경우 시정운영에 필요함에도 금원을 지출하지 못하거나 공개를 의식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지출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이 사건 정보 중 위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 지출 증빙 중 공무원 정보

▲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 · 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 증빙에 포함된 정보 중) 행사참석자정보 중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두8050, 대법원 2003두8302 등

🚣 지출 증빙 중 공무원 정보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 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 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 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두8050, 대법원 2003두8302 등

🚣 지출 증빙 중 법인이나 단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는 일반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법 제9조제1항제 7호는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비공개정보로 하여 비공개의 요 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가 피고들로부터 위 격려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 인이 영업상 이를 수령한 경우, 그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 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그것이 공 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그러나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 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대법원 2002두9391

♣ 지출 증빙 중 법인이나 단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나 비 제7조제1항제7호(현행 제9조제1항제7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 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법인 등의 영업상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법인 등의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법인 등의 정당한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두8302

🕶 사업 관련 정보



🚣 비밀유지의무

-사업 실시협약서 제87조 소정의 비밀유지의무(협약의 해지나 종료 후 5년 동안 정보비공개)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들어 정보를 비공개함은 위법 하고,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를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 공사 업종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

-이 사건 1. 2단계 공사는 그 각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이를 토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고, 실시설계적격자에 의 하여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서 추정금액이란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하기에 앞서 입찰대상자 및 적정입찰 가격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배정을 하기 위하여 특정 공사에 소요 되는 예상 금액에 대하여 산출하여 놓은 것으로서 이는 입찰과정에서의 공 정한 입찰 및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 는 것이 통상인바, 이른바 턴키방식의 사업의 경우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 계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 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를

♣ 공사 업종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

공개하는 것이 이 사건 1, 2단계 공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는 등으로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관련 자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 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 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 급, 도시의 개발 · 정비, 주택의 건설 · 공급 ·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 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이미 분양이 종료된 ㅇㅇ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 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같은 각종 공익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 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 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4602, 대법원 2006두20587

🚣 BTL 사업 추진현황 및 협약서 일체

이 사건 정보는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의 제반 조건에 관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작 성된 서류로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영업상 비밀 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출자자 및 출자비율, 재무모델 등 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의 전 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 도를 가진 외부인으로부터의 방해나 간섭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개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 받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 · 공익성 즉, 사 회기반시설은 그 자체로 공공적 ·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 은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시설에 대한 것인 점, 민간투자법 및 그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설 준공 후 유지 · 관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시행 전반을 규율하고 있고, 주무관청에 대하여 감 독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 우 정부는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 록 하고 있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 또 는 장기대부 등의 재정지원과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 조치 및 조세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 협약 체결 이후 의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을 수용 또 는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가 진 실시협약의 체결을 단순한 사법적 · 일반적 계약관계로는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막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집행되는 점. 사업시행 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만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향후 20년간 사회기반시설인 학교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및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 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예외적인 공개 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업에 관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 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 BTL 사업 추진현황 및 협약서 일체

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사 위 정보의 일부분이 위 조항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단서 나목 소정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 고속도로 실시 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

-참가인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민간투자사업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시협약 사항에 따라 유료도 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준공 후에도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도로 유지관 리 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교통현황 및 수입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 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 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미 고속도고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협약서의 내 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경쟁력이 현저 히 저하된다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의 관리 · 운영 업무를 추진 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공 개함으로써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피고의 사회간접시설 확 충 · 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 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두24647

🚣 도시정비법 관련 정보의 공개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제2호에 서 정한 조합원명부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도시정비법 제 81조제6항 본문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고, 재 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 부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법령해석례 12-0428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서면결 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 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 · 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 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 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 ·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도 되다고 할 것이다

법령해석례 11-0324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 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 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해석례 13-0110

🛶 부존재 정보

♣ 정보 보유 및 폐기의 입증책임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 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 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 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관리하던 위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은 1985. 8. 8. 제정되어 2002. 4. 4.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으로 변경되면서 폐지되고, 위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은 1989. 9. 12. 제정되어 2002. 3. 28.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으로 변경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법규의 폐지는 그 적용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제 폐기하여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운영지침이나 공급규칙이 폐지되었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위 문서들을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정보를 한 때보유·관리하고 있던 피고가 위 각 정보가 폐지된 이후 그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존기한의 경과 등으로 실제로 폐기하여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두12707

♣ 정보의 가공 의무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 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

🚣 정보의 가공 의무

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 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 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두4309, 대법원 2009두60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 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 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 서 · 도면 · 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 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 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나. 공중연결통로 허가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 하지 않아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청구인 관할구 역 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도면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별도로 취합·가공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 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 구한 공중연결 통로 허가현황에 대해 별도의 취합·가공이 필요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4-200

🛶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 소 제기를 위한 정보

□사소송 제기를 위한 관련사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본 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 비공개 결정한 사안에 서 이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 중 참고인의 주소지는 원고가 참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고,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에 해당할 뿐아니라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진 뒤여서 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 된바 없다 하더라도 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참고인의 주소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반면, 참고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20

🚣 소 제기를 위한 정보

공개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028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정한 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 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정보 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966

🕶 정보의 공개방법



♣ 공개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권

▶ 정보공개법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제1항,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두6425, 대법원 2003두8050 등

♣ 널리 알려진 정보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13101, 대법원 2005두8733 등

🚣 전자문서로 통지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 제162조를 이유로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 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에서.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구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문서'로 통지하 도록 정한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위 규정들은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 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두17384

🚣 타 공시제도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 양가격을 제한하는 한편 그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요 내용을 공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특히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도 포함되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 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서 위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나 분 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 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 므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4602

▲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비용 및 그 내역까지 공개하여 분양가 상한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데 있을 뿐 그 이외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금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들이 분양가격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2-402





제3장

정보공개 분야 결정례

01 법령상 비밀 · 비공개	82
02 국방 등 국익침해	106
03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14 ⁻
04 재판 관련 정보 등	152
0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176
06 개인의 사생활 보호	23 ⁻
07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293
08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357
09 정보부조재 등 기타	39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법령상비밀·비공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

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

대법원 2004두12629

판단기준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 임명령)을 의미함.

대법원 2010두2913

법률의 위임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예규)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 호에 따른 비공개 근거로 삼을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20



 $\cap 1$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제주) 2013누88]

정보공개거부취소



타인이 제출한 민원 내용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구합81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 등이 2012, 7, 23,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에 대한 민원서에 관하여,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초등학교 교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외 7명(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2012. 7.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전자민 원창구란의 클린제주교육신고방 중 '열린신고방'에 위 학교 동료교사인 원고에 대한 민원서(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4. 피고에게 이 사건 민원 내용(이하 '대상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19.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나,항 및 진정민원의 공개로 인한 민원인의 의사결정 등 권

익 칚해 우려와 '열린신고방'에 명시된 신고에 대한 비밀 절대 보장 준수를 이유로 2012. 10. 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민원처리법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참가인 등이 제기한 자신에 관 한 민원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이 사건 민원 제고 인해 C초등학교장으로부터 구두경고 를 받고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보되는 등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권리 구제 를 위해서는 대상정보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대상정보의 공 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으모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초 처분 근거의 당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궈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 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 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로 '다른 법률 또 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민원처리법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 등을 구체적으

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의 일반적 · 추상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만약 위 규정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의 근거 법률로 본다면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등에 관해서는 모두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2호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과 그 공개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그것이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인가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민원처리법 제26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정보 비공개의 근거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열린신고방'에 제출한 민원사항의 내용 등을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등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민원처리법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대상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한편, 피고 및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 본문에 규정된 '개인에 관한 정보'나 같은 항 단서 제5호에 규정된 '감사·감독·검사·시 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 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 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2004, 11, 16, 선고 2004두4482 판 결,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당초의 처분사유로 삼 은 '대상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민원처리법 제26조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 다'는 점과 추가된 처분사유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서로 내용과 취지가 크게 다르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동일성 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 근거로 내세운 민원처리법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민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대상정 보의 공개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당초의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 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를 거부한다는 점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사유의 존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 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가 공개되기 위한 예외적인 요건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 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

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상정보는 원고가 평소 학교생활 중에 참가인 등 및 학생들에게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행동해왔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지적하는 내용 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참가인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됨 으로써 참가인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민원 제기 자체로 말미암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직접 받은 바가 없을 뿐 아 니라(피고는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2012. 9. 11. 경 "증거 없어 민원 내용을 인용하여 처 벌할 수 없음"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 는 C초등학교장의 구두경고 내지 다른 학교로의 전보조치와 관련해서도 대상정보의 공개 가 원고의 권리구제와 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민 원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징계조사 내지 C초등학교의 특별인사위원회 회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적어도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민원을 접수한 피고의 담당공무원 은 특정 소수일 뿐 아니라 민원처리법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가 비밀유지의무를 규 정하고 있어 대상정보를 전파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이 사건 민원의 제기 자체로 인해 참가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워고는 이 사건과는 별도 로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2012가소2641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참가인의 이 사건 민원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2013,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나아가 원고는 대 상정보가 C초등학교 측에게 전달되는 등 원고를 제외한 제3자에게는 이미 공개된 상태이 므로 피고가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대상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 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대상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목적과 더불어 원고와 참가인 등의 관계 및 이 법원이 비공개열람 · 심사를 통해 파악한 대상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의 사유가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상정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렵거나 대상정보의 공개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될 권리구제의 효과가 그로 인해 참가 인 등이 침해받을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 법령상 비밀·비공개

[대법원 2010두29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 [=법규명령(위임명령)]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제(항제(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이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 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 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 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 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 · 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 · 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 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 · 중학교 · 고 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 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12. 선고 2009누22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2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 두1798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한편, 학교폭력법 제21조제1항, 제2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되 그 구체적인 비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비밀의 범위를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

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으 며, 학교폭력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법 제21조제3항이 자치위원회 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 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 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 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인 소 외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 인데. 원고로서는 어떠한 이유로 소외인이 조건부 퇴학처분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이 를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학교장이 자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독립성을 갖춘 합의제기관에 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그 의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도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 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학교폭력법 제12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에 자치위원회를 두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 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치위원회에서의 자 유롭고 활발한 심의 · 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 · 의결 과 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 야 할 것인데, 만약 각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 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 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 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학교폭력법 제21조제3항이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자 치위원회 유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 교 · 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 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 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3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585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사업개시 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재결결과

기각

재결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서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때 '과세정보'라 함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일체를 의미한다. 청구인이 특정 법인의 사업개시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2,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주)○○의 사업개시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제1항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 ·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변조된 다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로 서 동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의미로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그 자체도 아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피청 구인의 잘못된 국세행정 및 일방적인 횡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제1항, 국세청 정보공개업무 편람 등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 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13. 2.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 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 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 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 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i)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ii)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iii)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의 '과세정보'라 함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특정 법인의 사업개시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 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법령상 비밀 · 비공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1-192]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타인이 제출한 민원문서(진정서)와 답변서(개인 신상정보 제외)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입주자대표회 의측의 민원무서(진정서)를 공개할 것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기각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 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 정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고.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 1호의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법체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1-0014). 유권해 석에 의할 때,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산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이의신 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의 내용이 누설 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7.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청구인이 2011. 7.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유 0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4, 피청구인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ㅇㅇ아파트 상가의 교 회 입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출원한 모든 민원무서와 피청구인이 답변 한 문서를 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6. 1. ① 모든 민원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 1호에 의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② ○○출장소에서 답변한 문서는 공

개한다(공개실시일: 2011. 7. 4.)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입주자대표 회의 측의 민원문서(진정서)를 공개하고, 피청구인의 답변문서를 즉시 공개하라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각 결정(입주자대표회의측의 민원문서 비공개, 피청구인의 답변문서는 즉시공개)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법의 정확한 근거 없이 ㅇㅇㅇㅇ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 하는데 입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민원발생 원인을 당사자인 교회에서도 알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되어,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 구인은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민원내용에 비밀이 있다고 하니 더욱 의구심을 갖게 된다.

나. 또한 정보 부분공개를 함에 있어서도 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 7, 4,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인 'ㅇ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의견을 청취한 바, "공개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정보보호)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1호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ㅇㅇㅇㅇ마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문서(진정서)를 제외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만 공개결정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6. 1. 부분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 7. 4.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실시일이 결정 통지일(2011. 6. 1.)로부터 33일이 지난 2011. 7.

4.로 지정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청취 결과 "정보공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 같은 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 결정된 날짜이고, 청구인이 2011. 6. 24. '정보공개청구 이의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ㅇㅇ시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서면심의)'를 개최한 결과, 민원 관련 피청구인 답변 문서는 즉시 공개 하여야 한다는 'ㅇㅇ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의거, 2011, 7, 1,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4.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1, 5, 4, 피청구인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ㅇㅇ아파트 상가 의 교회 입점에 대한 ㅇㅇ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출원한 모든 민원 문 서와 피청구인이 답변한 문서를 공개 청구하였다.

나. 2011, 5, 13, 피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정보공개관련 제3자 의 견 요청'을 하였고, 2011, 5, 19, 청구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보공개청구된 정보 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제3자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6, 1, ① ㅇㅇㅇ이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ㅇㅇ출장소에 출원한 모든 민 원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 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② ㅇㅇ시 ㅇㅇ출장소에서 답변한 문서는 공개하나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청취 결과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 실시일을 2011. 7. 4.로 한다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6, 24,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민원문서(진정서)를 공 개하고, 2011, 7, 4,자 공개실시 할 피청구인의 답변문서도 즉시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2011, 6,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결 과에 따라. 2011 7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단. 피청구인의 답변 문서는 즉시공개) 통지하였다.

5. 판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 워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 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 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 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 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 21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 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 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 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규정은 민 원처리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고.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의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고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1-0014 참조).

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개별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가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관 련하여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 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답변서 문서를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청구인이 이미 ㅇㅇㅇㅇ아파 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보낸 진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 여지고. 청구인이 진정서의 내용을 일부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의 내용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은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민원문서(진정서) 내용을 공개 요청한 것이므로 진정서를 제출한 대상자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 진정 내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개인 신상정보 등

이 누설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바. 결론

그런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법령 해석례 11-0350

질의요지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회답

「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에서 검사 ·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 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법령 해석례 11-034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 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 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법령 해석례 11-0345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법령 해석례 11-0014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 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 당하는지?

회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 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방 등 국익침해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4두12629

판단기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 을 넘어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피고가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

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국방 등 국익침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14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침 및 라오스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서 등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남북통일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B연합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탈북자 대응 매뉴얼 및 관련 내부 지침 일체'(이하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침 등'이라고 한다)와 '2013. 5. 10.부터 2013. 5. 27.까지 라오스 탈북청소년 9인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내부 보고 문서 및 이메일 자료 일체'(이하 '라오스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서 등'이라고 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침 등'과 '라오스 북한이탈주민관련 문서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9.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재외 공관의 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름 공개한다 하더라도 탈북민의 신변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비공 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면서(제1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제1항).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 처리 지침이나 내부 보고 문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 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북한이탈주민 및 그 북한 내 가족의 신변 안전, 관련 국가의 협조 확보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침은 보호신 청단계, 신원사항 및 자유의사 확인단계, 임시보호단계, 국내이송단계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취 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침 등이 공개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단계별 조치가 노출되어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북한이탈주 민의 신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또한 라오스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서 등이 공개될 경우 관계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

침 등에 따라 취한 조치가 드러나게 되어 사실상 북한이탈주민 관련지침 등이 공개되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 측이 취한 조치 외에 라오스 북한이 탈주민 측이 취한 조치와 라오스 정부 측이 취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북송된 라오 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라오스 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 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정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단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 3) 구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각 단계별로 또는 시간순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정 시점의 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은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공개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방 등 국익침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999]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원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 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원문'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71. LSF-KEB Holdings SCA, LSF SLF Holdings SCA, HL Holdings SCA, Kukdong Holdings I SCA, Kukdong Holdings II SCA, Star Holdings SCA,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ár, l. (이하 '론스타'라 한다)는 2012. 5. 21.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 정'(이하 '투자협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투자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중재의향 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금융위원장에게 중재의향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금융위원회위원장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2012구합 24191)에 위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론스타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8, 6, 중재의향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 라 원고는 2012. 8. 2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론스타는 2012. 11. 21. 투자협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국제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투자자국가국제중재의 관할, 청구 및 청구 이유가 기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2호 및 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재절차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하여
-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공개가 ①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②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③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어디까지나 공정

하고 원활한 재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이 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재판 자체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 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해결방식을 결정하고 그러한 합 의에 의해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에 자발적으로 승복한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 자협정에서 도입한 투자분쟁해결절차로, 국제 중재기관의 판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국내 사법절 차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점. 국제 중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대심적 심리구조. 중재판정 의 기속력은 분쟁해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적자치를 본질적 특 성으로 하는 중재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외국인 투 자자와 우리 나라 사이에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하여 규정한 것은 아 닌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국제중재사건을 국가소송에 포함하는 개정작 업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위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체계를 정하 고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제중재절차가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재절차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신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가 안전보장·국 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교통상부 정보공개운영 지침'(외교통상부 예규 제207호) 제9조 [별표] 제2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외국정부 ·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 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2항),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

접·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4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제12항)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이는 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마2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제1항제 2호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행정청이 공개 거부 사유로 드는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신청서는 투자협정에 따라 국제투자분쟁 해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통상 관련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외교관계 등이라는 문언의 취지상 외교관계에 준하는 통상 관련 분쟁도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비공개, 중재에 관한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점(재판과 같이 공개가 원칙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국제중재절차 및 그 정보에 관한 공개가 국제관행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세무조사와 과세에 관한 사실관계.

관할, 조약 위반, 신청취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개될 경우 이후 중재절차에서 론 스타의 자유로운 주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정부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자유로운 주 장이나 외교적 해결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게 되는 점, 론스타 측의 동의 없이 공 개할 경우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국제적 신뢰관계의 유지라는 국가 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Between State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1967. 3. 23. 조약 제234호로 발효되었다. 이하 'ICSID 협약'이라 한다) 제48조제5항은 "본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당자사의 동의 없는 중 재판정서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점, ICSID 협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1조의 '중재절차의 투명성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점. 중재에 관한 서류가 공개될 경우 사실상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는 점. 중재절차 종결 이후 중재자료를 열람하여도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3 =

국방 등 국익침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478]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한·미 FTA에 관련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 한·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교화된 문서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의 '취득'과 '관리'의 의미 및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2]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 · 미 FTA에 관련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의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사안에서,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 [3] 한 · 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 · 교환된 문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자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 · 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2]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 · 미 FTA에 관련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의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사안에서,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3] 한 · 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 · 교환된 문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고 한 사례.

주 문

-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별지 1] 정보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 지1] 정보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비공개결정 간주에 의한 처분일자 를 2007, 8, 4,로 특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인 2007, 7, 12,부터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20일이 도과한 때인 2007, 8, 2,이 그 처분일이 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 지1] 정보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부는 미국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한 · 미 FTA'라 한다) 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6. 2. 3.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2006. 3. 6. 및 2006. 4. 18.에 각 서울과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에서 한 · 미 FTA 협상을 위한 제1, 2차 사전준비협상을 진행한 결과. ① 협상분과 구성문제: 무역구제협상분과 및 섬유협상분과 등 17개 분과의 설치. ② 문서 비공개 문제, ③ 협상문 초안 교환시기(5, 19, 이전)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2006, 5,경에는 총 22 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여 2006, 5, 19,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서로 교 환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17개의 협상분과를 통해 제1차 협상(2006, 6, 5,부터 같은 달 9,까지)을 시

작으로 제8차 협상(2007. 3. 8.부터 같은 달 12.까지)에 이르기까지 교섭을 개최한 결과 2007. 4. 2. 한 · 미 FTA의 협상타결을 선언하였고, 그 후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 조정 및 법률검토작업 등을 거쳐 2007. 5. 25. 한 · 미 FTA 협정문(이하 '2007. 5. 25.자 공개협정문'이라 한다)을 공개하였다.

다. 이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신통상정책과 관련하여 2007. 5. 25.자 공개협정문 중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제의를 받아 2007. 6.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및 2007. 6.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회에 걸쳐 미국과 사이에 한 · 미 FTA에 관하여 재협상을 추진하였고, 2007. 6. 30. 위 재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 반영된 한 · 미 FTA 협정문(이하 '이 사건 협정문'이라 한다)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7. 12. 이 사건 협정문과 2007. 5. 25.자 공개협정문을 비교·대조하여 본 결과 [별 지1] 정보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개의 조항이 신설되거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1 내지 3 기재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사본 · 출력물의 교부 또는 전자파일의 전송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수령방법: 우편, 전자우편).

그런데 피고는 2007. 7. 25.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열린정부 공무원창구'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의 '부서청구서현황'란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1 내지 3 기재 정보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 이 사건 1 기재 정보 : 양국이 합의한 협상 관련 문서의 협정발효 후 3년간 비공개원칙에 따라 비공개대상임.
- 이 사건 2 기재 정보 : 피고의 기안문서는 대외비이며, 대외경제장관회의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함.
- 이 사건 3 기재 정보: 해당사항 없음.

마. 그러나 피고는 위 정보공개청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7. 12.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지나도 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 다) 제11조제5항에 의해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 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 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이루어진 공개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1, 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 (나)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에 비공개결정의 사유로 적시 하였던 내용 즉. 정부가 미국과 사이에 협정 체결 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대외비에 해당한다는 사유 내지 원고가 구하는 정보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보유 · 관리하고 있 지 않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각 호가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에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관한 요건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 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결정 간주에 의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 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해 피고는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 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2007. 9. 28.자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답변서 부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답변서에는 피고가 2007, 7, 25,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공개결정통지서 출력본(을 제2호증) 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정보비공개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앞의 주위적 주장내용에서 본 바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이므로 취 소되어야 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이 사건 2 기재 정보 중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장인 재정경제부장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3 기재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로서 이들 각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또한 처분의 통지가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의 주체인 행정기관이 직접 통지를 하여야 하고, 답변서의 작성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나 위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법원은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적법한 통지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이 마련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결정 간주가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공개 여부의 결정 및 그러한 결정의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1, 2항 및 제13조제1, 4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이 사건 1 기재 정보와 이 사건 2 기재 정보 중 피고의 기안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가 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이 사건 2 기재 정보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이들 각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정부와 미국은 2006. 4.경 제2차 사전준비협의를 하였을 당시 한 · 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문서는 협상 발효 후 3년간 비공개문서로 취급하되. 보안조치를 전제로 국회 등 업무유관자에 대한 공개는 상호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가 2007, 7, 2,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협정문의 문안 중 2007, 5, 25, 자 공개협정 문과 비교하여 문안이 수정된 주요 사례로 밝힌 내용 가운데 이 사건 1 내지 3 기재 정보와 관 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서문

-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한 · 미 FTA에서 규정한 수준과 동등 또 는 그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내국인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않음을 규 정

• 지적재산권(18장)

- 양 당사국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 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시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 는다는 점을 확인 조항 추가
- 부속서한을 통해 복제약 시판허가. 특허연계 이행의무 위반시 분쟁해결 제소를 협정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

• 노동(19장)

- 당사국들은 '98 LO 선언에 표명된 기본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 해야 한다는 조항, 노동 chapter상 의무에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등 삽입

• 환경(20장)

- 당시국들은 7개 다자화경협약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집행 해야 한다는 조항, 환경 chapter상 의무에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등 삽입

분쟁해결절차(22장)

- 노동. 환경 chapter상의 의무위반시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절차 삭제

• 예외(23장)

-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 쟁해결 패널 또는 중재판정부는 동 예외적용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석 삽입

다. 판단

- (1) 이 사건 2 기재 정보 중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 및 이 사건 3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 · 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에 적용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재정경제부에 소속된 기구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와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고(제4조제1항), 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며(같은 조 제2항),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이 위 회의의 간사로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부처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이를 배부하도록 규정(제8조)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의 작성과 관련된 주무부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소속된 재정경제부라고 할 것이나, 피고 역시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이에 관한 조정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한 · 미 FTA에 관련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위 회의록을 사후적으로 배포받아 직무상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은 피고가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2 기재 정보 중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만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 회의록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문서 · 도면 · 사진 등은 열람 또 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 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의 방법 등 정보가 기록된 매체별로 정보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 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일 뿐,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 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 니고,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 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 두12707 판결 참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3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정문 제22.11조제2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제31조 내 지 제33조에 반영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위 협정문을 검토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7. 7. 3. 보도참고자료를 공표하면서 노동ㆍ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정부와 미국이 상호 교환한 바 있는 서한(별지1 정보목록의 다음 ④항 에 기재된 서한이 이에 해당한다)이 위 제22.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미 FTA를 해석함에 있어 준거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제22,11조제2항의 규정은 한ㆍ미 FTA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가 위 보도참고자료를 공표할 당시 위 서한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위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내지 한 · 미 FTA 제22.11조의 규정과 결부시켜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07. 6.경에 미국과 사이 에 한 · 미 FTA 추가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3 기재 정보를 새로이 생성하였거나 취득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협정문에 신설 또는 변경된 6개의 조항과 관 련하여 양국간의 합의문서와 그와 관련된 수락문서. 즉 양국이 위 6개 조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상호 공통적으로 양해하였거나 이해한 관련 문서를 보유하였거나 이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3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2) 이 사건 1, 2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절차상 하자 유무
-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내지 3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별도로 공개 여부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앞서 처분의 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7. 7. 25.자로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내용을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전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가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소정의 양식에 의한 문서로서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위 홈페이 지에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비공개결정 간주 이전에 원고에게 별도로 비공 개결정을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를 청구한 날인 2007. 7. 12.부터 공 개 여부의 결정 없이 20일이 지난 때인 2007, 8, 2, 피고의 비공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비공개결정 간주가 이루어지기 위한 20일의 기간을 산정함 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이 산입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비공개결정 간주에 의한 처분일자를 2007. 8. 4.로 특정 하였으나, 민원법 제6조제2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 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편의 등을 위해 설정하는 민 원사무의 처리기간의 산정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정기 한 내에 아무런 결정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비공개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 주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 민원법상의 규정이 적 용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갖는 특수성. 즉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이 차후에 그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 는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하고자 하였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이 정하는 비공개결정 간주를 위한 20일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는 민원법 제6조제2항이 아닌 민법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위 20일의 기간이 종료 되는 날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도 위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비공개결정 간주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비공개결정 간주에 의한 처분일자를 기가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2007, 8, 2,로 특정하기로 한다.

②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 음으로 인해 단순히 부작위 상태에 지속되는 경우 청구인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 부작위 상태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곧바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 에 따라 의제되는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정보공개법 제11조제1, 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절 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자체에는 처분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비공개이유 등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과도 일견 상충되는 것처 럼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까지 모두 처분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사유의 통지나 처 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정 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의 대상으로 정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공공기관 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정보비공개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거나 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 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비공개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그러 한 처분의 사유로 보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정보공개법의 각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바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이에 대하여 원고 는 피고가 2007. 7. 25.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는 비공개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주장한 비공개사유가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비공 개사유를 이 사건 소송에서 개진하는 주장으로 추가 ·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 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에 비공개사유를 게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별도로 통지한 것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홈페이지에 비공개사유를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 간주되기 이전에 별도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2007. 7. 25. 이 사건 홈페이지에 기재하였던 비공개사유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해당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1, 2 기재 정보는 정부가 2007. 5, 25, 자공개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신통상정책과 관련된 추가 협상을 제의받은 내용과 함께 미국과 사이의 추가 협상의 진행경과 등을 보고하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한 문서로서 경제외교관계와 관련된 통상교섭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섭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정보는 정부가 2007. 4, 2, 미국과 사이에 한 · 미 FTA의 협상타결을 선언하고 2007. 5, 25, 자 공개협정문을 공개한 이후 2007. 6, 경 미국과 사이에 2회에 걸쳐 추가협상을 추진하여 이 사건 협정문에 최종서명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작성 · 교환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가협상 과정에서의 한 · 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 · 미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또한 한 · 미 FTA 협상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한 · 미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합의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됨으로써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함과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위 한 건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통상에 관한 사항 이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이 보다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므로 통상교섭에 관한 사항 중 일정 부분은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그 일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 여 공개되어져서는 아니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통상교섭에 관한 합의사항의 전부가 반드 시 공개되어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도 비공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투 명성 부족의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나 이후의 합의 실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 점에 대한 비판에 의해서도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보 더라도 이 사건 1, 2 기재 정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공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1, 2 기재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부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7. 9. 28.자 답변서의 제출로 원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3 기재 정보에 대하여 비공 개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의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으로부터의 일 정한 처분, 특히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행정청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 또는 각하되었다는 취지가 청구인에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 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피고 소송대리인 작성의 답변서를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으로 는 볼 수 없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권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대 한 처분을 발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가 2007. 9. 28. 원고에 대하여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워고에 대한 2007. 9, 28,자 정보비공개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러한 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이 사건 3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 정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2007. 6. 30.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서

- 1. 다음 6개의 신설조항의 수용과 채택을 한국에게 요구하기 위한 미국의 통지문서
- 2 다음 6개의 신설조항을 수용 · 채택하기로 한 피고의 기안문서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
- 3. 위의 문서를 공개하기 어려울 경우,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라 다음 6개의 신설조항의 해석에 참고가 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각 신설조항에 관한 합의(제 31조 제2항 (a)호) 및 위 각 신설조항과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된 문서(제31조 제2항(b)호)

-다음

① 서문에서 새로 추가된 사항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미국에서 그러하듯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 보호가 이 협정문에서 제시된 보호와 동등하 거나 그 이상인 그런 국내법에 따른 투자 보호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투자자에 비해 더 나 은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며

② 1장에서 새로 수정된 조항

territory means:

(a) with respect to Korea,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영토란.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 및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 를 포함한 해양 지역

③ 4장에서 새로 신설된 조항

wholly formed and finished means:

- (a) when used in reference fabric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necessary to produce a finished fabric ready for use without further processing. These processes and operations include formation processes, such as weaving, knitting, needling, tufting, felting, entangling, or other such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including bleaching, dyeing, and printing; and
- (b) when used in references to yarn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beginning with the extrusion of filaments, strips, film, or sheet, and including drawing to fully orient a filament or slitting a film or sheet into strip, or the spinning of all fibers into yarn, or both, and ending with a finished yarn or piled yarn.

완전 형성 및 마감이란.

- (a) 원단에 대해 사용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공정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품 원단을 생 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산 공정 및 마감 작업을 의미한다. 이 공정과 작업에는 제직, 편직, 바느질. 터프팅, 펠팅, 인텡글링, 또는 그 밖에 동종 작업과, 표백, 염색, 날염 등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b) 원사에 대해 사용할 경우에는, 장섬유, 스트립스, 필름, 또는 쉬트를 압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실 을 뽑아 완전히 장섬유로 기공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얇게 벗겨 스트립을 만들거나, 섬유 원료를 자아 원사로 만들거나, 또는 위 둘을 포함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공사 또는 제연사를 생산하는 그러한 모

든 생산 과정과 마감 작업을 말한다.

④ 19장과 관련된 노동-무역분쟁 처리 교환 서한

미국의 슈와브(Susan C. Schwab) 무역대표부 대표가 2007. 6, 30.자로 김현종 본부장에게 보 낸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성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분쟁해결 에 회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

⑤ 18장에서 새로 신설된 조항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Korean will invoke Article 22.4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y's obligation under Article 18,9.5(b) of the Agreement during the first 18 months after the date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Should either Party have concerns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y's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18,9.5(b) during the first 18 months after the date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consistent with Article 22,3 of the Agreement an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consul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ose concerns.(부속서한)

미국이나 한국은 모두 협정문 18.9.5(b)조에 따른 상대국의 의무에 관해서,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첫 18개월간은 협정문 22.4조의 제소 절차를 추구하지 않는다. 만일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첫 18개월 동안에, 어느 한 나라가 상대국이 협정문 18.9.5(b)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경우, 미국이나 한국은 협정문 22.3조에 부합하게, 어느 한 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국의 염려에 대해 상호 만족할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⑥ 23장에 새로 신설된 조항

For greater certainty, if a Party invokes Article 23,2 in an arbitral proceeding initiated under Chapter Eleven(Investment) or Chapter Twenty-Two(Institution Provisons and Dispute Settlement), the tribunal or panel hearing the matter shall find that the exception applies,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일방의 국가가 11장(투자) 혹은 22장(제도 규정과 분쟁 처리)에 따라 개시된 중재 절차에서 23,2조(필수적 안보 예외)를 원용하는 경우, 이를 접수한 중재판정부 혹은 판정단은 그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정해야 한다. 끝.

국방 등 국익침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교신문서 등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 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2]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 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 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 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공기관 이 같은 법(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 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 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 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 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 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

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 문

- 1. 피고가 2002, 9, 23. 별지 공개허용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공개대상목록 기재 문서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그 밖의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9,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의 정 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강점기에 군위안부,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거나,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의 일본기업에서 강제근로를 함으로써, 또는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 및 그 유족이라고 하면서 2002. 9. 5. 피고에게 1952.부터 1965.까지 사이에 있었던 우리 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등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문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9. 23. 그공개를 거부한(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워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하려고 준

비중인데. 일본과 일본기업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함과 아울 러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65, 6, 22,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 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 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소 멸에 관한 그러한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문서를 통하여 청구 권협정의 경위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 니. 이에 반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을 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거 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본 안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문서는 한일회담의 최종결론에 이른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의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여부는 청구권협정 및 그 부속서인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 며, 청구권협정이 있은 후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에 관하여 보상을 마쳤으 므로, 이 사건 문서의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원고들이 그에 의하여 실제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고, ② 이 사건 문서는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 외에 어업 및 평화선, 문화재,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 위에 관한 협의사항들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국의 심각한 입장 차이와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등이 담겨져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양국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반일, 반 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외교관례상 이와 같은 문서는 당사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문서에 관하여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 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북한과의 수교교섭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들어 우리 정부에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어 우리 나라가 이를 공개할 경우 국제관계에 서 국가적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 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

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제6조제1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 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국민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실제로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공지의 사실 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상의 증언, 이 법원의 비공개 문서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한일회담의 경과 및 이 사건 문서의 구성

1951, 10, 21, 예비회담을 거쳐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 개최로 우리 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에 따른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대한민 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청구권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문서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각 회의록, 양국의 교신서류, 우리 정부와주일 대표부의 교신서류, 교섭방침에 관한 지시 및 훈령, 교섭내용이나 전략에 관한 각종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권협정의 주요 내용

청구권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이 우리 나라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 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9. 8.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 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 8. 15.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 8. 15.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 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 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위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 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 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 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 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및 지은(

地銀),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대한 각종 저금, 채권 등, 1945. 8. 9. 이후 일본인이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예금액,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 법인의 재일 재산, 한국인이 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의 유가증권, 은행권 등과 함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인의 대 일본국정부 청구 은급(恩給)관계,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논란

청구권협정 제2조와 합의의사록이 위와 같이 정하고 있음에 관하여,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인지, 혹은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 상청구권도 포기된 것인지(그리고 그것이 포기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는데,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일 뿐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은 것이고 포기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입론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입장과 그와 달리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대립하였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던 원고 51, 60 등이 2000. 9. 18. 미국 위상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일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당 재판부에 청구권협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 정부의 보상조치

정부는 1966. 2. 19.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조제1항), 1971. 1. 19.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범위와 신고기간, 증거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1974, 12, 2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금 액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위 각 법률규정상 피징용사망자와 재산권을 보상대상으로 할 뿐 피징용부상자, 군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등은 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고기간도 대 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시행 60일 경과 후부터 10월 이내로 한정되었으며. 보상금은 피징 용사망자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는 일본국 통화 1엔당 30원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피징용사망자 8.552명에 대하여 약 25억 7천 만 원. 예금·채권 등 재산 74.967건에 대하여 약 66억 2천만 원. 합계 약 91억 9천만 원의 보상 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법률은 1982, 12, 31, 모두 폐지되었다.

정부는 그 후 1990.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비, 장제 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1993. 6.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생 존한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이 사건 문서의 공개 여부에 관한 피고의 내부결정

1993. 7. 28. 제정된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에는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는 피고가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경과한 해의 다음해 1월에 일 반에게 공개하되, 다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국가이익의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 우. 개인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명백하고 부당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제4조제1항, 그 후 정보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8. 7. 6. 위 규칙이 개정되어 비공개 대상을 위 심의회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3, 10,경 이 사건 문서의 공개 여 부를 검토하면서 외교관례에 따라 당사국인 일본 정부의 의견을 물었는데, 일본 정부가 장기간 에 걸친 교섭기록이므로 일반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취 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일본의 외교기밀에 관한 중요 사항이 담겨 있어 일본 정부도 공개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상호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개 여부를 신중히 심사하고 공개하 는 경우에도 가급적 양국이 동시에 공개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오자. 피고는 공 개로 인하여 일본과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1994, 1,경 이 사건 문서를 공 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고. 그 후 1997. 1.경 일본정부는 북한과 일본의 수교교섭에 장 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문서를 당분간 공개하지 말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며, 그러한 입

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6) 원고들의 손해배상소송

일부 원고들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군위안부,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으로 강제동원되거나 일본기업에서 강제근로를 함으로써 또는 우키시마마루 호 폭침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6조), 이 사건 문서가 한일회담의 최종결론에 이른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의 정보라 하여 비공개대상으로 할 법률상의 근거나 합리적 이유는 없다(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단계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장차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최종결론이 난지 30여 년이 경과한 이 사건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권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합치된 해석이 어려워 많은 논란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조약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그 문언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당사국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여기에 조약 체결시의 역사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약 문언의 해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약의 준비문서도 해석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이 사건 문서를 이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의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정부가 앞서 본 보상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이미 마쳤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본 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 국민 일부에 대한 그리고 피해의 일부에 대한 보상에 그친 것이므로, 그러한 보상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보상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국민이 더 이상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니. 그러한 보상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을 실제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문서를 보충적 수단으로 삼아 청구권협정의 의미를 해석 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차의 판단 사항일 뿐이다).

(2) 한편, 이 사건 문서에는 한일회담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양국의 여러 현안에 관한 구체적 주 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에 관한 지시 및 훈령. 교섭전략 등 우리 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장래에도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개를 보류하여 달라는 일본정부의 요청 자체가 외 교관계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외교관례에 따르거나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 하여 당사국인 일본의 요청을 존중하는 것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 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 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 어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 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 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이 사건 문 서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피고가 공개를 거 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비공개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 중 순번 36번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에 1963. 3. 5.자 외무부의 '한일회담 일반청 구권문제'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제1차부터 그때까지의 한일회담 경과, 우 리 정부가 제시한 청구항목, 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 청구권협정의 세목에 관한 토의 등 이 정리되어 있는 사실, 그 이후에 작성된 순번 48번 '속개 제6차 한일회담 : 청구권위원 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순번 55. 56번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후 령'(전2권), 순번 57번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 료'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의 해결에 관한 양국의 인식을 표시한 자료가 포함되 어 있는 사실(순번 48, 55, 56, 57번 문서에는 개인적 청구권의 해결과 무관한 사항도 많 이 포함되어 있으나, 순번 36번 문서와 달리 관련 부분을 따로 특정하기 어렵다), 그 외의 문서들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에 정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와 순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은 청 구권협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 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 외의 문서들은 따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 문제의 판단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나 이가 매우 많아 그들에게 개인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며, 위 문서들은 생산된지 30년이 훨씬 지나 당시의 외교 기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여 그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볼 것인 데다가(외교기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 공개 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면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원칙적 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 다), 위 문서들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고 하더라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원고들 중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본 강점기에 입은 피해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익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그 소송에

서의 청구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와 순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한편 이를 비공개함으로 인 하여 보호되는 국익은 그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볼 것인바. 결국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정보의 부분공개를 정한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위 문서들 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문서들 부 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다만 그 밖의 원고들은 일본 강점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특 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들 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별지 공개허용원고목록 기재 원고 들의 별지 공개대상목록 기재 문서들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 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그 밖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 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후단(전부 패소한 원고들에 대하 여),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판단기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제3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1두3358,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466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46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제보자의 신원정보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의 판단 방법
- [2]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 사가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보 자의 성명, 주소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 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위 제6호 단서 (다)목은 '공 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개하 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 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 사가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 공개로 인해 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피제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제보자의 성명, 주소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 문

- 1.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정보제공자의 연락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국가정보원은 2005. 8.경 "디지털 방송계측기 개발 \cdot 판매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소외 2, 3, 4, 5, 6, 7, 8등 8명이 원고로 이직한 후 소외 1 주식회사근무 중지득한 소스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개발 \cdot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해 9.경 이를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첩하였다

나.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제보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한 후 2005. 12. 8. 원고를 압수수색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디지털 방송용 ts분석기 · 모니터의 제작기술과 위 압수수색 결과 입수한 원고의 디지털 방송용 ts분석기 · 모니터의 제작기술 에 관한 비교분석을 의뢰하였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양자의 소스코드가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자, 이 사건 제보에 관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한 사람(이하 '이 사건 제보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연락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제보는 그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인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관한 것이 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이 사건 제보자의 생명 등이 위협을 받거나 그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3 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 (3)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4조제3항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4조제3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 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정도에 불과 하고 달리 이 사건 제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 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4조제3항의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원고가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도모하는 외에 사적으로 제공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 있고, 다만 같은 규정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특정인 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압수 수색을 받게 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 여 이 사건 제보자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 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 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 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권리구제 목적은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의 공 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연락처 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하여 한 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약력

판시사항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08. 7. 23. 피고에게 주문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8. 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사전적으로 집단적 · 조직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 고 사후적으로는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비난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에 의한 폭언 · 협박 등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다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 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 대상자의 선정이나 최종적인 사면 여부에 관 한 결정 권한은 없고, 단지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이하 '특별사면 등'이라 한다)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데 그친다. 따라 서 특별사면 등의 상신 여부와 최종적인 특별사면 등 여부의 결정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과 반 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을 알 수 있는 심의서와 회의 록은 특별사면 등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에 한하여 공개되고 사면심사에서 부적정으 로 결정한 사안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심의서에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면심사위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은 대통령 이 특별사면 등의 대상자를 확정ㆍ공표하고 난 후 특정인이 특별사면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그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상신하는 심사과정에 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폭 언ㆍ협박 등의 위해를 가하리라는 가정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 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은 장려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하여 형성되 여론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면권의 적정한 행 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면 결과에 관한 대대적 · 집중적인 비난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에서는 위 조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위 조항 중 이 사건 정보와 그나마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정도인데, 사면심 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해당 여부

피고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광범위한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되어 심사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워져 법치주의만을 내세우며 사면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국민통합, 경제살리기 등 통치적 관점만을 내세우는 등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비난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아예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사면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함에 있어서 그 상신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을 하는 데 있다.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사면심사 업무의 수행이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에 더하여 반드시 위원들에 관한 정보가 감추어진 가운데 비밀리에 이루어져야만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가) 사면법 시행령은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를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에 한하여 심의서와 회의록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공개시기도 심의서는 해 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

한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조). 이러한 제한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사 면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를 금 지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면법 시행령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 23조의2제2호가 명문으로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 (나) 심의서에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하 고, 위원장 및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 ·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사면법 시행규칙 제10 조). 심의서는 당해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서를 공 개할 때 위원들의 서명 또는 기명 · 날인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심의서의 일부로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사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출석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 · 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임기가 2년이 고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차회의 사면심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의 명 단을 특별사면 단행 후 즉시 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을 보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의 비공개가 공정한 사면심사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속되어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 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 야 한다(사면법 제10조의2 제2항, 제3항),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 정실장 · 법무실장 · 검찰국장 · 범죄예방정책국장 · 교정본부장 · 감찰관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장·공판송무부장,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사면법 시행규칙 제3조). 이러한 인적 구성에 비추어 보면 특히, 공무원이 아닌 4인 이상의 위원들이 광범위한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심사과정에 어 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에도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 경우에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절차적 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라)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법 질서에 대하여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아주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국회의 동의를 거쳐 명할 수 있는 일반사면과는 달리 대통령이 특별사면 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어 그동안 그 남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 사면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에는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그 의사결정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여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과 같은 공직자의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직 자의 신분이나 담당 업무가 일반에 알려진다고 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것도 없으 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 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하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 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10두7048, 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04두12629

판단기준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담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 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05두15694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 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10두7048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 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됨. 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10두24913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 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 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 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09두12785 1 재판 관련 정보 등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3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농지취득자격, 취득농지의 사후관리, 직불금 관련 자료

주 문 1.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8.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해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서면장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한 공개대상 정보는 단지 재판에서 심리 중인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이므로 정보 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 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 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 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6, 강원도지사 등을 상대로 춘 천지방법원에 2012구합1288호로 군계획시설 결정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 당 시 그 소송이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한 목 적이 원고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위 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데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위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 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 삿젓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순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권취득일	소유자
전1		전	5,266	1997. 12. 16.	
전2		전	145	1996. 12. 2.	
전3		전	1,587	2004. 6. 10.	
전4		전	2,704	2004. 6. 10.	
전5		전	2,562	2004. 1. 28.	
전6		전	1,031	2004. 6. 10	
전7		전	1,894	1996. 7. 22.	
전8		전	6,516	1996. 7. 23.	
전9		전	545	1996. 7. 23.	
전10		전	1,967	1996. 7. 23.	
전11		전	7,326	2004. 6. 30.	
전12		전	5,379	1996. 7. 2.	
전13		전	992	2007. 5. 25.	
전15		전	7,914	1996. 7. 2.	
전16		전	4,509	1996. 7. 2.	
전17		전	3,977	1996. 8. 9.	
M 22		전	255	2001. 4. 10.	(주)
전22				2005. 4. 22.	
답1		답	433	2005. 2. 25.	
답2		답	317	2005. 2. 25.	
답3		답	833	2005. 2. 25.	
답4		답	985	2005. 1. 12.	
답7		답	929	2005. 1. 12.	
답8		답	592	2005. 1. 12.	
답11		답	1,078	2005. 1. 12.	
답12		답	3,107	2008. 12. 16.	
답13		답	6,311	2004. 6. 10.	
답14		답	506	2004. 6. 10.	
답15		답	496	2004. 6. 10.	
답16		답	5,957	2004. 6. 10.	
답17		답	417	2004. 6. 10.	
답18		답	787	2004. 6. 21.	
답19		답	2,817	2004. 6. 21.	
답20		답	1,002	2004. 6. 21.	
답21		답	139	2004. 1. 28.	
답22		답	2,079	2004. 1. 28.	
답23		답	536	2004. 1. 28.	
답24		답	1,107	2004. 1. 28.	
답26		답	1,326	1996. 7. 2.	

순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권취득일	소유자
답27		답	413	1996. 6. 22.	
답28		답	182	1996. 7. 23.	
답29		답	496	2004. 6. 10.	
답30		답	109	1996. 7. 23.	
답31		답	36	1996. 7. 2.	
답32		답	3,296	1996. 7. 23.	
답33		답	2,866	1996. 7. 23.	
답34		답	906	1996. 8. 9.	
답35		답	241	1996. 8. 9.	
답36		답	3,488	1996. 8. 9.	
답37		답	456	1996. 7. 23.	

강원도 홍천군 서명 팔봉리 산 000번지 일원에서 주식회사 ㅇㅇ리조트가 시행하고 있는 "홍천 ㅇㅇㅇ 골프리조트 조성공사"의 사업주에 포함된 아래 농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자료들 ※ 위 도표의 '전1', '답1' 등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지목별 토지조서상의 번호임

(1) 농지취득자격 관련 자료

- ① 위 도표의 각 농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귀청이 위 소유자들에게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서 일체
- ② 위 소유자들이 귀청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기타 위 소유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일체

(2) 취득농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위 각 농지에서의 경작에 관한 자경증명서(自耕證明書), 기타 귀청이 농지방법원 제10조 등에 의 한 농지 소유의 사후관리를 위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등 기록매체 일체

(3) 직불금 관련 자료

- ① 위 소유자들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 ② 등록되었다면, 등록대장 등본을 교부하고 이들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 금.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내역을 공개할 것.

↑ 기 재판 관련 정보 등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028]

정보공개결정취소



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관련 자료

주 문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8, 소외 B에 대하여 한 각 정보공개결정과 2012, 8, 30, 소외 C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이를 유지 \cdot 관리하는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 단법인이다

나. 충청북도지사는 2007. 5. 28. 충주시 D 일원 969,157㎡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피고는 2008. 10. 2. 위 도시계획시설 사업(재단법인 A 공동묘지조성사업, 이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다. 소외 B은 2012.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2008년 실시계획인가 서류 및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날 '충주시 E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서류, F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서류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소외 C은 2012. 8. 20. 피고에게 '충주시 G 토지 및 H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7. 및 2012. 8. 23. 원고에게 B, C의 위 각 정보공개청구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B, C과의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12. 7. 19 및 2012.

8. 27. 피고에게 위 B. C의 각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요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8, 28, B에게, 2012, 8, 30, C에게 각 그 청구 정보를 공개한다는 처분을 하고, 각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 C(이하 통칭하여 'B 등'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I공원 묘역의 일부를 분양받았다거나 원고 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임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민사소송을 제 기하거나 형사고소 · 고발을 한 사람들이다. B 등이 공개를 청구한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원고가 B 등이 공개를 청구한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원고가 B 등과 진행 중인 소송에 관련된 것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B 등은 원고를 상대로 추가적 인 고소·고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정 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 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 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 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 여부¹

갑 제11호증, 갑 제 14호증 내지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이 충주시 E 등 토지를 1987년경 원고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원고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실, C이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신청하여 발령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

¹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제(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계획인가 및 그와 관련한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협의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유효한 분양계약의 존부나 대여금 채권의 존부 등이 문제가 되는 위 각 재판의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 이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 보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B이 제기한 위 소송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3, 1, 15, 대법원이 B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법 제9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그와 관련된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협의 등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가 원고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B 등이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 으로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정보는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 재판 관련 정보 등

[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

판시사항

-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하자 위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항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추가한 같은 법 제9조제(항제4호 처분사유는 당초의처분사유 제5호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제9조제(항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 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 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 부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 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 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5호는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 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하고 있어 비공개사유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 · 독립성, 범죄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제5호는 감사·감독·시험·입 찰계약 등의 과정에서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제5호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 법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 으로 고려하여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4호는 당초 처분사유인 제5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 고, 추가로 주장하는 제4호가 처분 후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 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찰 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 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 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낙동 강살리기사업 공사는 각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이를 토대로 입찰이 이루어 져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고 실시설계적격자에 의하여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 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정보가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추정금액은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입찰 및 사업자선정을 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 가 선정된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공사 방식 사업의 경우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 도 이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1935 판결

주 문

-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

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정부 산하 3개 위원회 및 4개 부처 합동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 방식(이른바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09. 6. 29. 낙동강살리기 20, 22, 24, 30, 32, 33공구 사업(이하 '이 사건 1단계 공사')에 관하여, 2009. 10. 6. 낙동강살리기 25, 31공구 사업(이하 '이 사건 2단계 공사')에 관하여 각 국제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1) 이 사건 1단계 공사는 2009. 9. 30. 입찰 결과 ㅇㅇ건설 주식회사 등 6개 업체가 각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는데, 위 업체들은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하여 피고로부터 설계적격심의를 받아 2010. 3.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단계 공사에 관하여 최종수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이사건 1단계 공사 중 20, 22공구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이 피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 (2) 사건 2단계 공사는 2010, 1, 26. 입찰 결과 주식회사 △△건설, ◇◇기업 주식회사가 각 실 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위 업체들이 한 실시설계에 대한 피고의 설계적격심의 중에 있다.
- 다. (1) 원고는 2010. 3, 8, 피고에게 이 사건 1, 2단계 공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 금액(추정가격)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2) 피고는 2010, 3, 11, 원고에게, 낙동강살리기사업은 현재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계약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9,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고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 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 건 2단계 사업은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호로 피고가 한 낙동강살리기사업 하천공 사시행계획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위 행정소 송과 직접적 ·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1, 2단계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후 선정된 업체들의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심의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최종적인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소정의 '입찰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이고, 한편위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실시설계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내부적인 구체적 배점기준을 미리 알려주는 결과가 되어 최종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추정금액의 구체적 산정근거가 공개됨으로써 공종 분야별 구체적 산정근거는 알려주지 않고 추정금액만 알려주어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창의적인 설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피고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것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아니었고, 피고가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위 행정소송과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입찰 전에 국제입찰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추정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뿐 이후 진행되는 입찰업무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이 사건 1, 2단계 공사는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우선시공분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착수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할 여지도 없으며, 실시설계적격자의 실시설계의 적격심의절차와 이 사건 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판단

- (1) 이 사건 처분의 사유 · 근거 법규 및 그 추가 가능 여부
- (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현재 계약절차가 진 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그제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 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 및 근거 법규로 정보공개법 제9조 몇 항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처분내용을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입찰계약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서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 및 근거 법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사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라고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사유는 이 사건 처분 후 추가된 것으로 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 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 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5호는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

보로 규정하고 있어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 · 독립성, 범죄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제5호는 감사 · 감독 · 시험 · 입찰계약 등의 과정에서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제5호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없고, 추가로 주장하는 위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가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위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을 5호증, 6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호와 2009아537호로 낙동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신청이계속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위 재판과 직접적 ·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위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위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 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 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 런 증거가 없고(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 법원의 비공개 증거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한 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 2단계 공사는 그 각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이를 토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실시설계적격자 가 선정되고, 실시설계적격자에 의하여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 므로, 이 사건 정보가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추정금액이란 발주 자가 입찰공고를 하기에 앞서 입찰대상자 및 적정입찰가격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배정 을 하기 위하여 특정 공사에 소요되는 예상 금액에 대하여 산출하여 놓은 것으로서 이는 입찰과 정에서의 공정한 입찰 및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입 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통상인바. 이른바 턴 키방식의 사업의 경우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③ 이 사 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 사건 1, 2단계 공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 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는 등으로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

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 관련 정보 등

[대법원 2009두127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교도관 근무보고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취 해야 할 조치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 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
- [3]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 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공개가 가 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의 의미
- [4]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 명자료 확보를 위해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 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 · 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 당하지만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리 공개 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 수집 ·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 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3조에서 공공 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 명하고 있고, 위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 면,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 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 · 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
- [3]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수 있음을 인정할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4]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근무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위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

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재소자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리공개가 허용된 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 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01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 수집 ·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 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 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 제9조가 예 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 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 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호의 어디에 해 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 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 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 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한편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 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 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8,22,선고 2002두12946판결, 대 법원 2004.12.9.선고 2003두12707판결, 대법원 2007.2.8.선고 2006두4899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판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07.1.19.경 독방을 요구하면서 입실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 우다가 교도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하고 같은 해 1.23.자 및 2.2.자 각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해 명을 하였으나 각 경고 및 금치 15일의 처분을 받자 그 무렵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증명자료확보를 위해 피고를 상대로 위 1,19.자 근무보고서와 1,23.자 및 2,2.자 각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수 있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위 근무보고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행형법」제7조 및 구「교도관직무규칙」(2008.12.19.법무부령 제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에 근거하여 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하는 근무보고서에는 그 사유 발생의 상황 및 이를 알게 된 경위, 그 처리와 대처방안 등이 기재됨으로써 이를 통해 교도관들의 근무방법 및 근무형태, 대응수단 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 사건 근무보고서 역시원고의 위 1.19.자 소란행위에 대해 근무자들이 당시 상황 및 대응방법 등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수용자들에 의한 보복이 우려되는 현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근무보고서를 공개하면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의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교정 업무 수행 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이 부분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무보고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작성·보관하는 공문서인 이상 원칙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공개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근무 중 수용자에게 발생한 사유 혹은 그 대처방안에 따르는 책임 여부나 소재 등이 문제될 경우 수용자의 권리구제 내지 교정 업무의 적법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내지 보고적 성격의 위 근무보고서 기재내용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개 및 검토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제1심이 비공개 열람을 통해확인한 이 사건 근무보고서(기록 202면 이하)의 실제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1,19.자 소란의 경위 및 상황을 담당 교도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공개가교정 업무의 수행에 어떠한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무보고의 대상인 원고가 당시 교도관들의 대처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한 이상 법률상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고에게 이를 공개한다 하여 일반적 교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그 공개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로서도 교정 업무의 투명성 측면에

서 이를 제시 ·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위 근무보고서의 기재내용을 통해 교도관들의 근무방법 등이 파악될 소지가 있다거나 교도관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수용자들로부터의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는 일반적 혹은 부수적 사정 만으로 이 사건에서 이를 공개함으로써 교정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 · 구체적 이고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일반적 · 추상적인 위험성만을 강조하여 그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 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 등에서 규정한 교정 업무의 정보 공 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 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 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 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3.11.선고 2001두6425판결, 대법원 2005.1.28.선고 2002두 12854판결 및 법 제14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징벌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위 워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원고를 참석시켜 징벌절차를 진행한 다음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 이 기재된 위 각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ㆍ의결 부분은 그 심사ㆍ결정절차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내용이 공개된다면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그에 앞서 원고 참석하에 이루어진 원 고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원고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이를 공개한다 해서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분리공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정벌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및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9조제1항의 비공 개대상정보 및 법 제14조의 부분 공개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고,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해당 정보의 분리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안이어서 이 부분 원심판결과 모순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입법취지

행정내부에서의 자유롭고도 솔직한 의견의 교환을 확보하고, 내부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 보가 외부에 제공되어 주민에게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나 일부의 자에게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회피하며,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 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 업 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함. 2003헌바81, 2010두24913

판단기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 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 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 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9두19021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 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 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6두15936 등

 $\cap 1$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대법원 2013두20301]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 [2] 甲이 친족인 망 乙 등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하였다가 독립유공자 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받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보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국가보훈처장이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사안에서, 위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2] 甲이 친족인 망 乙 등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하였다가 독립유공

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포상에 포함 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받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들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국가보훈처장이 위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사 안에서, 독립유공자 등록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에는 불가피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관계 법령에서 제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심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 서의 심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 정한 심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큰 점 등 위 회의록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 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 · 교량해 볼 때, 위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워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1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 0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 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 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 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독립유공자 등 록을 신청한 망인들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고 만 한다)의 심의 · 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회의록에 관하여. ① 이 사건 회 의록을 공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공적 인정 과정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는 신청당사자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객관적ㆍ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일 뿐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거나 전문적 · 학술적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독립운동 공적 인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을 공개하여 공론화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③ 심사위 원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학식.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로 인하여 그들 업 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의 명단.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 는다면. 특정 발언자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위원회 내부의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염려가 거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와 독립유공자 등록 결정의 취지 및 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1)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피고가 영전 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이어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4764 판결 등 참조) 신청당사자의 알권리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은 피고는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의 구체적 사유를 밝혀 신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참조), 이로써 신청당사자의 알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

유공자 등록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알궈리 보장에는 불가피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관계 법 령에서 그 제하음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독립유공자 등록의 요건인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그 객 관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 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아울러 등록신청 대 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 시까지 행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공적심사위 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 · 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 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3) 반면 위와 같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 및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심사 결과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개로 인하여 신청당사자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 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 고, 심사위원들로서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 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이 사건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 법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교랑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의록은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그런데도 워싞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80847]

손해배상(기)



방송문화진흥원 이사회 회의록

주 문

- 1.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4.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방송문화진흥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방송문화진흥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되 증거들에 의하여 이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2013, 3,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사장 김ㅇㅇ 을 해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장 해임과 관련하여 그 과정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3. 4. 1.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송문화진흥회 회의개최 일자와 개최 일자별 회의안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2013. 4. 3.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관련부처의 유

권해석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안전행정부에 피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관하여 민원 형식의 질의를 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피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정보 공개법상의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13. 4. 18.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에게 '방송문화진흥회가 2013년 3월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2013. 4. 25.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 현재 작성 중에 있으므로 회의록이 최종 완료된 후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서면통지하고, 2013. 5. 8. 이메일로 재차 같은 내용의 통지만 한 채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계속 미루었다.

라. 원고는 2013. 5. 21. 정보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같은 날 이메일로 다시 전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3. 6. 12. 서면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반복하여 통지하였다.

마.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의 변론 종결 시점인 2013, 12, 2, 현재까지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 A는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신청 접수 및 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인지 여부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설립 목적이 피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 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에 있으며, 그

업무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 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 점.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주식회 사 문화방송의 주식 70%를 출연 받아 설립된 법인인 점,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은 국회 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 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는 점,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 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사와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는 등 그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 회의 관여 및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 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 당한다.

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에 정하여진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 측이 주장하는 위 법 제9조 제1항제5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시로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들고 있으나.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의 해임과 관련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아직 형성과정에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공개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공정 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장의 선임.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정관의 변경. 방송문화진흥회가 최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기본운영계획,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방송문화진흥회 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직 위이고, 상법상의 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과 비치가 강제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 자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인하여 이 사들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다소 있을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다소 위축이 초 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이 사회 회의록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날인 등이 없어서 완성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안 형태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내용도 이미 특정되어 있었으며, 그 작성에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점(피고 측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은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모두 피고 측의 지배영역에 있는 문제들로서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해결 가능한 것들로 보인다) 등을고려해 볼 때,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피고 방송문화진흥회가 고의로 정보공개법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 판단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수 있도록 위 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제6조).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나,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하며 (제11조),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한 다(제13조). 또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으나,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한다(제18조).

그런데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인지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만연히 그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원고가 직접 안정행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재차 정보공 개청구를 하자. 정작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 중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미루며 회의록 작성 중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 을 반복적으로 들면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결정을 미뤘으며, 이사회 개최일로 부터 8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는바. 피고 방송문화 진흥회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원고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보공개의무 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위와 같은 제반 절차들을 위반하며 납득하기 어 려운 사유를 들어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지연함으로써 마땅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 방송문화진 흥회가 위와 같은 태도를 지속할 경우 비록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방송문 화진흥회는 원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과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등 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방송문화진흥 회에 대한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도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 A는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 방송문화진흥회가 결정한 사항의 정당성이나 위법성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고 하여도 그 지시에 불응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 A가 담당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의 결 정 사항들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 고. 달리 피고 A에게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 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03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본인이 제출한 답안지

주 문

1.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할 전문 가소러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2차 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농산물 표준규격,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수확 후의 품질관리 기술 등'을 시험범위로 하여, 단답형 및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이하 '이 사건 시험문제'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19, 시행한 2012년도 제9회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채점결과 100점 만점에 42점을 받아 합격 기준점인 60점에 미달되어 불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자신이 작성한 답안의 열람을 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0.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2012. 10.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2012. 10. 1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험문제는 단답형과 짧은 서술형이며 답이 명확한 계산문제이고, 원고는 채

점기준과 평가내용을 배제하고 본인 작성 답안 내용의 공개만을 구하므로, 채점결과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다. 판단

- 1) 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 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 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그 입 법취지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그 직무의 속성에 반하고 종국적으로는 더 이상 당해 직무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업무와 관련된 정보 중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기밀성 등을 요하는 대인적 · 주관적 평가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시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 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 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 2) 이 법원의 비공개 정보 열람 결과 및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시험문제와 관련된 원고의 답안 열람 청구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일반적으로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평가기준은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 ·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된 영역이므로 그 공개로 인하여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저해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험문제는 단답형, 짧은 서술형, 답이 명확한 계산문제

로 구성되며, 시험문제 배점이 2 내지 5점으로 구분되나 배점이 높은 문제도 개별적인 여러 항복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묻고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그 채점기준이 다의적이라든가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한다든가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② 원고의 답안지에 피고의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을 하여 답안지 열람으로 채점결과가 공개되기는 하나, 여러 명의 채점위원들의 평가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해점 위원 1인이 맞고 틀린 것을 표시하고 점수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아, 채점위원들간 평가결과가 달라 평가기준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향후 피고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평가자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되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 ③ 원고는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답안지를 사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공개, 다수 응시자에 의한 사본 교부 청구 및 채점결과가 한 곳에 취합되어 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자들로부터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이의제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할 수없고, 본인 답안지 열람으로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하고 있어 공개로 인한 피고의 업무가폭증한다든가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④ 응시자의 성적에 관한 정보는 시험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재시험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대구고등법원 2012누27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내부 감사과정에서 제출된 경위서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8구합360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279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경 경북지방경찰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 B, C, D, E (이하 '관련 경 찰관들'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다(이하 위 고소사건을 '이 사건 고소사건' 이라 한다).

(1) 경북 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B, C, D은, ① 2007. 1, 2, 15:10경 경북 의성군 G 소재 원고의 집에서 누군가가 원고의 음식물에 농약을 타놓고 부엌 반대편 아궁이에 쌓아둔 땔 감을 훔쳐갔다는 원고의 신고를 받았으면, 검사기관에 음식물의 농약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절도 피의자의 검거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약판매업자를 상대로 음식물 에 잔존하는 농약냄새 유무만 확인하고 땔감 절취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자연침하 및 소실된 것 으로 판단하여 종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고. ② 위와 같은 일 시경 원고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의성경찰서 F지구대로 일시 수거해 간 국 냄비에 대하여 확인 이 끝났으면 워고에게 국 냄비를 반화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화하지 않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 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경북 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은, 2007. 5. 31. 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 팀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내용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받았으면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원고의 이웃 주민으로서 피의 자로 의심되는 H 및 H와 친한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내사종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감찰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그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1) 경찰청 기능별 비공개 세부기준에 의거 비공개(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 (3)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381호) 제5조에 의거 비공 개(이하 '제3처분사유'라고 한다)
 - (4)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이하 '제4처분사유'라고 한다)
- (5)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정보공개 관련 담당자(경감)에 대한 질의 결과에 의거 비공개 (이하 '제5처분사유'라고 한다)

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008. 12, 23, 같은 지청 2008형제2998호로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9. 7, 17, 위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대구고등법원 2009초재 128)을 받고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9, 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대법원 2009모954)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 련경찰관들이 원고의 음식물에 농약이 혼입되었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인 냄비를 무단으로 폐기하여 원고의 권리구제 자체를 봉쇄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 경찰관에 대한 감찰도 종결되었으 므로, 이 사건 경위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공개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2)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 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경찰관들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도 아니다. 따라서 제4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3) 경찰청 기능별 비공개 세부기준 및 사건기록 열람 ·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행정청 내 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제1. 3 각 처분사유 도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4)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정보공개 관련 담당자의 의견은 행정청 내부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 하여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제5처분사유도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 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제2처분사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소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를 제출받은 사실, 피고는 내부 감사시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피조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위서를 징구해 온 사

실, 원고는 2008. 7. 19. 관련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이후 2008. 9. 5. 경북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 재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008. 11. 17.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또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경위서를 열람 ·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 건 경위서는 원고의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내부감찰조사를 하 는 과정에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로서. 이 사건 경위서에는 관련 경찰관들이 원 고가 2007. 1, 2,경 신고한 내용(음식물에 농약이 혼입되었고 땔감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수 사하고 주변을 탐문하여 판단에 이르는 과정 및 관련 경찰관들이 자신들에게 직무상 잘못이 없 다는 해명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고소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찰관들로 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고소사건에 관한 내부감찰과정에서 관련 경찰관들 로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사건 경위서는 감찰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민원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내부문건에 불과한데도 이를 공개할 경우 직원들의 감찰조사 기 피현상이 우려되고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미 관련 경 찰관들을 상대로 고소, 이의, 재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을 하였는바, 그로 인 하여 관련 경찰관들은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와중에 이 사건 경 위서를 공개하여 또 다른 법적 소송에 휘말린다면 관련 경찰관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감 사 업무 담당자에 대한 원망이 팽배하여 차후 감사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8. 12. 12.에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이어서 감사업무가 완전하게 종결된 상태도 아니었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경위 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하고 거기에 보완조사를 하여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성실하게 서면으 로 답변하였고, 전화상으로도 몇 차례 원고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원고 는 이 사건 전후 총 4회에 걸쳐 경북 의성경찰서 수사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해당부서에서 는 규정에 따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경위서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원고의 알권리 보 장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위서는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감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제2처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 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6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세부항목별 근무성적평정표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01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10, ㅇㅇ종합고등학교 교사로 신규채용되어, 2008, 3, 1, ㅇㅇ중학교로 전 보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경 성남시 교육청에 교감강습 승진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 고는 성남교육청 교육장이 시행한 2008년 중등교사 다면평가에 따른 ○○중학교 전 교장 A, 전 교감 B, 다면평가위원인 피고 보조참가인 C. D, E, F의 다면평정평가(이하 '이 사건 평정')에 따 라 자신이 교감강습 승진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별지 1] 정보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0, 28, 원 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총점, 조정점, 평어, 순위 이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 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09,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정보를 공개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다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는 이 사건 제1정보의 근거가 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 작성의 세부항목별 평점을 알 수 있는 항목별 근무성적평정표 등 이라며 이 사건 제2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다시 2010.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정

보는 법 제9조제5, 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성남교육청교육장이 각급 중등학교에 시달한 2008년 중등교사 다면평가의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1) 2008, 9, 25,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다면평가 세부추진계획 시달
- (2) 2008. 11. 1.부터 같은달 15.까지 각 학교 주관으로 다면평가단 구성 및 사전연수
- (3) 2008. 11. 24.부터 같은 해 12. 3.까지 각 학교 주관으로 다면평가 실시(다면평가자 개인별)
- (4) 2008. 12, 4.부터 같은 달 12,까지 각 학교 주관으로 다면평가관련서식,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합산표 등 작성
- (5) 2008, 12, 15, 이후 각 학교 지역 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다면평가 관련서류 제출하여 다면평가작업 종료

바. ○○중학교는 2008. 11. 4. 직원회의에서 다면평가위원 4인, 즉 참가인 C, D, E, F를 선출하고(1인은 교무부장으로 당○○), 2008. 11. 11. ○○중학교 고장인 참가인 A, 교 감인 B 및 위 다면평가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2008년 ○○중학교 다면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원고는 2008. 11. 17. 피고에게 교사 자기실적평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12. 경에 대한 ○○중학교 교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정').

2. 소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0. 4. 16.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2010.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2010. 5. 19.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0. 5.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각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 능한데. 원고가 2010.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 및 2010. 5.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서 취소 를 구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은 당초 소장에서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제2처분과 청구기초의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교감강습 승진에서 탈락하자 평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평정에 관 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애초에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 구할 당시부터 내심으로는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의도였으나 그 표현에 착오를 일으켜 공개대상을 이 사건 제1정보로 잘못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제2정보는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상세한 세부 내역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처분은 이 사건 제1처분과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의 허가를 구하고 원고는 보조참가신청 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 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 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살피건대, 참가인들은 이 사건 평정의 평정자들로서 원고가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 건 제2정보는 참가인들에 관한 정보라고도 볼 수 있는 점과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 3자가 정보공개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참가인들의 위 참가 신청은 적법하므로 허가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제2정보는 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정보는 법 제9조제5호에 따라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법 제9조제6호에 따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에 따라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알려주어야 하는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이란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를 합산한 점수를 뜻하는 바, 이 사건 제2정보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바 따라서 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나, 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 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 단서 다목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하여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 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교육 공무원의 근무실적 ·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정대상자가 작성한 자기실적평가서를 기초로 평정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의 각 평정점을 합산하여 도출되고 이러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전보 ·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거나 그 다점 자 순위로 등재한 승진후보자명보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점. ② 이 사건 제2정보는 그 러한 근무성적평정결과로서 ○○중학교 전 교장인 참가인 A, 전 교감인 참가인 B, 다면평가위원 인 참가인 C. D. E. F가 이 사건 평정에 이르게 된 다면평가항목의 기초자료이고 ㅇㅇ중학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여서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2정보와 같은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에는 교사의 상벌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요소도 포함 되어 있기는 하나 교사의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할 경우 ○○중학교의 교장. 교감 및 다면평가위원들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평정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부담이나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 은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할 우려가 있는바. 평정자가 양심에 따 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후에도 평정자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평정 대상자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점, ④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 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이 기재 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도록 하는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 즉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 면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관한 공개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정보는 이 사건 제1정보 내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이 사건 제2정 보의 미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정보는 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서 정한 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6364]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주 문

- 1.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위 회의록에 기재된 해당 발언자 및 직함을 제외한 나머 지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관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5, 피고에게 ㅇㅇ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07. 10, 30, 2008년 ㅇㅇ 시의회 의정비를 인상한 결정과 관련하여 2007년 ㅇㅇ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3, 원고에게 ○○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6호 등 관 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7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이미 공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워고

이 사건 회의록 중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없고, 오히려 공개를 함으로써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그 공익적인 측면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한다)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의록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공개될 경우 업무이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 래하고, 발언자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회의내용만이 공개되더라도 인구 약 160,000명에 불과한 소도시인 ○○시의 특성상 그 발언내용을 기초로 하여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을 추 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의록 공개시 발언 내용에 따라 위원회 소속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차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저해할 수 있는바, 위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레 제7조제1항제5호, 제6호

다.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ㅇㅇ시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들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위 조례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수 없어. 위 조례규정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

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 분의 적법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 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 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 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 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 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 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 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의록 등은 이미 종료된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 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의정비 심의회의에 서는 당해연도 의정비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 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이 사건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 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및 직함까지 공개된다면 심의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화을 할 수 없 고, 심지어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및 직함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및 직함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회의록의 회의내용에 대하여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위한 심의, 의결 기구로서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비용에 대한 지급기준 결정 과정이 주민에게 비공개되어야 할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산정기준과 심의과정에 대하여 투명성, 정당성, 공공성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차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질 만한 사정도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회의록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더 크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하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회의내용만을 가지고 쉽사리 그러한 발언을 한 발언자를 추단할 만한 여지는 보이지 않고,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회의록 중 발언자 인적사항 및 직함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대법원 2006두159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문제은행 출제방식 국가시험의 문제지, 정답지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판단 기준
- [2]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 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2]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 · 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 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 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누3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0| 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하 '시험정보'라 한다)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3. 31. 피고를 상대로 2005. 1. 21. 시 행된 제5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전과목 문제지와 그 정 답지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05. 4. 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주관하는 이 사건 시험은 그 시 행 이전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문항들을 과목별, 분야별로 축적하여 두었다가 그 중에서 출제할 시험문제를 선정하고. 한번 출제된 문제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재평가를 거 쳐 그대로 또는 수정 후 문제은행에 다시 입고되거나 폐기하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출제함에 있 어서 다양한 문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사업목적이 바로 시험문항의 개 발·관리, 문제 개발위원들에 대한 교육·연수 등인 점, 문제은행 출제방식이라 할지라 도 학문발전에 대응하는 시의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가지는 시험문항을 계속적으로 개 발하여 많은 양의 문항을 문제은행에 입고한 후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출제하지 않는 변형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시험문제의 오류 점검을 위해 피고 가 하는 답지 반응도 검사와 분별도 검사만으로는 출제상의 오류를 시정하기에 부족한 점.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의 경우 그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험과 위 각 시험을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를 공개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출제의 시간ㆍ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시험에서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되 한번 출제된 문제를 다 시 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저히 많은 양의 문항을 축적하는 것 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고 이미 양질의 문제로 검증 된 기출문제의 재활용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년 많은 수의 문항을 개발하더라도 출제가 가능한 문제의 범위가 점차 좁아들어 문제 출제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게 될 것인 점, 수험생들은 출제빈 도가 높은 문제위주의 수험준비를 하게 될 것이어서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 답지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험생 일반에 의한 출제오류의 시정 가능성과 이 사건 시험행정의 투명성의 확보 등이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의 공개가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법시험이나 고등고시의 제1차 시험 등은 주관기관. 시험의 목적. 속성. 출제 및 평가방식 등이 이 사건 시험과는 달라 양자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 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본인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경기 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받았던 각 연도별 근무평정결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ㅇㅇ동 503 소재 ㅇㅇ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 2002 년도 및 2003년도에는 피고 산하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6, 경기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 고가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ㅇㅇ고등학교 재직 중 받았던 각 연도별 근무평정결과(이 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워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곳곳기관의정보곳개에관하법률(이 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이하 '이 사건 규정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련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규정조항은 다 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헌법 제36조에 근거 하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그로부터 유래하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1 조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 ·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1) 피고의 근무평정 요소 및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 자의적인 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 있어 근무평정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후적으로 평정대상자에게 근 무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근무평정에 대한 합리성 · 객관성 여부 및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근무평정의 공 개가 필요하다.
- (2) 학교조직에서의 교원 평가는 이를 승진이나 전보 등의 인사행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이를 교원들에게 공개하여 교원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 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진 · 전보 등 인사행정을 위한 자 료로만 활용함으로 인하여 교원간의 인간관계의 악화. 비본연적 업무의 중시 등의 부작용이 나 타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 정대상자가 작성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기초로 평정자와 확인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 정 별지 제4호서식이 정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정한 각 평정점을 합산한 후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서 도출되고,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 · 포상 등 인

사관리에 반영되며, 나아가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 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 각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한 승진후보자명 부의 작성자료가 되는바. 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이 기재된 근무 성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도록 하고(제17조),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일정한 평정분포 비율에 맞게 평정하도록 하며(제21조).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을 합산하도록 하고(제 22조),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제23조, 제24조) 제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은 근본적으로 평정대상자에 대한 평정자의 종합 적인 분석 · 평가이므로 그 평정요소의 내용이나 기준이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의하여 평정을 한다 하더라도 평정의 과정에 있어서 평정자나 확인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근무성적평정 을 사후에라도 공개하게 되면 평정대상자에 대한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구체적인 평가내 용을 공개하는 셈이 되어, 평정자나 확인자로서는 그 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담 을 갖게 되고 또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정자가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후에도 평정자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평정대상자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조항이 근무평정결과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③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근무성적 평정과 함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자료가 되는 경력평정과 연수성적평정에 대하여는 평 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5조, 제39조), 승진후 보자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도록 규 정하고 있는 점(제48조), ④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함으 로써 평정대상자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다른 방법. 즉 교원에 대한 연수. 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 등 다른 인사관리방안을 통하여 교육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공 개제도 자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양육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 해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

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나, 이 사건의 경우 근무평정의 공개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인사관리 행정상의 부수적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교원의 지위 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후적인 적법성 심사의 기회가 주어지지아니하고 이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 제10조가 정한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에 의한 학부모의 양육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2조에 의한 적법절차원리, 제31조제6항에 의한 교원지위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조항이 위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9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273]

정보부분 비공개결정 취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의결과,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정, 합리성 및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 문

- 1. 피고가 200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시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워고의 지위

원고는 ㅇㅇ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인 ㅇㅇYMCA, ㅇㅇ시민모임, ㅇㅇ농민회, 여성유권자충남연맹 ㅇㅇ지부, 충남장애인부모회 ㅇㅇ지회, 지방자치연구모임이 중심이 되어 주민의 납세자로서의 알 권리와 더불어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실현하기 위한 참여예산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2005. 8. 25. 설립한 단체로서. 대표자와 의결기관인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나. 처분의 경위

- (1) 원고는 2005. 9 14. 피고에게 ㅇㅇ시 인터넷홈페이지의 전자민원상담실을 통하여. 2005 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의결과 일체와 2006년도 ○○시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2) 이에 피고는 2005, 9, 26, 인터넷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의결 과 일체에 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 전자파일을 전송하고 심사결과인 예산서를 우편 교부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2006년도 ○○시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이하 '이 사건 예산요구 서'라 한다)에 관하여는 예산편성 일정상 예산요구서가 전부 취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산요구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피고 내부의 검토 및 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단체 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요구, 첨예한 이익 갈등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 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므 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 (3) 그 후 원고가 2005, 9, 28, 피고의 이 사건 예산요구서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 자, 피고는 ㅇㅇ시 정보공개심의회의 2005. 10. 12.자 심의를 거쳐 2005. 10. 13. 원고에게 이 사 건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지 않되 특정부분에 대하여 부분공개요청을 하면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단체로 인정되기 위한 상설의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정관 등에 의한 공동의 목적 달 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시민단체가 ㅇㅇ시의 예산편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합 하여 위 목적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부정기적으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소집되고 흩어지는 정도의 모임에 불과하여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정도의 단체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 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주체나 이 사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상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산요구서의 공개는 의회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의와 투명한 시정의 운영, 예산수립과정에 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운영방향으로 제 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예산요구서의 공개로 인하여 ○○시의회 및 ○○시장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 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가 공개되는 경우 각

실과장의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 경색. 주민의 사업편성 착오. 예산편성에 대한 불신. 각 단체 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예산 요구 및 첨예한 이익 갈등을 야기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 및 지방자 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9조제1 항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 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호에서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 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 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가) 먼저,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지방재정운영의 방향과 중점투 자대상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시ㆍ도지사의 기본지침을 근 간으로 각 실과별로 작성되어 예산주관과에 제출되고. 예산주관과는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

산안을 편성하는 내부검토자료로 사용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산요구서는 피고의 2006년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각 실과장의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 경색, 주민의 사업편성 착오, 예산편성에 대한 불신, 각 단체 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예산 요구 및 참예한 이익 갈등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ㅇㅇ시 예산주관과가 이 사건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안을 작성한 후 예산안을 고시 절차를 통해 공개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광주 북구 등 몇몇 지방자체단체가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각 분야별 예산의 수요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각 실·과장이나 읍·면·동장이 각 실과별 관련 보조사업, 시정의 정책적인 사업,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장의 요구사업, 시의원 전의사업, 각 실과에서 판단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비용 등과 실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를 예산주관과에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등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점, 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몇몇 지방자체단체에서 이미 그 절차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산요구서의 비공개 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정,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커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예산요구서는 '공개될 경우 ㅇㅇ시의회의 예산심의 또는 ㅇㅇ시장 예산편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대법원 2002두129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판시사항

- [1]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3]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 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 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 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 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 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 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 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서울행정법원 2001, 6, 12, 선고 2000구261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누10846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주 문

-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유 01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 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 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 어 살펴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 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 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 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피 고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위 정화위

원회의 심의회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 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 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 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 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 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 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 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20126]

정보부분 비공개결정 취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 위촉현황, 임용시험 공고문, 타응시자 필기시험 점수 및 면접시험 평가결과 등

재결요지

- [1]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채점결과는 "200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공개경 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기재되어 있는데, 평정요소의 기준이 단순 수 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면접위원들의 채점결과가 공개된 다면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과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 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면접심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2] 면접위원 위촉현황을 공개한다고 하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면접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은 위와 같은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시험의 면접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신분을 사생활의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 문

- 이 사건 청구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이래⑧의 정보 중 일부)
 와 "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이래⑨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 2. 피청구인이 2009. 8.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중 "2009년도 ㅇㅇㅇ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사서직)시험 면접위원 위촉현황"(아

래⑤의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이 유

피청구인이 2009. 8.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8. 4. 피청구인에게 ① 2009년 ㅇㅇㅇ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사서직)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공고문. ② 2009년 사서직 응시인원 및 필기시험 합격인원. ③ 필기시험 합격자(홍○○/응시번호 00000000)에 대한 시험점수(전산채점, 가산점 구별) 및 사 서직 커트라인 점수, ④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문, 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 한 면접위원 위촉현황, ⑥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시험위원 회의개최 자료, ⑦「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대상자 교육자료, ⑧ 홍ㅇㅇ의 면접질 문 및 답변내용, 채점결과(채점결과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질문분야별 결과임), ⑨ 횽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 및 ⑩ 횽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 자의 면접 채점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8. 10. 청구인에게 위 ①부터 ④까지 및 ⑥·⑦의 정보를 공 개하였고. ⑤의 정보와 ⑧부터 ⑩까지의 정보(이하 "이 사건 미공개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ㅇㅇ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 ㅇㅇ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 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한다.

나. 이 사건 미공개정보 중 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이 사건 미공개정보인 ⑤의 정보(면 접위원 위촉현황),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 채점결과 및 ⑩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 자의 면접 채점결과)]는 이미 피청구인이 업무수행을 공정하게 완료한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

에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어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ㅇㅇ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미공개정보 중 ⑤의 정보(면접위원 위촉현황)에는 면접위원 이름 · 소속 등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시험관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ㅇㅇ의 면접 채점결과' 및 ⑩의 정보(홍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가 공개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결과의 정 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결 국 면접시험의 평가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면접시험 평정표에는 공정한 시험을 위해 면접위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면접위원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정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행정심 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8.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홍ㅇㅇ"의 "정보공개동의서" 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훙ㅇㅇ가 날인한 정보공개동의서에는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일체의 자료 공개에 동의 한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10. 이 사건 정보들 중 이 사건 미공개정보(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 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현황. ⑧ 홍ㅇㅇ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 채점결과(채점결 과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질문 분야별 결과임), ⑨ 홍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 및 ⑩ 홍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는 정보공개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정 보는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점표"는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점표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직급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서대	(한글)
주민등록번호	_	성명	(한자)

010171							
평점요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_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_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_
계			개		개	フ	H
위원서명		성명 (서명)					_
					_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판정 - 단정 담당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수					불합격		
					확인		_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ㅇ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마.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ㅇㅇ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⑤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2009년 제1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위원은 피청 구인 소속 공무원 2명과 공무원이 아닌 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등

- 1) 「행정심판」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한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횽ㅇㅇ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횽 ㅇㅇ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피청구 인의 주장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 ㅇㅇ의 면접질문 및 답변 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 변내용)는 피청구인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ㅇㅇ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 보와 ⑨의 정보(홍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 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⑤의 정보(「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현황). ⑧의 정보 중 '홍 ㅇㅇ의 면접 채점 결과' 및 ⑩의 정보(홋ㅇㅇ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에 대한 이 사 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 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 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워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 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감사 · 감 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 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 1) 먼저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⑤의 정보(『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를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나) 피청구인은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에는 면접위원의 이름·소속 등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위원의 사생활의비밀 및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시험관리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시험에 관한 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에 관한 정보인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을 공개한다고 하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면접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면접위원 성명·소속 등과 같은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의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은 위와 같은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시험의 면접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은 정보공

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ㅇㅇ의 면접 채점결과' 및 ⑩의 정보(홍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 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의 직업관 · 전문지식 및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채점결과는 "200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기재되어 있 는데. 위 면접시험 평정표에는 평정요소가 "②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④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৷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৷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 의지력 · 기타 발전 가능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면접위원들의 채점결과가 공개된다면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 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미공개정 보 ⑤의 정보 (「지방공무워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 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현황)가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 · 부당하고. ⑧의 정보 중 '홍ㅇㅇ의 면접 채점 결과' 및 ⑩의 정보(홍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ㅇㅇ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ㅇㅇ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⑤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ΩA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입법취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4두12629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까지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 · 주민 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 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 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 보'도 포함됨.

대법원 2011두2361

공개청구 대상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 교 · 교량 하여야 하며, 개개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비공개대상 개인식별 정보와 나머지 정보의 분리가능성 및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공 익을 위한 개인식별자료의 공개필요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4두9180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 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 교 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두8050

01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4-338]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첨대상자 명단 및 체력검정기록

주 문

-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4년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응 시자(달리기)기록'을 공개하라.
-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4,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년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던 응시자로, 2014. 3. 14. 피청구인에게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첨대상자 명단(1차선발자 명단) 및 응시자 체력검정(달리기)기록 열람 및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심의회에서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4. 3. 청구인에게 기 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부당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기 간제근로자 채용 추첨대상자 명단과 체력검정기록'을 요청했는데, 정보공개법에 위배된 다는 이유로 기각 당하였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 청구인이 요구한 사항을 열람하여 공정성을 꼭 확인하고 싶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 되는 시험에 관 한 사항에 포함되는 정보임과 동시에 응시자의 성명, 개인별 성적 등은 기간제 채용시험의 참가 여부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에 따라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타 당하다

4.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6호.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3. 14. 피청구인에게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첨대상자 명단 및 응시자 체력검정(달리기)기록 열람 및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8, 청 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 에서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결정문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 민의 알궈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시험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 청구자가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어 그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첨대상자 명단'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응시자의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응시자 체력검정(달리기) 기록 열람 및 사본'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응시자의 이름을 가려 공개할 경우, 응시자들의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적고 오히려 청구인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부분공개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890]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방송사업 신청법인의 주주구성, 지역적·문화적·사회적 기여 실적 등

주 문

- 1. 이 사건 소 중 "개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취 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가 2013. 6. 5. ○○연대에게 한 정보공개결정 중 별지 5. "비공개 대상 정보" 기 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한다.
-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5, ○○연대에게 한 별지 1.부터 별지 4,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 개결정을 취소한다.

0|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7. 31. 개정된 「방송법 (법률 제9786호) 제9조제5항 단서 소정의 종합편성 방 송채널사용사업과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이하 위 방송채널사용사업 들을 통틀어 '이 사건 방송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이 사건 방송사업 자'라고 한다)들로부터 사업승인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12, 31, 원 고를 포함한 일부 신청법인들을 이 사건 방송사업자로 승인하였다.

나. ㅇㅇ연대는 피고를 상대로 위 사업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 등 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 26,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그 밖에도 ㅇㅇ연대는 "① 이 사건 방송사업 승인을 의결한 피고의 2010. 12. 31, 자 제80차 회의록, ② 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③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④ 종합편성 및 보 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에 대하여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마찬가지로 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아래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공개가 결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위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만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다. ○○연대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위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323)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일체를 증거로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장차 피고의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제3항의 정보 중 심사자료라 함은 이 사건 방송사업의 신청법인들이 스스로 피고에게 제출한 정보로서 이미 공개된 부분이 상당수 포함된 점(○○연대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공개를 구하는 심사자료라 함은 신청법인들이 방송사업자 승인심사 시 제출한 서류를 의미한다고 특정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이미 완료한 마당에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으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서울행정법원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자료에는 주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피고는 신청법인들로 하여금 구성주주 현황, 특수관계자 현황 등의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주주의 성명은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앞의 여섯 자리, 이하 같다), 주소 등은 동명이인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이름만으로는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인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를 공개하도록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를 추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20078) 담당재판부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의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데. 같은 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 · 주민등 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7호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각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 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후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3두3825, 이하 확정된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ㅇㅇ연대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주주 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이라 한다).

순번	제목	내용
1	본문	원고의 이 사건 방송사업계획
2	본문의 요약문	위 요약문
3	본문의 별첨	구성주주 서약서 목록
4	본문 및 본문의 별첨 보정자료	신청서류 보정에 관한 사항
5	조견표	사업계획서 및 심사항목 간 조견표
6	부속서류 1-(1) 부터 (20)	원고에 관한 사항
7	부속서류 2-(1) 부터 (6)	공적 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계획
8	부속서류 3-(1) 부터 (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
9	부속서류 4	경영계획 및 전략
10	부속서류 5-(1) 부터 (17)	재정적 능력
11	부속서류 6-(1) 부터 (4)	방송시설 설치계획
12	부속서류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바. ○○연대는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자료 일체"란 신청법인들이 방송사업자 승인심사 시 제출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특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사업계 획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 중 별지 1.부터 별지 4.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것에 한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포함된 정보들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아2107호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그 공개가 미루어졌으나, 나머지 정보는 2013. 7. 12경 모두 공개가 이루어 짐으로써, 당초 ○○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상당 부분은 이미 공개된 결과가 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개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이 사건 정보 중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개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가 이미 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취소를 구할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니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당초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인 "주주들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단,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를 공개하도록 한다)"를 제외하고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정보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서에는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예외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3.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지 1.부터 별지 4. 목록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제6호). 영업비밀정보(제7호)에 해당함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한 이 사

건 정보공개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뿐만 아니라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였고. 그 결과 개인주주 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만을 비공개대상정보라고 결론짓고 나머지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사유로 한 원고의 위법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비공개를 구하는 별지 1.부터 별지 4. 목록 기재 정보는 영업비밀정보에 해당하 지 아니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 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다. 판단

- (1)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 (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취소판결의 기판력 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 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확정판 결이 내려진 사실(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개인정보에 관하여도 일부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확정 판결의 소송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사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

분의 위법 여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과는 다르다),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를 추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같은 항 제6호, 제7호는 각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사유의 추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를 사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피고의 정보공개처분에 대하여 새로이 원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부터 별지 4.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소송 및 정보공 개처분의 경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내용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확정판결과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 확정판결과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의 판단 기준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 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 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를 규정 하고 있다.

그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상활의 비밀 또는 아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말하는 단순한 개인식별정보 외에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

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 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 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 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 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 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 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 별지 1.부터 별지 4.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 결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 (3) 별지 1. 원고의 주주 구성 관련 정보
- (가) 개인 주주의 성명. 출자액. 신규발행 주식 수. 총투자액. 주식 수. 주식대금총액. 업종. 소 속 및 직위, 국적 등 정보

별지 1. 기재 개인 주주는 모두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들이고,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정보에는 개인의 성명, 출자액, 신규발행주식 수 총투자액, 주식 수. 주식대금총액. 업종. 소속 및 직위. 국적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업 등 법 인의 투자결정과 달리 개인의 투자결정은 경제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인격적 성 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②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 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 헌마190 결정 등에 의하면,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미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되어 있다) 위 정보의 공개로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문제 되고 있는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의 경우에는 이미 정보가 공개된 주요 주주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방송사업자의 구성이나 운영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사건 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매운동 등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위 정보의 공개로 개인 주주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개인 주주가 그 투자 사실 때문에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중 피고가 이미 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소"를 제외한 개인 주주의 성명, 출자액, 신규발행 주식 수, 총투자액, 주식 수, 주식대 금총액, 업종, 소속 및 직위, 국적 등 개인 주주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 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나) 법인 주주의 명칭, 법인 등록번호, 출자액, 대표이사의 성명 등 정보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중에는 원고의 주주 구성 현황으로서 법인 주주의 명칭, 법인 등록번호, 출자액, 대표이사의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각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인 주주에 관한 부분과 비교할 때 위 각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위 기업 또는 법인들의 사업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각 정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각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이는 법인 주주가 주요 주주가 아닌 1% 미만 주주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방송사업자 선정을 신청한 기업 또는 법인이 심사기 준에서 정하는 세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국민의 알 권리를 보 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 공개의 예외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엄격하 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방송사업자에 출자하였다는 사실이 투자자 등 제3자에게 해당 주주법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기업으로 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영업활동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위 각 정 보에는 이미 널리 공개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하여 추 가로 구체적인 주식보유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 기업 또는 법인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공정한 방송사업자 선정에 관 한 국민의 의혹을 없애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법인 주주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주소. 대 표이사의 생년월일, 출생지, 경력

그러나 법인 주주라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 대 표이사의 주소, 대표이사의 생년월일, 출생지, 경력의 정보는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 인 주주에 관한 정보와의 관련성을 넘어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 당한다.

- (4) 별지 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관련 정보
-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는 다문화 이중언어 경진대회 수상자 의 성명, 소속, 국적, 자영업자 홈페이지 구축사업 참여자의 업체명, 관련 수기 공모전 수상사의 성명, 북한정책포럼 우영실적 기조 강연자의 성명, 농어촌 아그리젠토 대통령상 수상 원고 소속 기자의 성명, 상훈에 관한 정보이다.

위 각 정보에는 수상자, 강연자, 수상 기자의 개인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은 모두 대외적 활동으로서 위 각 대회, 사업, 강연 등에 공개적으로 참가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자나 수상자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된다고 하여 새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별지 3, 4, 목록 기재 정보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는 비용지출 수령인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수령금액 등 정보, 강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자 이름, 항공료, 항공편, 좌석등급 등 정보로서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 정보는 극히 개인적 정보이거나, 각 행사의 지출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비용지출내역, 각 개인 주요주주의 주요 소득원, 보유재산 현황 및 납세현황, 원고운영 방송사 및 신문사의 각 재무·회계정보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 부분 정보의 내용, 형식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나 원고가 공익법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6) 소결론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 중 별지 5. "비공개 대상정보" 기재 각 정보 (위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을 모은 것이다)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나, 나머지 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의 비공개사유가 없어 이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개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취 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별지 5. "비공개 대상정보" 기재정보에 대한 정보공 개결정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3

개인의 사생활 보호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9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 및 행정소송 판결문

판시사항

甲이 乙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국민이 乙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乙 지청장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 남편의이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국민이 乙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乙 지청장이 위 정보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 중 제3자 이의 사건의 원고 남편의 이름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공개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 문

- 1.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비공 개대상 목록 기재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경 피고에게 '2010, 1, 1,부터 2013, 11, 1,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2010. 1, 1,부터 2013. 11, 1,까지 국민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 또는 행정사건으로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가단1435호 제3자 이의 사건이 있다(이 하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의 판결문을 공 개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개인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삭제하고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정 보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워고의 주장
-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죄사실, 재산의 형성과정, 혼인관 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 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 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한 반면,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정보공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 재판부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열람 · 심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정보에는 위 제3자 이의 사건의 원고의 이 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별지 2] 비공개대상 목록 기재 정보, 즉 위 원고 남편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위 원고의 신분 및 혼인관계, 위 원고와 그 남편의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 그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경위, 부동산 매입자금 등 재산의 형성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위 원고의 남편 의 이름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에서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대상 목록 기재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 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4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4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년동안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입법 취지

[2] 甲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 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2] 甲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 · 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던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별지 서식 제7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공

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령 방법'란이 따로 있음에 비추어 '공개 내용'란 에는 공개대상정보의 문서 제목이나 목록과 같이 간략한 내용만이 기재되고 구체적 인 정보는 별도의 일시, 장소, 방법에 따라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 甲이 구하는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 추어.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 지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 6호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 무

1,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익산경찰서에 접수된 모 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사본 · 출력물의 형태 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13, 1, 25,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 서에 기재된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6항'은 오기로 보인다)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워고의 주장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 는 한 워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워고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함 것을 청구하였고. 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는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통지서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정보공개처분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합이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 구를 하면서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던 점, ②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될 내용은 '청구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령 방법', '납부 금액',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란에 기재될 사항이 될 것인데, 위 서식에 '공개 일시', '공개 장

소', '공개 방법', '수령 방법'란이 따로 있음에 비추어 '공개 내용'란에는 공개대상정보의 문서 제목 이나 목록과 같이 간략한 내용만이 기재되고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의 일시, 장소, 방법에 따라 공 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구하는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 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으로 그 공개청구의 취지를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통지서에서 분리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알 수 없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기재될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통지서에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원고의 공개청구에 따른 공개대상 이 되는 것이어서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가 공개청구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통지서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그 정 보가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 검찰청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 청장, 인천남부경찰서장,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밀양경찰서장, 부산지방경 찰청장, 부산진경찰서장, 부산사상경찰서장,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광주동부경찰서장, 광 주남부경찰서장, 정읍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같이 2012. 1. 1.부터 청구일까지 또는 2012년도에 위 각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 는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 구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통지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5

개인의 사생활 보호

[대법원 2012두25729]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 청사 CCTV녹화물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2, 10, 23, 선고 2011누3121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비공 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녹화물에 들어있는 정보 중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하여 청사정문 앞 보도를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시티브이(CCT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들이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6호가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원고 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공개 대상정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분리 공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 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 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은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 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 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 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 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해하지 아니한다 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 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녹화물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 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기술 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시티브이와 녹화장비에서 모자이크 처리 기능을 지 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한 모자이크 처리 등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분리

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 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녹화물 중 위와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1)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 ① 이 사건 시시티브이 장비는 카메라 신호의 영상을 받아 그 영상을 저장장치(HDD)에 기록하는데, 원본 영상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압축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된다.
- ② 시시티브이 장비는 녹화된 자료 저장(백업) 시 클립 복사 기능을 사용하는데, 클립 플레이어라는 동영상 재생기와 동영상 파일이 합쳐진 형태로 저장되고, 저장된 자료는 그 내장된 재생플레이어를 통하여 실행할 수는 있으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동영상 편집기 등을 이용하여 녹화 영상의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편집행위를 할 수 없다. 즉 피고나 시시티브이 제작업체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녹화된 영상을 가공할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다.
- ③ 따라서 녹화된 영상의 일부분에 모자이크 처리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화면갈무리(캡처) 기능을 활용하여 프레임 단위로 동영상을 갈무리한다음, 각각의 프레임을 그림파일 형태(예컨대 jpg 파일 형태)의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각각의 그림파일에 나타나는 모든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프레임별로편집이 완료된 그림파일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에 의한 영상압축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동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 ④ 위와 같이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동영상은 그 압축과정에서 압축 손실이 발생하므로 원래의 동영상과는 동일한 동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데 소 요되는 노력과 비용은 편집의 수준이나 편집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 2) 이상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시시티브이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 리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녹화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갈무리한 다음, 각 그림파일 중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 자를 포함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 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새로 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녹화물 중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부분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녹화물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 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법리나 정보공 개법 제14조 의 부분 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 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 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6

개인의 사생활 보호

[대법원 2011두2361]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사, 진술조사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
- [2]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 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결 정한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 개대상에 해당한다.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별개의견】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 고 새기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문언뿐 아니라 개정 경위 및 취지, 종래 대법원판례 가 취한 견해,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두루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2]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 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 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 훈 · 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 · 사회단체가입, 건강 상태,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개인의 내 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 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 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워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21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1 유

1.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 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위 비공개대상정보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현마51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 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 · 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의 개인에 관 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표현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 분 상고이유와 같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 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워심이 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정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 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더라도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상고이유 제1점(개인에 관한 사항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외의 정 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 대희의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이 구 정보공개법상의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보면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1) 먼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문언해석의 측면에서 본다.

구 정보공개법이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인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이 여전히이름·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에 관한 사항'의 예시로 들고 있음에 비추어, 구 정보공개법상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정보공개법상의 '개인에 관한 사항'은 그 표현만을 달리할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

다수의견은 위에서 본 것처럼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범위가 모호하다.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개인에 관한 사항'임이 전제가 되어야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인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게 될 터인데, 다수의견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내용은 피의사실이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인데, 그것까지 '개

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 비공개대상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개인에 관한 사 항'을 제한 없이 확장하는 셈이 되다. 다수의견대로라면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이 있기 어 려워서 모든 사상(事象)이 전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를 우 려가 있다.

(2) 다음으로 정보공개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및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의 측면에서 본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입법 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정보공개법 개정 과정에서 작성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에서는 개정안 제 9조제1항제6호에 관하여 종전 비공개대상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 화한다고 밝히고 있고. 2003. 12. 23. 제244회 국회 본회의에서도 위 규정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의 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 설명을 하고 있으며, 2004, 1, 29,자 관보 제15606 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종래 대법원판례는 다수의견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 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 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궈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 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함으로써(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등 참조) 이미 구 정보공개법하에서도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었음에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왔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경위와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은 종래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입법에 반영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일 뿐, 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그 표현을 변경함으로써 비공개대상정보를 더 넓게 확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개인정보에 관한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 측면에서 본다.

개인정보의 의미를 정의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 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제2호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또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의미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의미에 관하여는 사실상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상, 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 1항제6호 본문의 개정으로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새기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문언뿐 아니라 그 개정 경위 및 취지,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두루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라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 위 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 성하나.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 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 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다수의견의 인식과 논리에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5. 대법관 안대희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정보공개법의 개정 내용과 취지

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 는'이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문언을 변경함으로써 그 내용과 구조를 완전히 달리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종래 개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연락처 · 직업 · 나 이 등과 같이 각 정보의 형식과 유형에 따른 사항적(事項的) 요소를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라고 하는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 정 성적(定性的) 요소를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 기준이 변경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종래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해당 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따라서 피의자신무조서나 진술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 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연락처 · 직업 · 나이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 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면, 이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의자 등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 으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 (1)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조사를 받은 개인의 긍정적인 면을 포함한 충체적인 인격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개인의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될 여지가 많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의자 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 피의자의 경우 '범죄혐의'가 종국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사피의자로서 조사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관련 증거가 공개되어 일부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범죄자인 것 같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
-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유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 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피의자 등은 적극적 측면에서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한편 소극적 측면에서 자신의 진술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공개되어도 좋은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진술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진술자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 (3)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제3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

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고.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 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국가 등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 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의자 등의 진술내용에는 피의사실 자체에 대한 진 술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범죄의 동기와 배경. 은밀한 사생활의 내막. 타인에 대한 사적 원한과 감정,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해 온 인생역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4) 한편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파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워리이고(헌 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등 참조),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고 불 기소처분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수사기록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신의 범죄혐의 사실이 유출될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특수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해당 범죄혐의 사실에 관하여 추궁 하고 피의자 등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진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불기 소처분 기록을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그 수사기록에 피의자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일부 진술 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최종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 이 유출되어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체면과 명예, 평판, 신용 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관련 수사기록이 공개됨으로써 범죄혐의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일부 범죄혐의 관련 진술이 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이나 자신의 거래상대방 등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만으로 도 그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라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수단

정보공개청구권자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공개가 아니더라도. 피의자 등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신이 제기하는 민사사건 등 관련 소송절차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여 주는 불기소이유의고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굳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아니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마.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일부 부적절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2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타인의 민원상담 내용

주 문

- 1.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중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 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0자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접수 번호: B, 제목: C아파트 재건축관련, 답변일자: 2009, 6, 11., 담당부서: ㅇㅇ구청 도 시관리국 주택과, 담당자: D)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워고는 C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해온 사 람이다

나. 피고는 2009, 6, 10, 'C아파트 재건축 관련'이라는 제목하에 'C아파트 주민의 98%가 통합 재건축사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조합원이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시행사쪽에서 주는 돈을 9억 가량 받았고. 이 돈을 시행사쪽에 갚지 않아 조합 해산이 불가능한 한 상태라고 한다. 구청에서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상담(이하 '이 사건 민원상담'이라 한다)을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위 민원 접수를 계기로 2009. 6. 26. 원고 조합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조합장이 조합 총회의 의결도 없이 임의로 설계계약과 재건축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 고 그 계약서들을 조합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3항, 제81조제 1항 등을 위반하였음을 적발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3. 9. 피고에게 이 사건 민원상담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3. 15. 원고가 이 사건 민원상담을 신청한 본인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민원상담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였던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빌미를 마련할 의도로 익명의 민원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민원내용을 접수하게 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점, 원고의 명예훼손을 회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민원상담은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민원상담의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부분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한 반면,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인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 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위 각 과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민원상담 내용 중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민원상담 민원인은 민원상담을 요청함에 있어서 민원상담의 내용이 개인에게 있어서 민감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를 염려하여 비공개요청을 하고 있는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 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 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위 (1)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민원상담 내용 중 비공개부분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위 개인식별정보와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거의 없는 반면, 원고의 명예회복 내지 원고가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의 재판진행을 위하여서도 공개의 필요성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정보는 법 제9조제1항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민원 상담 내용 중 비공개부분인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조합설립인가취손처 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9합33812) 진행 중에 피고측 증거자료로 제출된 바 있음이 인정 되기는 하나, 법 제2조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밥업에 대 하여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문서 · 도면 ·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등에 의하 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면, 한편 법 제15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별도의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 658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575]

정보비공개결정통보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원의 주소, 주택 유무 및 전(월)세 금액, 월수입 등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 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16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원의 주소. 주택 유무 및 전(월)세 금액, 월수입 등의 현황(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 · 등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헌법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 · 등사를 불허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가 2009, 5, 25.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워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당시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233만 원에 불과하고 빚이 1억 원이 넘는 등 어려운

형편인 관계로 피고에게 복지대상자 보장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방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원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대방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재산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 · 등사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 목적에도 어긋나게 되는 등 이 사건 정보는 헌법 제17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례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대방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전 가구의 가구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 등인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정보·자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다지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사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개인식별정보 제외)

판시사항

검사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 각목 소정의 제 외사유에 해당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4, 11, 4, 피고에게 1998,부터 2004, 10,까지의 검사의 징계현황 즉, 징계사 유를 포함한 이름, 직위, 징계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9. 적발내용 및 처분결과에 관하여만 공개하고 징계대상자의 이름, 직위, 징계사유에 관 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05. 5. 2. 피고에게 '1998. 1999. 관보에 게재된 검사징계내용' 및 '2004. 10. 이후 검사 징계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5. 5. 3. 이를 공개하였다. 원고는 다시 2005. 5. 20. 1998.부터 2005. 4.까지 징계받은 검 사들의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구체적인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 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4.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신분, 업무의 공공성,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 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 (다)목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그렇다 하더라

[3] 쟁점

도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 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 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 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고. 이 사건 정보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하여 검사의 징계처분대상자 의 이름, 소속 및 직위, 처분의 내용 등이 관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 되는 경우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일응 해당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임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이 매우 높고, 이러한 점에서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및 권한 남용금지를 강조하고 있고.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관보에 게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의 정당성 에 대하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의 제외사 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판결의 의미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 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선례가 된다.

주 문

1. 피고가 2005. 5. 24. 원고에게 한 2005. 4.까지 징계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인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 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1, 4, 피고에게 1998,부터 2004, 10,까지 검사의 징계현황 즉, 이름, 직위, 징계 사유, 징계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9. 위 청구 중 아래와 같이 적발내 용 및 처분결과를 표시한 징계현황에 관하여만 공개하고, 해당 검사의 이름, 징계내용,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 정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적발내용〉

유형별 연도별	합계	금품·향응 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1998	2			2	
1999	2			2	
2000	2		2		
2001					
2002					
2003	9	2		3	
2004. 10.	4			1	

〈처분결과〉

		징계내용							
		면직	정직	감봉	중근신	경근신	견책		
1998	2			1			1		
1999	2	1				1			
2000	2				2				
2001									
2002									
2003	9		1	2	5		1		
2004. 10.	4			1	1	2			

나. 원고는 다시 2005. 5. 2. 피고에게 '1998. 1999. 관보에 게재된 검사징계 내용' 및 '2004. 10. 이후 검사 징계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5, 5, 3, 공개결정을 하 였고,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8, 1999, 관보에 게재된 검사징계 현황
- 2004, 10, 이후 검사징계처분 현황 : 해당 없음

다. 원고는 다시 2005, 5, 20, 피고에게 2005, 4,까지 징계받은 검사들의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구체적인 징계사유(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 문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정보공개청구를 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1998.부터라고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속에는 해당 검사 및 관련자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형별 징계사유와 처분결과, 관보에 게재된 징계처분 검사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 공개시 해당 검사를 쉽게 식별해 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5.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0.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05. 9. 23.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한 위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원처분주의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의 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그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위원회는 2006.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왔는데, 관보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적시 없이 '징계처분일자, 징계대상자의 현소속 및 직위, 이름, 근거법령, 징계의 종류'만을 게재하여 왔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검사는 고위 공직자이며 준사법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직 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 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사항을 관보에 게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사건정보가 같은 조항 본무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제외사유인 같은 호 단서 (나)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 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 이거나, 같은 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 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호 단서 (라)목 소정의 직무 를 수행한 공무워의 성명·직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 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제6호 나목. 다목. 라목. 제3항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 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정보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기 스 스로의 뜻에 따라 개인의 삶을 영위해가며 개성을 신장시키기를 바라고 사생활에 관하여 외부적 간섭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 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 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정 보는 일정 기간 중의 검사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로서,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 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징계처분대상자의 이름, 소속 및 직위, 근거법령, 징계처 분의 내용이 관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고, 피고가 2004. 11, 9.과 2005. 5, 3, 원고에게 일정한 범 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징계자인 해당검사들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일응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 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 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 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개)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히 법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 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내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 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그개개인이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하여 행정행위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독립관청이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그 임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점에서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검사징계법 제23조도 검사의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 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 어야 한다는 점. (마)검사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하여져야 할 것인바. 정보공개로 인하여 징계권자의 자 의적인 징계로부터 해당 검사를 보호할 수 있고, 검사 스스로의 정화활동 및 윤리의식을 제고 할 수 있으며, 다른 검사들에게는 행동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⒀ 고위 공직자로서의 검 사의 신분, 국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검사가 자신의 신상과 징계사유가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 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는 점. ㈜같은 법조인인 법관의 경우 대법원은 법 관징계법에 의하여 법관에 대한 징계를 관보에 게재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소속, 이름, 징계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까지 밝히고 있고. 변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 사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고하면서(현재 '인권과 정의'라는 잡지에 공고하고 있다) 징계대 상자의 이름, 사무실 주소.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간략하게나마 징계사유의 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의 제외 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 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있다.

-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속에는 해당 검사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다 양한 정보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이를 모두 삭제한다면 징계사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하여 공개의 실익이 없어지고. 삭제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징계회의록, 징계 결정서 등 징계의 전 과정과 관련자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작성된 문서 자체에 대한 정보공개 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인 징계사유를 밝혀달라는 것에 불과하므 로. 피고로서는 얼마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를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진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유 있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

개인의 사생활 보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9463]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업제안서 및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 등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①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임무(상주, 비상주 구분), ②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임무(상주, 비상주 구분), ③ 사업 착수일자, ④ 2013. 5. 31. 현재 근무인력(아르바이트 제외) 명단, ⑤ 교체된 인력의 명단과 교체일자, 교체사유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13.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6. 1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게 개인성명은 소속업체명, 참여임무 등의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의 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번호나 그 밖의 연락처 등과 별개로 성명만을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기록원. 서울 서대문구청. 서울 양천 구청. 서울시교육청 등 타 공공기관에서도 참여인력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청 구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참여인력의 소속을 공개하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 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 한 개인의 이름. 직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 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개인의 이름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소속 업체명 및 참여임무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인의 추정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상당성이 인정 된다. 또한 일반 참여인력은 공인(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해 공 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으로 볼 수 없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①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임무(상주, 비상주 구분). ②착수계에 기재 된 참여인력 이름과 임무(상주, 비상주 구분). ③사업 착수일자, ④2013, 5, 31, 현재 근무인력(아 르바이트 제외) 명단, ⑤교체된 인력의 명단과 교체일자, 교체사유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자, 피 청구인은 2013 6 13 이 사건 정보인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 인력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대신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소속과 착 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소속'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6. 1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게 개인 성명은 소속 업체명, 참여임무 등의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의 업체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 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 · 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이름 · 직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나 그 밖의 연락처 등과 별개로 성명만을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이름, 직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의 업체 이름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름과 소속을 통하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 씬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ㅇㅇ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그룹이지 해당 업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이름 · 직업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재결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3-768]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건축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건축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 도, 평면도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건축주의 비공개 요청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는바, 건축설계도란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 기본적 속성상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 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웃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가 하는 점은 인 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설계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특히 높으므로 비밀보호 에 관한 이익보다는 공개에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원하는 것도 세세한 구체적 설계 내역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어떤 높이. 구조. 규모의 건물 이 건축되는가 하는 개략적인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가사. 설계도에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 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취지 이 유

피청구인이 2013.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1. 시신계표

가.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533-12 대지 23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청구인 소

유 토지와 청구 외 ㅇㅇ건설이 다세대주택을 신축 중인 같은 동 533-14 대지 236㎡, 같은 동 533-59 대지 30㎡는 서로 인접한 토지로서, 1978년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종전 토 지가 화지됨에 따라 새로이 지적 공부가 작성되었다.

나, 청구 외 ㅇㅇ건설은 2013. 7. 26.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533-14 대지 236㎡, 같은 동 533-59 대지 30㎡ 양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기 존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ㅇㅇ구 ㅇㅇ동 533-59호를 제외한 ㅇㅇ동 533-14호 1필지 만으로 건 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건축허가변경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주택에 대한 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에 대한 정보공 개 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허가권자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정하는 사항을 확 인한 후에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하였다. 특히 지적법 에 의한 등록 전화 등 지적정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지상의 건축허가는 건축심의회의 심 사를 거쳐 건축허가를 결정해야 함(1995, 10, 13, 선고 94누14247판결 참조)에도 이를 심사하지 않고 청구 외 ㅇㅇ건설 주식회사에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 지 역에서 60㎡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을 위반하고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하여 청구 외 ㅇㅇ건설주식회사에 건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동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 대지에 대한 피해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설계도 정 보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 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다. 피청구인은 제3자인 건축주에게 정보공개 의견조회를 하였고 건축주는 비공개 요청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건축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마땅히 직접 당사자인 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접지인 청구인의 피해정도 여부는 이미 이 사건 건축공사의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외관으로도 피해여부 사실 확인은 충분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4, 29. 청구 외 ㅇㅇ건설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13. 6. 13.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에 1978. 11. 30.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확정 지정된 내역과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벽ㅠ 1	화지화정	지정서	내연

종전의 토지				환지 확정지				면적증감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권리면적	리면적 동명 지번 지:		지목 면적		(환지–권리면적)	
29	시인		(평)	(평)	66	시킨	시축	평	m²	
ㅇㅇ동	산31-7	임	120	74		533-12	대	73.9	244.3	- 0.1평
	산31-8 임	120 7	74	ㅇㅇ동	533-14	대	71.4	236	1007	
			/4	533-59	대	9.2	30	+6.6평		

- 다) 청구 외 ㅇㅇ건설은 2013. 6. 피청구인 건축과에 ㅇㅇ구 ㅇㅇ동 533-14, 59호 지상 건축 물에 대해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명시측량 신청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라) 피청구인 소속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13. 7. 1.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에 ㅇㅇ구 ㅇㅇ동 533-59호 토지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통보하였다.
- 마) 피청구인 소속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13. 7. 4.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에 직권으로 해당 토 지인 ㅇㅇ구 ㅇㅇ동 533-59호 토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 정정에 필 요한 서류와 등록 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 대상토지"라 적고 2013. 7. 1. 자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하였음을 통보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13. 7. 22.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취소에 대한 재결에서 각하 재결을 받았다.
- 사) 피청구인은 2013, 7, 26, 청구외 ㅇㅇ건설 주식회사에 ㅇㅇ동 533-59호를 제외한 ㅇㅇ동 533-14호 1필지 만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였다.
 - 아) 청구인은 2013, 8,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도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
 - 자)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 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제3자 정보 비공개 요청 회신

을 받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아)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에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건축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건축주의 비공개 요청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건축설계도란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기본적 속성상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웃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가 하는 점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설계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특히 높으므로 비밀보호에 관한 이익보다는 공개에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원하는 것

도 세세한 구체적 설계 내역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어떤 높이, 구조, 규모의 건물이 건축되는가 하는 개략적인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가사, 설계도에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재결한다.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대법원 2008두13101

판단기준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 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 경영상의 정보을 의미함.

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4651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 ·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12두12303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 ·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 · 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 ·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4651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2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법인택시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및 보수총액신고서 등

주 문

- 1. 이 사건 소 중 2007년분 및 2007년분 정보와 관련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제1항 기재 정보를 비 공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0|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4, 10, ○○교통 합자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11. 11. 해고된 후 택시노동자 권리찾기연대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 26, 피고에게 그 보유하고 있는 대전시 관내 76개 법인택시 사업장별 2006 년부터 2010년까지의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및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수총액신고 서의 기재 내용 중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연간보수총액, 월평균 보수, 월별 근로자수 등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의 위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8,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경영,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 개시 각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월별 근로자수에 관한 정보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2006, 1.부터 2007.12,까지의 정보 내지는 2006년분과 2007년분 정보가 기재된 신고서류는 그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2006년분 및 2007년분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06년분과 2007년분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분 및 2007년분 정보가 기재된 신고서류는 그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어 더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소 중 위 2006년분과 2007년분 정보와 관련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분과 2007년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2008년분 이후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② 피고가 2008년분 이후의 월별 근로자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 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 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 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입증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 12785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힌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수와 그들의 보수와 관련된 정보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및 해당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와 관련된 정보들로서. 그 것이 공개될 경우 택시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밀정보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소송자료로 활용될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회 사들의 비공개 요청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소송자료 로 활용할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대상인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고. 그것이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같은 항제7호의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에 의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 는 허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② 정보공개법 제11 조제3항의 규정은 제3자 관련 정보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와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 를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택시회사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월별 근로자수 정보의 미보유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 9호증의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택시회사들의 월별 근로자수에 관한 2008년분 이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년분 및 2007년분 정보와 관련한 이 사건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248]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운전기사 개인별 운송수입현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기사 개인별 운송수입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0| 유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12. 6. 8.경 피고에게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여객자동차 우수사업법 제21조 1항에 따른 유송수입금 전액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햇정 상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6, 25,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2011, 5 과 같은 해 6, 운전기사 개인 별 운송수입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소외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2, 6, 29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운송수입금대장, 자동 운행기록장치에 따른 운송수입금 내역(개인신상정보는 각 제외), 유류비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기 위해 소외 회사가 제출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2012. 11. 15. 제2차 변론기일에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정보를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 개인별 운송수입현황(2011. 5.분과 같은 해 6.분)으로 한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운전기사별 운송수입현황)를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자료에는 소외 회사 소속 운전기사별 출·입고시각, 수입금, 연료량, 주행거리, 영업거리, 영업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하므로, 위 자료에 담긴 정보는 이와 같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059]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결정취소



용역 원가산정내역서, 용역계약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주 문

- 1. 피고가 2012,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비공개처분을 취소 하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1

청구취지

0| 유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ㅇㅇ기업(이하 'ㅇㅇ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이다.

나.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그 보유하고 있는 ㅇㅇ기업의 '2012년 ㅇㅇ대학교 병원에서 산정한 청소용역 원가산정내역서'. '청소용역계약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낙찰율 관련 자 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6, 원고의 위 공개청구에 대하여, '청소용역계약서', '낙찰율 관련 자료'만 을 공개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 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

¹ 원고는 피고가 2012,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 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진술하였으 나, 이 사건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라. 원고는 2012. 7. 9.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1. '2012년 ㅇㅇ대학교 병원에서 산정한 청소용역 원가산정내역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이하 이들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인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나, 한편 위 조항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 중 원가산정내역서는 ㅇㅇ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급, 각

종 수당, 퇴직적립금, 각종 보험료 등의 세부내역과 기업이윤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한 자료이 고.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ㅇㅇ기업이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기재된 근 로조건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자료로서, 위 각 정보의 내용이 외부 에 알려진다고 해서 기업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 려워 위 각 정보에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기 곤란하고, 가사 이들의 정보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 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원가산정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하여 ○○기업이 다른 용역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거나 영업활동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원고와 같은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현재 근로 조건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 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곤란한바.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비공 개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4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대법원 2011두4602]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아파트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판시사항

- [1] 甲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개발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건축 및 분양한 ○○지구 아파트와 관련하여 토지매입보상비, 택 지조성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등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을 받은 이상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원기를 계산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관계없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 [3] 甲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개발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건축 및 분양한 ○○지구 아파트와 관련하여 토지매입보상비, 택 지조성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 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받은 이상,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계산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 지에서 본안으로 나아가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나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 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규정 내용에 비추 어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 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한편 그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특 히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도 포 함되는 점[주택법 제2조제7호 (다) 및 (라)목, 제9조제1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 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 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서 위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므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법 제38조의2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 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 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 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 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 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고양시 ㅇㅇ구 ㅇㅇ 동 소재 ㅇㅇ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분양워가 산출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공 개한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같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 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 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 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 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 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의 상고이유 중 토지매입비 보상내역에 관한 정보에는 매도인들의 이름 · 주민등 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 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5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대법원 2010두246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공사비 명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누13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 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 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 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 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 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 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 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참가인은 인천국 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시협약 사항 에 따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준공 후에도 공익목적에 부합 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도로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 도 교통현황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협 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의 관리 · 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가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피고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 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 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는 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참가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 니라 참가인에게 투자한 민간투자자와 건설사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여 민 가투자자 등을 기준으로 정당한 이익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내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워심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별도의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6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대법원 2008두131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방송사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 등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 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 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 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3] 한국방송공사(KBS)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5]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6]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인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한국방송 공사가 정보공개청구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항제/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판결요지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 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 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 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 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 [2] 어느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 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 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 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 · 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 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 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 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

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 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와의 관계나 시청자와의 관계,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 · 형평성 · 중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의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방송사의 경영 · 영업상의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한국방송공사(KBS)가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실 여부 를 밝히기 위하여 제작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인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한국방송공사가 정 보공개청구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결 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 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 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01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유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속 프로듀서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하여 작성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에 관 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

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 내지 정보공개청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정보공개청구권 남용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 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포함한 다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해당 여부

어느 법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 법인인 피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 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 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 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 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제 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 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 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 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한편 오늘날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활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 공공적 역할을 수 행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의 이러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 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피 고를 설립하여 공영방송사업을 맡기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ㆍ발전을 위한 기 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방송사인 피고 에게도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 자유의 주

제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방송주체로서의 존립과 활동이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함은 물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이 요청되는바, 방송법도 제1조에서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4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제1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와의 관계 나 시청자와의 관계,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형평성·중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정보공개의 결과로서 야기될 수있는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피고의 경영·영업상의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피고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소속 프로듀서인 소외 1이 2005. 12.경 '추적 60분' 프로그램의 선임 프로듀서인 소외 2로부터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시받은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가 황우석 교수의 기술을 도용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의혹 및 NT-1(황우석 교수팀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이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의 진위에 관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제작하기 위하여 국내외 특 혀 또는 생명공학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는 등 취재를 진행하고, 2006. 4. 초순경 취재물을 가편집 하여 60분 분량의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한 사실, 그 러나 취재 과정 및 내용의 공정성 · 객관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 송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피고는 TV제작본부 교양다큐팀장 회의를 거쳐 2006. 4. 4. 시사정보팀장 명의로 '추적 60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테이프에 담긴 내용으로는 방송할 수 없 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 이에 소외 1은 위 테이프를 가지고 잠적하여 임의로 위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이 사건 정보를 작성한 후, 2006. 4. 18. 이를 소외 2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 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 송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정보에 소외 1이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부 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 한 사항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워심판단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화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7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btl 사업 추진현황 및 실시협약서

주 문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1, 피고에게 ① 2007.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여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lease)함으로써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 사업 추진현황과, ② 2007. btl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내용 등 협약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정보 중 ① 2007. btl 사업 추진현황은 공개하되, ② 2007. btl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내용 등 협약서 일체에 대하여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btl 실시협약서 제87조(비밀유지)에 저촉된다는 사유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이하 '민자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명 "수완1중 외 3교(수완5중, 오치여고, 서광중) 신축 및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하여 2007. 11. 12. 피고보조참가인(당시는 설립 중이었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실시협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작성한바. 위 실시협약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이 공사금액(총민간투자비) 합계 395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4개 학교를 신ㆍ개축하고. 이 에 대하여 피고가 향후 20년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시설 임대료와 유영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피고의 2007, btl 사업에 관한 협약서는 위 실시협약서 뿐이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워고의 주장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납세 의무자인 국민은 그 협약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양 자를 포괄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 비밀유지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일반국민 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등의 주장

① 이 사건 정보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컨소시엄 구성내용(출자자 및 출자비율, 출자금액 등), 설계정보(ve), 재무모델(총민간투자비, 상환계획, 사업수익률, 건설이자율 등) 등이 포함되어 있 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정 보 일체의 비공개를 원하고 있으며. ③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대상을 기재함에 있어서 내용과 범 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 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궈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

로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의 제반 조건에 관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서, 위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사업시행자의 의무,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설정 등), 총 민간투자비(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이 반영된 경상 사업비와 건설 이자의 합계액으로, 총 투자비에서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 재원의 조달 및 투입에 관한 사항, 건설에 관한 사항(설계 및 공사의도급, 그로 인한 책임, 인·허가 문제, 실시계획의 승인, 공사기간, 공사 착수시기, 공정관리를 비롯한 준공시까지의 공사 관련 제반 사항 등),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관리운영권의 행사, 운영비 관련 사항 등), 민간투자법 제45조에 기한 성과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사업 수익률, 임대료, 운영비 등의산정 및 조정, 지급방법과 시기), 정부의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의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실시협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권리의 처분(사업시행자의 변경, 출자자 및 지분의 변경 등)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 분

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협약내용과 그 중 일부 사항들을 구체화한 별표 1 내지 11, 특 히 성과의 점검ㆍ평가에 관하여 이 작성한 세부내용인 부록 1 내지 3. 협상과정에서의 합의사항 인 부록 4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 자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피고보조참 가인의 영업상 비밀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등의 주장과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출자자 및 출자비율, 재무모델 등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다만,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ve 등) 는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주장의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 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외부 인으로부터의 방해나 간섭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개로 인하여 피고보조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 가 없는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 · 공익성 즉, 사회기반 시설은 그 자체로 공공적 ·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은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다 니는 학교시설에 대한 것인 점. 민간투자법 및 그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 설 준공 후 유지 · 관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시행 전반을 규율하고 있고. 주무관청에 대하여 감독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는 총한도액 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 등의 재정지원과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감 면 조치 및 조세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 협약 체결 이후의 사업시행자 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 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관계 법령 참 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가진 실시협약의 체결을 단순한 사법적 · 일반적 계약관계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집행되는 점, 사업시행자인 피고보 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만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향후 20년간 사회기반시설인 학교 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및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예외적인 공개 제외 사유들을 열 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업에 관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 여야 하는 면이 강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사 위 정보의 일부분이 위 조항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단서 나목소정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2)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서 제87조 소정의 비밀유지의무(협약의 해지나 종료 후 5년 동안 정보비공개)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들어 정보를 비공개함은 위법하고,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를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3) 정보공개청구대상의 특정성 문제에 관한 판단

정보공개법 소정의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 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함에 있어서 "2007. btl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내용 등 협약서 일체"로 기재한 사실, 2007. btl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과 관련한 협약서는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서 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원고가 청구대상정보를 이 사건 정보로 특정하였고 할 것이고, 달리 정보공개대상의 내용과 범위가 막연하여 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유를 그 근거로 삼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2398]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판결요지

- [1]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1998. 8. 31. 피고로부터 파주시 소재 피고가 조성하는 000산업단지 내 18필 지의 토지 총 170.477㎡를 30.817.47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
- 2. 원고는 2004. 4. 27. 피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 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하여 ① 직접비에 관련된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내역, ② 간접비에 관련된 판매비, 일반관 리비, 간접비, 자본비용내역, 당초 2002, 12, 말 준공 예정에서 2003, 12, 말로 1년간 지연에 따른 비용 등. ③ 조성원가 계산시 감정평가에 의하여 가격이 확정된 산업용 지, 주차장 용지, 주거시설 용지 등 조성을 위해 투입된 조성원가가 배제되었는지 여 부. 도로·시설 등 공공부분에 대한 조성원가가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주차장용 지 · 주거용지의 면적비율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
- 3. 피고는 같은 해 5. 18. 위 ①. ②항 기재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위 ③항 기재 정보는 부분공개결정을 함
- [2] 쟁점

토지 조성원가의 산출내역은 피고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 우 토지의 보상가격, 토지의 매매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쳐 공기업인 피고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3] 법원의 판단
- 1. 한국토지공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 령을 살펴보면, 피고는 토지의 취득 · 관리 · 개발 및 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 경제주체로서 매매. 협의취득 등 사법상 계약에 의할 수 있고,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수용 · 사용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공급기준에 따라 토지의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 법인의 이익은 대부분 토지의 공급가액에서 그 취득가액과 사업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장가격과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비용은 대체적으로 건설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가격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개발사업을 통하여 피고 법인이 얻는 이익은 주로 개발대상토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과 같이 자연환경이나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2. 결국 피고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편의를 거두는 이익과 다른 한편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투자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피고 법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 문

- 1. 피고가 2004.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 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 기타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법인이다. 피고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이다.

나. 원고는 1998, 8, 31, 피고로부터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소재 피고가 조성하는 ㅇㅇ산업단지 내 18필지의 토지 총 170.477㎡를 30.817.47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가운데 공급 금액 및 면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급금액의 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 목적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 당해 사 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피고는 사업준공 전 공급하는 목 적용지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부터 사업준공일까지의 자본비용을 추후 정산시 수납하며. 선수금을 수납한 경우 선수금 납부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한다.

제5조(면적 등의 기준 및 정산) 목적용지는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하는 용지로서 조성공사 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 면적증감이 있거나 기타 사업비의 증감이 있을 경우 투입된 총사업비를 기준으 로 재산정한 단가로 정산한다.

다. 원고는 2004, 4, 27, 피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 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5. 1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는 법 제 7조제1항제7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제3항 기재 정보는 부분공개결 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토지 조성원가의 산출내역은 피고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토지의 보상가격, 토지의 매매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쳐 공기업인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려가 있다.

나. 원고

첫째, 토지 조성원가의 산출내역은 공기업인 피고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 는다.

둘째,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에 의하면 공급금액은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에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토지 조성원가의 산출 내용을 공개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제7호

4. 판단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가 가사 피고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조성 원가 산출내역이 공개되면 토지의 매입 및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결산상 큰 이익 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입가격이나 용지 보상가격을 올려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토지 수분양자로부터는 공급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므로. 피고가 토지개발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시행하 는 데 불편을 겪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피고는 토지의 취 득·관리·개발 및 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경제주체로서 매매. 협의취득 등 사법 상 계약에 의할 수 있고.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수용 · 사용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토 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공급기준에 따라 토지의 공급가격을 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 법인의 이익은 대부분 토지의 공급가액에서 그 취득가액과 사업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장가격과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하 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비용은 대체적으로 건설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가격구조 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발사업을 통하여 피고 법인이 얻는 이익 은 주로 개발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과 같이 자연환 경이나 사회 · 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조성워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편의를 거두는 이익과 다른 한 편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투자기 관이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익 등을 비교 · 형량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피고 법인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법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 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9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판시사항

- [1]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국민'에 법인과 비법인사단·재단이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공개청구된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개청 구된 정보 전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 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정한 '공개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4]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한편 정보공 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2] 공개청구된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개청 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해당 비공개대상정보만을 공개하지 아니할

-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공개청구된 정보 전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는 없다.
-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 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개청구된 정보는 헌법과 법률 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 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항제6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 보'에 해당한다.
- [4]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에 해당한다.

주 문

- 1. 피고가 2005.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사본교부의 방 법에 의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유 0|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5.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9. 28. 원고에 대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 영업 상 비밀 및 이익 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도(道)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사본 및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그 총괄 집행내역만을 공개하였다(이하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관해 그 총괄 집행내역만을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원고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당 ○○○당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란에 원고가,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다만 청구인의 '주소'란에 ○○○○당 ○○○당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2005년도 1월 내지 7월의 피

고 및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본을 공개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원고가 부족한 사항을 지적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인바.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9. 28. 워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그 총괄 집행 내역만을 공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공개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는 원고가 부 족한 사항을 지적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상 위와 같은 계획에 의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 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인 피고로서는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그 총괄 집행내역만을 공 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보가 전부 공개된다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참석자 또는 금품수령자 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개청구된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해당 비공개대상정보만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공 개청구된 정보 전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편성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는 것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

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 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혀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 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 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 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지출 증빙 중에는 간담회, 연찬회 등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인 개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피고가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 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최종수령자인 개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사참석자와 금품수 령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 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권자가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 을 가지고 지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위 각 추진비의 특성상, 이를 무조건 공개 하도록 할 경우 시정운영에 필요함에도 금원을 지출하지 못하거나 공개를 의식하여 획일적 기준 에 의하여 지출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고. 위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 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위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 는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 중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 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참석 또는 금품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이고. 이에 따라 인적 정 보의 공표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원 집행의 엄정성과 공평성의 요구 정도 도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에 비하여 높다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함이 상당하다(위 공 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 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는 일반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비공개정보로 하여 비공개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가 피고들로부터 위 격려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영업상이를 수령한 경우, 그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그것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4)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라고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7528]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택시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

재결결과

기각

재결요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 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 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다. 청구인의 2013년도 단체협약 서,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한다는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은 오로지 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 · 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정 보 중 단체협약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 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 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청구인의 비공개 의견서에 반하여 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3. 청구 외 김○○에게 한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0| 유

1. 사건개요

일반택시운수사업자인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 O O 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3 년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3 김ㅇㅇ 에게 위 정보 중 '청구인의 2013년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

한다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3. 4. 4.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4. 1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복수노조사업장(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노조 상호운수분회 조합원 76명, ○○지역노조 상호운수분회 조합원 1명)인데 비조합원 68명 등 총 145명이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에 따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 2013년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지역노조 상호운수분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김 O O는 O O지역노조 상호운수분회 조합원으로 과거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인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청구인 회사를 고소·고발하여 업무를 현저히 방해했던 자로서, 이 사건 정보가 노조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쉽게 열람이 가능함에도 오로지 청구인 회사와의 분쟁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노사갈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개인적 의도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청구인 회사를 고소·고발하여 회사의 정당한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다.

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는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정한 부분)과 채무적 부분(집단적 노사관계 하에서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분 - 유일교섭단체 조항, 조합활동 조항, 단체교섭절차 · 인원 등에 관한 조항, 시설이용 조항,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쟁위행위에 관한 조항 등)이 있는데, 채무적 부분은 회사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 또한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이 개별 조합원에게는 직접 미치지 않고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 합과 사용자에게만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 분의 공개가 김ㅇㅇ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은 분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을 분리하 여 규범적 부분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회 사의 사무실과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 또는 복사 가 가능한 자료이므로 공개된다고 해도 청구인 회사의 정당한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저하다 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김ㅇㅇ 등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통한 업무수행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김ㅇㅇ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아 청구인 회사에 대한 고소 · 고발 등을 통 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김ㅇㅇ가 오로지 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를 청구했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바, 청구인 이 제시하는 김ㅇㅇ가 과거에 청구인 회사를 고소 · 고발하였다는 자료는 김ㅇㅇ가 청구인의 업무 를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후 김ㅇㅇ가 고소ㆍ고발 등 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오로지 청구인을 괴롭힐 목 적으로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조에서 말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

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김ㅇㅇ는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를 공개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제3자 의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김ㅇㅇ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를 사본·출력물의 방법으로 공개해 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자, 청구인은 2013. 2. 15. 단체협약서 제8조에 따라 열람만 가능하므로 위정보를 비공개해 달라는 제3자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3. 김ㅇㅇ에게 이 사건 정보인 '청구인의 2013년 단체협약서(63매), 임금협정서(19매) 사본'을 사본ㆍ출력물의 방법으로 2013. 5. 3.부터 2013. 5. 12.까지의 기간 중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공개하나 부속합의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공개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3. 4. 4. 청구인에게 김ㅇㅇ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을 안내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문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2013. 4. 22. 개최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단체협약서 및 임 금협정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사측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라고 판단하 기 어렵고, 소속 근로자의 정당한 알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내용을 공개함이 타당하 다'는 이유로 기각결정되었음을 통지하며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이 2013년 임금협정서는 13장 55조로, 2013년 단체협약서는 17 장 199조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1	0	
_	나	$\stackrel{\circ}{-}$	_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제1장	총칙	총칙
제2장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노조활동
제3장	임금체계와 산정방법	단체교섭
제4장	기본급	근로시간, 근무제도, 휴일 및 휴가
제5장	제수당	임금 및 퇴직금
제6장	퇴직금	인사
제7장	상여금	표창 및 징계
제8장	운송수입금	교육
제9장	근무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10장	임금의 공제 및 상계	산업안전 및 보건
제11장	금품청산과 지연이자	재해보장
제12장	운행원가(유류대)	쟁의행위
제13장	특별합의규정	노동쟁의의 조정
제14장	부칙	조정 및 중재
제15장		부당노동행위
제16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제17장		부칙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 제9조제 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김ㅇㅇ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아 청구인 회사와의 분쟁을 통해 청구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노사갈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개인적 의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청구인 회사를 고소·고발하여 회사의 정당한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기본급·수당·퇴직금·공제 등 임금지급체계와 산정방법 등을 정한 임금 협정서와 노조활동, 단체교섭, 근로시간과 근무제도, 임금 및 퇴직금, 인사, 표창 및 징계,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정한 단체협약서로서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 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김

ㅇㅇ가 오로지 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 구체적 자료가 없을 뿌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 회사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정보의 적용을 받는 김○○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 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입법취지 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정보가 김ㅇㅇ에게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 인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다음,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회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 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를 말하며,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 해 법인 등의 경영 ·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 · 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 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 인데. 이 사건 정보 중 단체협약서는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조활동. 단체교 섭. 근로시간과 근무제도, 임금 및 퇴직금, 인사, 표창 및 징계,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 이 기재된 자료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 회 사의 노조원들에게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비공개 의견서에 반하여 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재결한다.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4651]

정보공개 이행청구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 관련 정보

재결결과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들은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1,2,3공구)'의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정보로서, 그 가운데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화설비 및 장비현황과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소속·이름·자격 등이 기재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입찰에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들의 지분율, 정화장비 현황,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의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정화장비 구성·운영 계획 등이 기재된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1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9.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 중 7-2번 정보는 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 정보(별지 목록 2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는 모두 비공 개하기로 하는 취지의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에 청구인은 2012. 11.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추진 중인 화경사업이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들 중 제안서, PQ점수, 채점결과서, 선정관별 결과서 등은 감독 · 입찰계약 · 기술 개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선정업체의 기술 인원현황은 동 정보에 포함 된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가 우려가 있 는 정보이며, 각 선정업체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현황 등은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동 자료의 공개로 인한 실익보다 기업의 특허권, 기술 보유 능력, 시설 장비 현황 등의 공개로 인한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 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19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 중 7-2번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 건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다음-

연번	정보공개 청구내역	정보공개 거부 사유
1	비소오염 처리를 위한 업체 선정과정과 선정업체별 심사위원의 개별 제안서 선정 점수	제9조제1항제5호
2	OO건설 건설사의 토양정화 현장 적용성 설비 장비와 기술인력 현장 투입자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3	공동 도급자인 OO바이오스 지분율에 의한 정화설비, 기술능력, 현장투입 기술자격 및 비소 수처리 시설 등	제9조제1항제7호
4	공동 도급자인 OOO세인트 지분율에 의한 정화 장비, 수처리 설비 기술능력, 실제 현장적용할 장비	제9조제1항제7호
5	이엔플러스의 지분율에 의한 장비투입내역, 설비 능력, 기술능력	제9조제1항제7호
6	한국토양복원기술의 컨소시움 지분율에 의한 기술, 장비, 설비능력	제9조제1항제7호
7–1	각각 업체별 PQ점수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제9조제1항제5호
7–2	사업자 선정과정	공개
8	OO건설 정화 구역에서 설비 및 정화공법	제9조제1항제7호
9	공동도급 업체인 에코바이오의 시설, 장비, 인력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10	En3의 비소처리설비	제9조제1항제7호
11	SGR의 현장 설비장치와 시설 능력	제9조제1항제7호
12	알파환경 컨소시움과 공동보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현장 내에 장비, 인력, 시설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13	제안서와 PQ점수, 체점결과서, 선정관별 결과서	제9조제1항제5호
14	OO건설 비소처리계획과 시설 장비	제9조제1항제7호
15	공동도급사인 OOENG의 설비·기술능력, 기술자격, 비소를 처리하는 설비	제9조제1항제7호
16	H ⁺ 에코의 비소처리기술, 시설능력, 장비	제9조제1항제7호
17	에코필의 현장 장비·처리 계획	제9조제1항제7호
18	에니스환경의 비소처리기술과 장비능력	제9조제1항제7호

다. 이 사건 정보들은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1,2,3공구)'의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 사업개요 :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오염토지를 매입하고 관계기관 합동TFT를 구성하여 오염부지정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2, 11, ~ 2015, 6,

- 소요액 : 약 741 억원 소요 추정(국가와 관련기업의 오염기여율에 따라 분담하며 매년 책정된 예 산 범위내에서 계획 수정 · 추진될 예정임)
- 토양정화 대상 토지 : 충청남도 00군 00읍 00리, 00리 등 총 1,864,993㎡
- 사업자 선정 : 각 공구별로 5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1공구는 00 건설, 2공구는 00건설, 3공구는 00건설이 계약자로 선정됨

■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

연번	이 사건 정보들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
1	이 사고 승규를 비소오염 처리를 위한 업체 선정과정과 선정업체별 심사위원의 개별 제안서 선정 점수	
2	00건설 건설사의 토양정화 현장 적용성 설비 장비와 기술인력 현장 투입자	토양정화설비, 기술인력의 소속·이름·자격
3	공동 도급자인 OO바이오스 지분율에 의한 정화설비, 기술능력, 현장투입 기술자격 및 비소 수처리 시설 등	지분율, 기술능력, 현장투입 기술자격·이름
4	공동 도급자인 COO세인트 지분율에 의한 정화 장비, 수처리 설비 기술능력, 실제 현장적용할 장비	지분율, 정화장비, 현장투입 기술자격
5	00플러스의 지분율에 의한 장비투입내역, 설비 능력, 기술능력	지분율, 정화장비, 기술능력
6	한국토양복원기술의 컨소시움 지분율에 의한 기술, 장비, 설비능력	지분율, 기술능력, 정화장비 현황
7–1	각각 업체별 PQ점수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공구별 순위, 평가결과, 심사위원별 점수
8	00건설 정화 구역에서 설비 및 정화공법	00건설 컨소시엄 설비 및 정화공법
9	공동도급 업체인 에코바이오의 시설, 장비, 인력	에코바이오 시설장비, 인력 현황
10	En3의 비소처리설비	정화장비 현황
11	SGR의 현장 설비장치와 시설 능력	현장 설비장치, 시설능력
12	알파환경 컨소시움과 공동보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현장 내에 장비, 인력, 시설	장비 및 시설, 현장인력 현황
13	제안서와 PQ점수, 체점결과서, 선정관별 결과서	제안서, PQ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14	00건설 비소처리계획과 시설 장비	토양세척설비, 동전기 설치 · 운영계획
15	공동도급사인 COENG의 설비 · 기술능력, 기술자격, 비소를 처리하는 설비	기술능력 및 기술자격, 비소처리 설비 현황
16	H ⁺ 에코의 비소처리기술, 시설능력, 장비	정화장비 현황
17	에코필의 현장 장비·처리 계획	정화장비 구성·운영 계획
18	에니스환경의 비소처리기술과 장비능력	정화장비 구성 · 운영 계획

^{*} 이 사건 정보들에는 각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신기술 및 특허 · 실용신안), 주요 장 비 현황, 핵심기술인 정화설비 및 정화공법, 구성 ·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판결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 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하되,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

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 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 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하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 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 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은 비공개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영 ·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 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으로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 별 ·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들 중 1번 · 7-1번 · 13번 정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1번 · 7-1번 · 13번 정보에는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 산출방법, 평가결과, 공구별 순위, 심사위원 별 점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 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1번 · 7-1번 · 13번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 중 1번 · 7-1번 · 13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들 중 2번 · 9번 · 12번 정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2번 · 9번 · 12번 정보에는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화설비 및 장비현황과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소속 · 이름 ·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정보 중정화설비 및 장비현황에는 입찰에 참여한 법인 등의 핵심기술, 주요 장비의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소속 · 이름 · 자격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 중 2번 · 9번 · 12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2번 · 9번 · 12번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 중 2번 · 9번 · 12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 · 4번 · 5번 · 6번 · 8번 · 10번 · 11번 · 14번 · 15번 · 16번 · 17 번 · 18번 정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4번·5번·6번·8번·10번·11번·14번·15번·16번·17번·18번 정보는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들의 지분율, 정화장비 현황,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정화장비 구성·운영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정보들에 포함된 핵심기술, 기술능력, 시설능력, 정화공법 및 구성·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동 정보들에 포함된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동 정보들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

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 · 4 번 · 5번 · 6번 · 8번 · 10번 · 11번 · 14번 · 15번 · 16번 · 17번 · 18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 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 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3번 · 4번 · 5번 · 6번 · 8번 · 10번 · 11번 · 14번 · 15번 · 16 번·17번·18번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 · 4번 · 5번 · 6번 · 8번 · 10번 · 11번 · 14번 · 15번 · 16번 · 17번 · 18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재결한다.

1)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523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률자문 의뢰 내용, 자문결과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계약서 작성일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1. 10. 26. 피청구인에게 '서울 ○○구의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자문변호사에 질의한 내용 및 답변내용(자문변호사의 개인신상정보 제외), ②제기된 민원 관련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등 정부기관에 질의 여부, ③민원 답변을 위한 확인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④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1. 3.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하고, 이 사건 정보 ①, ③과 ④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은 서울 ㅇㅇ구가 2011. 4. 22. (주)ㅇㅇㅇ와 기 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을 (주)ㅇㅇㅇ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잔여분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가로 발주한 사업인데, (주)ㅇㅇㅇ는 2011년에 서울 ㅇㅇ구 외에도 ㅇㅇ시, ㅇㅇ군, 서울 ㅇ구 등 다수의 지자체들의 중요기록물 사업을 수주하였다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자로 이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나. 이 과정에 (주)ㅇㅇㅇ는 이 사건 사업의 계약자인 (주)ㅁㅁㅁㅁ과 2011년 6월 말경 사업 포 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달청은 이를 이유로 2011. 7. 13 '○○시 중요기록뭄 DB 구축 6차 사업'의 2회 유찰과정에 단독 응찰한 (주)ㅇㅇㅇ를 대신하여 (주)ㅁㅁㅁㅁ과 수의계약 을 체결한 바 있다.

다. 그러나 (주)ㅇㅇㅇ가 중도 포기한 ㅇㅇ군과 ㅇㅇ시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ㅁㅁㅁㅁ은 ㅇㅇ시 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해 제기한 사업 포괄적 양도양수계약과 다른 사업승 계협약서를 운운하며 사업 포괄적 양도양수 사실의 부인 및 관련기관들의 사업승계 불인정이라는 상반된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라. 이처럼 (주)ㅁㅁㅁㅁ은 (주)ㅇㅇㅇ와의 사이에 체결한 사업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지자체의 계 약 건마다 아전인수식으로 상이하게 주장하여 다수의 편법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위 사업 포괄 적 양도양수계약의 형태 및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것이다.

마. 또한 사업 포괄적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승계 여부에 따라서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 및 (주)ㅁㅁㅁ미의 입찰 참가가 무효가 되는 것인바, 이 사건 정보 ①, ③과 ④ 는 공정한 계약질서의 확립을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은 2011, 10, 12, 기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의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 있는 것이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결정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언급하였는데, 결정 근거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결정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경영‧영업상 비밀 에 관한 사항'이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3자에 대한 법익만을 인정하는 편중된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상호 법익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것이어서 위법 ·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이 입찰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최종 의사결정이 반드시 자문변호사의 답변내용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보아야 하고, 입찰계약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청구인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자문의뢰가 필요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자문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입찰에서 변호사 자문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소송 등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점, 이에 따라 신속한 집행이필수적인 입찰계약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또한 제3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 ③과 ④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제3자인 (주)ㅁㅁㅁ미에 정보공 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주)ㅁㅁㅁ므은 이 사건 정보 ③과 ④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와 제3자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제3자 의견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8, 3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을 제한경쟁(총액)협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2011, 9, 7, (주)ㅁㅁㅁㅁ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

며, 2011, 10, 12, (주)ㅁㅁㅁㅁ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1. 10.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2011, 10, 2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과 ④의 제3자인 (주)ㅁㅁㅁㅁ에게 의견청취를 요 청하자. (주)ㅁㅁㅁㅁ은 이 사건 정보 ③과 ④가 (주)ㅁㅁㅁㅁ의 중요한 내부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 유로 2011, 11, 1, 피청구인에게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라. 2011, 11,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하고, 이 사건 정보 ①, ③ 과 ④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 ①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법률자문 의뢰 내용'과 '자 문결과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자문 의뢰 내용'에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사항, 국민신문고 민 원 접수 및 진행사항, 개찰내용, 그리고 (주)ㅇㅇㅇ와 (주)ㅁㅁㅁㅁ 사이에 체결된 사업포괄양수 도계약의 개념. (주)ㅇㅇㅇ의 실적이 (주)ㅁㅁㅁ미에게 승계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의뢰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자문결과서'에는 영업양도 및 실적이전 여부. 부정당제재의 효력이 승계되 는지에 대한 자문변호사들의 답변과 함께 답변서 말미에 '본 자문은 귀 국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내부자문에 해당되므로 외부에 제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 ③과 ④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과 ④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와 계약일자로서 (주)ㅇㅇㅇㅇ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실적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일체의 권 리와 의무를 (주)ㅁㅁㅁ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내역, 양도인, 양수인, 목 적, 방법, 확정, 효력, 기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ㅇㅇㅇㅇ가 ㅇㅇㅇㅇㅇ산업협회에 실적신고한 소프트웨어관련사업실적이 첨부되어 있고, 법무법인 ㅇㅇ이 공증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 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 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 항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 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 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 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 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 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 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 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 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2)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영 ·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 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 ·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 · 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 ·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 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 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 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법률자문 의뢰 내용과 자문결과서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자문 의뢰 내용에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진행사항, 개찰내용, 그리고 (주)ㅇㅇㅇ와 (주)ㅁㅁㅁㅁ 사이에 체결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의 개념. (주)ㅇㅇㅇ의 실적이 (주)ㅁㅁㅁ미에게 승계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의뢰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자문결 과서에는 영업양도 및 실적이전 여부. 부정당제재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대한 자문변호사들의 답 변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판단 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 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입찰계약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 청구인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빈번히 발생한다 할 것인데, 자문 결과가 공개되면 향후 입찰계약 관련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변호사의 자문결과 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결국 피 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

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과 ④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과 ④는 (주)ㅇㅇㅇ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실적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ㅁㅁㅁ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와 계약일자로서 (주)ㅇㅇㅇ가 ㅇㅇㅇㅇㅇ산업협회에 실적신고한 소프트웨어관련사업실적이 첨부되어 있는바, 위 정보들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되어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할 것이고, 위 정보들의 제3자인 (주)ㅁㅁㅁ미 중요한 내부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등과관련하여 입찰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들이 공개된다면, 위 정보들의 제3자인 (주)ㅁㅁㅁ의 계약수주 등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정보들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③과 ④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 ①, ③과 ④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법령 해석례 11-0395

질의요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기 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 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 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법령 해석례 06-0037

질의요지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 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 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 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 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 함.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 리스트 등

주 문

1. 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 보 및 검토불가품목(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 가품목(576개) 리스트 전체. ② 2007년 2월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 전체리스트 및 시험방법(생체시험,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위탁생동 등)별로 분류된 리스트 전체"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13, 위 공개청구정보 중 "2007년 2월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 전체 리스트 및 시험방법(생체시험,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위탁생동 등)별로 분류된 리스트 전체"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7, 3, 16,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576개) 리스트 전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아래에 서는 위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3. 23.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1.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이의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투기와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로서 공개된다고 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특정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품의 선택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소비자들에게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측면이 더 크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확보되어 시험자료가 조작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의약품목에 대한 것으로 현재 피고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재평가를 통해 사실 확인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관련자들에게 생동성시험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며 국민들에게도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는 회원들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자제를 권고하는 등 의약품 시장질서의 교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즉,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1) 약사법상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이 신약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시험성 적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의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면, 특정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 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 적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3) 피고는 2006년 초순경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시험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원본 분석자료(생동성시험 분석시료를 분석할 때 분석기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자동 생성되는 크로마토그램 등 컴퓨터 파일)가 품목허가신청 당 시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결과보고서의 분석자료와 다른 경우를 발견하였고. 청문회 등을 통하여 소명기회를 준 후 생동성시험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의약품(115개)에 대하여 는 각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4) 또한 조사과정에서 컴퓨터 원본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확보하긴 하였으나 자료저장 등에 문제가 있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의 수 가 576개였다. 피고는 위 의약품 576개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생동성 시험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재평가와는 별도로 576개 품목 전체에 대하여 gmp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통한 특별검정을 실 시하고 있다.
 - (5) 이 사건 정보는 조사과정에서 컴퓨터 원본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확보하긴 하였으나

자료저장 등에 문제가 있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576개의 의약품을 각 업소명, 제품명, 성분명으로 정리하여 놓은 자료이다.

- (6) 위 576개의 의약품은 전부 전문의약품이며, 2006, 3, 31,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품목은 1,162품목으로 위 576개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은 약 49,6% 정도에 이른다.
- (7)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 (2)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 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 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 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 (나)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리스트로서 생물 학적동등성시험 실시품목 중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원본자료와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가 일치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정보 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정보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의약품의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정 보를 이용하여 "처방자제 권고 등"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가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의약품 제약회사의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침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약품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건강권이 라는 공익과 비교 · 형량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 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고(약사법 제2조제4항), 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 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의료법 제18조의2). 따라 서 의약품은 일반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의 소비자들인 환자의 자기결 정권 혹은 의약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 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의사들에게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 약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약품 소비자들에게 사실에 기 초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의약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에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더욱 깊어지리라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782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내역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

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에 있는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내역(국유재산의 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30.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제8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2012. 7. 6. 개정, 훈령 제1123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별표 1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국유재산관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감시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만으로 는 명단이 공개된 사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정 보에 불과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 · 매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장래예측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 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설사 이 사건 정보 중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 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 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당사자의 명단'은 해당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식별정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 법 제9조제1항제6호. 이 사건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나 '해당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및 이 사건 지침 별 표 1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부분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 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1,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관련된 다음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전자우편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 다 음 -

구분 ^{주1)}	법정동	지번	사용허가(또는 대부)				
			일자 ^{주2)}	면적(m²)	상대방	기간(년)	사용료 ^{주3)} (대부료)

주1)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구분

나. 2013. 1,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 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8. 27.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실태, 취득일자 등'과 같은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등재한 후 집계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

주2) 허가일자 또는 계약일자 등이 2000년 이전이더라도 허가(계약)기간이 2000년 이후 만료되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임 주3) 연간 사용료

개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 보(제1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 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궈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 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 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 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 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 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워의 성명·직위(라 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 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마목)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 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 국유지의 관리, 무주의 국유재산 조사 등과 같은 각종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재산상황 등을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감시목적을 위한 공익보다 위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보는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집계 ·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 내용 중 일부로서, 국유재산 주변의 사유지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공개하지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6580]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관련 자료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0|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학교법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수익 용 기본재산 처분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전문대학 과-11447, 2012, 12, 13.)부터 피청구인의 불허가 통지(전문대학과-11644, 2012, 12, 21.)까지 ○○대학과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자료일체(전문대학과-11490, 전문대학과-11531 등도 포함)'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에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불 허가와 관련하여 ① 피청구인이 생산한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② ○○대학이 피청구인에게 제출 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정보 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 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3. 15. 종전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하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이고, 청구 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유사한 경우(2009-21449)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재결례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대체취득 부동산 등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경우로서 처분을 불허가한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에는 대체취득 부동산의 조건부 매각 약정서 및 가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ㅇㅇ대학과 가계약이 해지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로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에 악용될 수 있으며 ㅇㅇ대학과 제3자 간의 계약서상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의무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비공개요청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ㅇㅇ대학이 2012. 12. 10. 피청구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ㅇㅇ법 인-89)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2. 14. ㅇㅇ대학에게 위 처분허가 신청서의 수익용 기본재산 금액이 과거 보고된 금액과 상이하므로 차액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전문대학과—11490)하였고, 같은 날 ㅇㅇ대학은 피청구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정정보고(ㅇㅇ대학교—187)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21. ○○대학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시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전문대학과—11644)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2012. 12. 21.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불허가와 관련 하여 ㅇㅇ대학과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3. 2. 6. ㅇㅇ대학에게 다항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 하는 공문을 보냈고. ○○대학은 2012. 2. 8. 피청구인에게 ○○대학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 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 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중 피청구인이 ㅇㅇ대학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차액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청한 문서(전문대학과-11490)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반려통지서(전문대학과-11531) 및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불허가 통지서(전문대학과-11644) 는 공개하고. ㅇㅇ대학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5. 종전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13, 6, 21,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ㅇㅇ대학이 피청구인 에게 제출한 2012, 12, 10,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및 대체취득 허가신청과 2012, 12, 14,자 수 익용 기본재산 현황 정정보고로서. 처분허가 신청서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하락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의 일부분을 부동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므로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 어 있고, 허가신청서(수익용 기본재산의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 포함), 조 건부 매각 약정서 및 가계약서 사본, 대체취득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등의 붙임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정정보고서에는 과거 제출한 수익용 기본재산 금액에 기금의 포함여 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차액발생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사 용현황 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변동내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붙임자료가 제출되었다.

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9-21449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청구인 :

○○○,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건에서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대체 매입한 것과 관련된 정보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사유서, 처분허가 금액과 부동산 매입내용 등에 대한 일부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금 현황,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 설정내역 등은 ○○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따르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유사한 경우(2009-21449)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재결례는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 산의 처분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것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불허가로 인해 대체 부동산의 가계약이 해지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일부분에 대해 부동산으로의 대체를 신청하는 취지의 '수익 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차액이 발생 사유를 설명한 '정정보고' 및 각각 의 '첨부자료'로서. ○○대학이 처분하고자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내역과 피청구인의 불허 가처분에 따라 가계약이 해지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취득 부 동산의 주소, 소유주, 임대상황과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 세부기준 및 인근 부동산의 평가사례, 감 정평가금액 및 계약조건 등 계약이 해지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 재되어 있어 제3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ㅇㅇ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및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구 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ㅇㅇ대학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재결한다.

04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5150]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주택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정보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요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 중 각 대상주택

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게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

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

보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6. 5. 피청구인에게 ㅇㅇ신도시 A1-0BL, A1-00BL의 보금자리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산정을 위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몇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피청구인이 한 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정보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그 기 초가 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재산권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매제한 및 의무거 주 기간을 설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 건 정보는 청구인을 포함한 입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바 공개되어야 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일 뿐. 회의의 내용마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 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 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직원 중 누가 조사해도 동일한 값이 나와야 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공개사유로 들지 않았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대해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추가로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 인근지역의 대상 아파트 내역에 관한 자료 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미 분양가심사위원 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전매제한기간이 확정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 삿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 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회의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42조

의5제5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회의내용이라고 보이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주택법 제38조의4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 제42조의5제5호, 제42조의7제6항, 제42조의10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제5호·제8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 청구서, 비 공개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신도시 시범단지인 A1-11BL의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한 입주예정자로서, 2012. 6.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 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된 85m²이하 주택이다.

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11, 11, 24, 이 사건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 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70% 이하에 해당하여 입주자들은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하고,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 3, 5,)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었다.

라.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1. 23.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 에 대한 부분은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 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 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 회규칙 · 대법원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 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 입법 취지 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 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 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한편 동 조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조항 단서의 제8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

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주택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2조의5제5호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그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3)「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하며, 20호 이상의 주택단지에 속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20호 미만으로 할 수 있다)의 주택규모별 평균가격에 같은 항 제1호의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이 속한 달로부터 해당 주택의 분양시점까지의 시·군·구별 아파트가격 상승률[통계청 승인을 받은 상승률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아파트(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이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조사·산정한 주택가격과 공시된 주택가격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가격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 등 또는 국가 등이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한 국감정원에 주택가격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은 주택공시가격 등 이에 필요한 가격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 워이 시장 등 또는 국가 등에 제공하는 가격정보는 별지 1의 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 1) 이 사건 정보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에 대한 부분의 정보는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 다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 기'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 에게 더 이상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2) 이 사건 정보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판단
 - 가)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피첫구인은 돗 정보가 「주택법 시햇령」 제42조의7제6핫 및 제42조의10제1항의 취지상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 로 살펴본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 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 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42 조의7제6항 및 제42조의10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 위임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

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일 뿐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이 전부 비공개 사항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는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정보의 경우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 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이행청구를 하고 있고, 이 경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은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과는 달리 처분시가 아닌 재결시가 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로 적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비공개사유 외에 더 나아가 재결시를 기준으로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같은 규정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 하고 있는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 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 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동 정보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 청에 따라 제공한 기초자료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인 가격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동 정보를 기초로 이미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동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는 어려운 점, 오히려 동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매제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 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고. 동 정보 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다른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에 관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 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 1, 주택건설대지명 :
- 2, 인근지역 :
- 3. 인근지역 주택가격

주택구분	주택	규모	조사주택의	적용비율		조사주택의
	대상주택(m²)	조사주택(m²)	주택공시가격(m²)	1	2	최종 주택가격(m²)
아파트				×	×	
				×	×	
				×	×	
주상복합 아파트				×	×	
				×	×	
				×	×	
연립주택				×	×	
				×	×	
				×	×	

- * 대상주택: 주택건설대지에서 공급할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 * 조사주택 : 인근지역에 소재한 조사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의 범위 다만, 아파트이외의 공동주택은 20호 미만의 주택단지를 포함함

(예 : (주상복합)아파트/연립주택 ±5㎡적용의 경우, 대상주택125㎡→조사주택120~130㎡, 초고층주택 -5층 또는 -15㎡적용의 경우, 대상주택50층(150㎡)→조사주택45층(135㎡)이상)

- * m^2 당 주택공시가격 : 인근지역에 소재한 조사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총주택공시가격을 총전 용면적으로 나눈 가격
 - * 적용비율 : 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
 - ②공급면적비율(분양대상주택의 전용면적 ÷ 주택공급면적)
- * m'당 최종 주택가격: 제4조제1항제1호의 아파트(주택)가격상승율을 적용하지 않은 조사주택의 m'당 주택공급면적 단가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917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풍력발전 관련 불협의 공문 일체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5.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4. 24. 피청구인에게 '○○풍력발전 관련 불협의 공문 일체'(이하 '이 사건 정 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 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2012, 1, 8,자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민의 알궈리 차원에서 확 인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는 피청구인의 비공개 사유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 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도시계획(군계획시설) 사업승인과 관련된 관계 자료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 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4,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2, 5,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도시계획(군계획시설) 사업승인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ㅇㅇ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안)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운영과-7189)' 1장과 첨부물인 'ㅇㅇ군관리계획 결정 협의에 따른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위 세부기준 제8호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정보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 아 래 -

1) 보안림 지정·해제 및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고시 전의 관련 정보, 도시 개발계획 사업 승인이나 결정 협의 관련 사전 정보

2) 국유재산(국유림)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 명세 및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마. 2012. 1, 8,자 인터넷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ㅇㅇㅇ도가 ㅇㅇ군 국유림 지역에 풍력발전기 21기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주민과 환경단체. 서부지방산림청의 반대에 막혀 전면 조정되게 되었 고. 서부지방산림청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ㅇㅇㅇ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 호구역 등과 인접해 있어 개발보다는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풍력단지를 조성하면 대규모 산림 훼손이 불가피해 산림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대상면적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 역에 있어 재해발생 위험과 수질보전 기능 저해가 우려되고, 산 정상부 스카이라인의 전면 훼손 에 따른 국토의 변형과 소음, 그림자 등의 피해로 지역주민의 정서 · 안정을 해칠 우려가 높아 민 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라는 이유로 ㅇㅇ군에 대해 국유림 사용협의 전면 불가 견해를 통보하였다 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4조 및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 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 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이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 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파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ㅇㅇ군 국유림 지역에 풍력발전기 21기를 조성하려는 ㅇㅇ군계획시설과 관련하여 ㅇㅇ군수가 피청구인에게 해당 국유림에 대한 사용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여러 사유를 들어 협의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부동산 투기 내지는 매점매석 등을 초래할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핵심 내용인 피청구인의 협의 불가 사유가 이미 2012. 1, 8,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된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재결한다.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0911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전국 국유림 목록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 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3. 31. 피청구인에게 "전국 국유림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0. 4. 5. 이 사건 정보는 국유재산(국유림)의 개별적인 재산명세 자료 로 산림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부'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청구한 국유림에 대한 것은 각 시군면 행정관청에서 손쉽게 임야대장을 발급받 을 수 있고, 법원의 전산망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국가기밀사항이 아 니다

나, 피청구인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각 행정관서에서 임야대장이나 등기 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국유지 불하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매점매석을 한다는 것인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위법 ·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유림의 개별적인 필지에 대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으나, 이 해관계가 없는 특정인이 행정관청이나 법원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85,000여 필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인 모든 국유림의 필지별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나.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보 등을 위하여 2030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32% 목표로 하는 "국유림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매년 1,000억 여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유림과 연접하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유림 등 1만 핵타르 정도를 매입하여 국유림을 확대ㆍ집단화하고 있는바, "전국 국유림의 개별적인 재산명세"인 이 사건 정보는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ㆍ집단화정책을 이용하여 국유림 주변의 사유림에 대한 투기나 매점매석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국유림 확대ㆍ집단화정책을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국유림)의 개별적인 재산명세"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의 사례만 보더라도 국유지 불하 및 일제시대의 토지 매도증서 등 각종 공부의 위 · 변조를 통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 권말소소송 등 국유지 관련 사기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전국 국유림의 개별적인 재산명세"와 동일한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유림 주변 사유림에 대한 투기나 매점매석, 국유지 개별필지에 대한 불하,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에 따른 국유재산의 소유권말소소송 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인정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산림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을 수립하여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 건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산림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제8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산림청 소관업무 중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3. 3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개형태는 사본출 력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하여 청구하였다.

나. 2010. 4. 5.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정보는 국유재산(국유림)의 개별 적인 재산명세 자료로 「산림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 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 로 비공개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집계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국유림) 목 록은 필지별로 소재지, 지번, 재산종목, 재산구분, 지목, 면적, 대장가액, 사용주체, 사용실태, 취 득일자, 활용여부, 회계, 재산관리관 등의 항목으로 있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위 세부기준 제8호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정보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1) 보안림 지정·해제 및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고시 전의 관련 정보, 도시 개발계획 사업 승인이나 결정 협의 관련 사전 정보

2) 국유재산(국유림)의 소재지 · 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 명세 및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 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지 관련 토지 사기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도일자	지역별	주요 내용	보도매체
2003.10. 4	경기 파주	청와대 사정팀 사칭 특정 국유지 불하 사기	문화일보
2005, 5,16	경기 파주 강원 철원	200여만평의 매도증서 위조,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말소소송	연합뉴스
2005,12,30	경기 양평	공문서 위조 산림청 소유 국유림 100ha를 사유림과 교환 사기	YTN
2006,12, 8	경기 일대	신도시와 산업단지조성 개발붐에 따라 서류 위조 등을 하여 국유지 등에 대한 토지사기소송	문화일보
2007. 9.19	경기 수원 경기 성남	남한산성 주변 국유지 불하 사기	YTN
2007.10. 9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단지내 국유지 불하 사기	동아닷컴
2008,11,12	서울 송파구	산림청 소유 임야 불하 사기	 경향닷컴
2009. 6.12	인천	재경부와 산림청 문서 위조하여 국유지 불하 사기	Jo!ns
2009. 9.15	제주	국유지 구입 문서 위조 사기	미디어제주 제주의소리 제민일보
2010, 3, 2	경기 화성	국유지 불하 사기	경인일보
2010, 3,23	충남 보령	국유지 불하 사기	연합뉴스 내일신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 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 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부 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국유림에 관한 정보는 각 행정관청이나 법원전산망을 통해 임야대장이나 등기 부등본을 발급받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국가기밀사항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해관계가 없는 특정인이 각 행정관청이나 법원전산망을 통해 임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는 국유림의 개별 필지에 관한 사항일 뿐이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국유림의 필지별 내역을 임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통해 얻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 브레인(dBrain)으로 집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필지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장가 액, 사용실태, 취득일자, 활용여부 및 재산관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 국유림의 개별적인 재산명세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 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말소소송 등 국유지 관련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유림 주 변의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 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 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 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0229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건설원가 관련 자료, 시공사 관련 계약서, 건축비 산출내역서 등

주 문

- 1. 피청구인이 2007. 11. 12. 청구인에게 한 ② ○ ○ 1지구 택지조성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 ③ ○ ○ ○ ○ 1지구 택지분양가 및 관련자료일체. ④ ○ ○ ○ ○ 2단지 건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 ⑤시공사 관련된 계약서 일체와 직접공사비 관련자료 일체, ⑥공사 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마진 등 실질적인 건축비의 산출내역 및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0. 30. 피청구인에게 ①○○○○1지구 택지수용가 및 일체관련자료(가.소유 자별 보상협의안내. 나.소유자별 수용현황. 다.소유자별 보상비 지급내역. 라.보상협의 내역서). ②○○○○1지구 택지조성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당시 택지비 산정내역 및 산 정근거, 나,준공조서, 다,용지비 내역서(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및 그 부대비용), ③ㅇㅇㅇ이지구 택지분양가 및 관련자료일체(기반시설분담금 상세내역). ④ㅇㅇㅇㅇ2단지 건 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시 건축비 산정내역 및 산정근거, 나 준공원가 계산 서, 다.원가 보조부), ⑤시공사 관련된 계약서 일체와 직접공사비 관련자료 일체(공사도급 계약 서), ⑥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마진 등 실질적인 건축비의 산출내역 및 관련자료(가, 준공 조서, 나,공사 시방서)(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7. 11, 1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 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종료된 분양가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양계약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의 시비가 일어 각종 민원과 소송이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6. 1, 23. 청구인을 포함한 ㅇㅇㅇㅇ2단지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시행안내문으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알려준 후 2006. 1. 25 부터 2006. 2. 28 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2단지 임차인들은 택지비, 건축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분양전 화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분양전환절차 중지등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ㅇ지방법원은 2006. 2. 24. 분양전환절차 중지등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10, 30, 피청구인에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에 대 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1. 1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공개 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공개 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①ㅇㅇㅇ이지구 택지수용가 및 일체관련자료(가.소유자별 보상협의안 내, 나 소유자별 수용현황, 다 소유자별 보상비 지급내역, 라 보상협의 내역서)의 정보(이하 "① 의 정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①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의 정보를 공개 하기 위해서는 ㅇㅇㅇㅇ1지구의 각 토지 소유자가 얼마의 보상금을 받는지에 대한 개인의 구체 적인 정보까지 공개할 수 밖에 없으므로. ①의 정보는 공개될 경우 타인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이 이 사건 처분 중 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②-⑥의 정 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②-⑥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②-⑥의 정보는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ㅇㅇㅇㅇ2단지의 분양가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것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 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②-⑥의 정보의 공개가 결과적으로 국민들 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부동산 투기를 더 욱 과열시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②-⑥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②-⑥ 의 정보는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건설원가, 직접공사비 및 건축비의 산 출내역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 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②-⑥의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피청 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②-⑥의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등의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 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②-⑥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②-⑥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 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②-⑥의 정보를 공 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 ·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부존재 등 기타

정보부존재 등 기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조합원명부공개촉구시정명령처분취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포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2, 원고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한 조 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 공개촉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워고 ㅇㅇㅇ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워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동 일대 263.100.9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9, 26,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000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원고 000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워고 000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서 업무처리를 위하여 워고 조합에 전화번호를 제공하였 으나, 이와 같이 자신들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제3자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 조합이, ㅇㅇㅇ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인 000가 2013, 10, 23, 및 2013, 11, 21.에 한 조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에 대한 열람 · 복사 요청에 대하여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 원명부의 공개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3, 12, 12, 원고 조합에 대하여 '2013, 12, 30,까지 000에 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워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조합 등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본래적 의미의 조합워명부(도시정비법 시행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는 각 조합워들의 전화번호를 적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인바.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전화번호는 조합 등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보 관하는 자료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만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②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조합원명부에 대한 '관련 자료'로 인정 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등하게 개인정보 식별 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고유한 특정자료로서 기능하는 전화번호를 무 단히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화번호 역시 주민등 록번호와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함으로써.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③ 이 사건 처분은 전화번호라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있는 경 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이는 정보주체의 정 보관리 및 처분권한을 무단히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부당하고. ④ 정보주체인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낸 경우라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라 정보주체의 의사를 명확히 따라야 함에도 이러한 조합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 조합의 조합 장인 원고 000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 절차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에 비추어 비례의 워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는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3. 9. 25.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청장들에게 통보하 였는데,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주체에 의한 공개방안

- 공개범위
-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제공(도정법 제81조, 강 행규정)
- 조합원명부, 토지등소유자명부, 추진위원회(조합)설립동의서, 별도로 작성한 전화번호 포함 명 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모두 포함
- 신청방법
-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는 구청장의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

■ 구청장에 의한 공개방안

- 공개방안
- 도정법 제81조 규정은 추진주체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추진주체가 제공하여야 할 명부 등 을 추진주체가 거부, 지연, 불성실 제공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인 바. 추 진주체가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 복사 요청에 불응 또는 지연으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

• 공개절차

- 토지등소유자의 공개요청에 불응하는 추진주체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
- ☞ 추진위원회 설립 미동의자 · 조합설립 미동의자(전화번호 추진주체에 미제공)에게 추진주체측 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3인 이상) 등
-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추진주체는 고발 등 행정조치
- 전화번호의 경우 자치구가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 를. 없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조합)설립동의서, 서면결의서(추진주체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 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명부를 작성하여 제공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전화번호의 공개는 청구목적, 청구인자격 및 제공받는 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결
 정 처리(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
 - ① 청구목적 : 추진위(조합) 해산동의서 징구 등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의 경우로 한정
 - ② 청구자격: 실태조사 신청인(대표), 해산동의서 징구희망자(대표) 등 청구목적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
 - ③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화번호 포함 명부를 제공받는 자는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수 또는 구역면적 등을 감안하여 그 수를 제한(구역면적 5만㎡당 3인 정도)
- 기타의 청구목적이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목적 등을 감안하여 전화번호를 포함한 일부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부분공개
- 개인정보의 복사방지, 제3자 제공방지, 회수대책 등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 안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2) ○○○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인 B는 2013, 10, 22, 및 2013, 10, 23, 원고 조합에게 조합원 실태조사(실거주자 확인, 전화번호 확인)를 목적으로 조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조합은 2013, 11, 7, B에게 '원고조합이 2013, 11, 8,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주무관청인 서대문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여 조합원명부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후, 2013, 11, 8, 피고에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0, A에게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원고 조합을 상대로조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의 공개를 요청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3) B는 다시 2013. 11. 21. 원고 조합에게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할 목적 등으로 ○○○ 재정비촉진구역의 모든 토지등소유자의 명단(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현주 소. 소유지번,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본호)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2013, 12, 11, B에게 전화번호가 제외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B는 그 수 령을 거절하였다.

- (4)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이 B에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2. 12. 원고 조합에 대하여 '2013. 12. 30. 까지 B에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5) 한편, B는 2013, 12, 20, 피고에게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할 목적으로 ㅇㅇㅇ재정비촉진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명부(전화번호 포함)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정비법 제81조제6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 청에 응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조합원명부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들고 있는바, 을가 제20호증의 이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 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화경 정비조례 제15조제1항제6호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 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으로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 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화 번호가 조합원명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닌 점. ② 2014. 1, 23, 서울특별시규칙 제3953호로 개정되 기 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은 조합원명부상 조합원에 대하여 '성명, 생 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조합원명부의 서식(별지 제9호)을 마련해 두고 있었던 점(위 개정으로 인 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③ 2012, 2, 1, 법률 제 11293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 유자 ·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 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제2호에서 정한 조합원명부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 본문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 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 조합은 000에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 지에 따라 B에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시정비법 제 81조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 · 복 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개대상 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는 점(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 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 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은 '법 제81호 제3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서류 및 관련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이 사건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 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 등소유자 ·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를 공 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전화번호 공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 한 조합원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전화번호 공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 조합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개청구의 목적, 청구인 자격 및 제공받는 자의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③ 이와 같이 전화번

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를 추진위원회 · 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워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익이 존재하고, 서울특별시 가 마련한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서 토지등소유자 · 조합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공개청구의 목적. 청구인 자격 및 제공받는 자의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한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 조합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를 000에게 공 개하도록 의무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전화번호를 원고 조합에게 제공한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인 조 합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 제6항에 따라 B에게 전화번호가 포 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구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 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을 통하여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B에 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조합이 B에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워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도시정 비법 제81조제3항, 제6항에 위반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정보부존재 등 기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2069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법인카드 집행내역(형식적으로는 공개처분이나 실질적으로 거부처분인 경우)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0.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6. 피청구인에게 '2002.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대변인실 법인카드 집행내역(단,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대변인실 법인카드 전체에 대하여 서울시통합자금 관리시스템 — 법인카드 — 청구기간 내역 조회 후 엑셀로 다운로드한 것)'(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비공개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청구한 서울시 통합자금 관리시스템의 보유정보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이고, 대변인실이 사용하고 있는 각 법인카드 별 월집행 총액에 불과하여 사실상 비공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맞게 대변 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카드의 번호로 청구내역을 조회하여 카드별 월별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을 집계하여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사실상 비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 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어 같 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9.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대변인실 법인카드 집행내역(단,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대변인실 법인카드 전체에 대하여 서울시 통합자금 관리시스 템 – 법인카드 – 청구기간 내역 조회 후 엑셀로 다운로드한 것)'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10, 2, 피청구인은 카드별 월별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 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음-

■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집행내역

(기간: 2012.1.1~2013.6.30)

카드번호	집행월	집행목적	건수	집행금액
9435-2000-****-2842	2012.1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18	2,202,435
9435-2000-****-2842	2012.2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1	26,000
9435-2000-****-3782	2012.1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16	2,366,800
9435-2000-****-3865	2012.1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12	2,125,000
9435-2000-****-3873	2012.1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19	3,226,600
9435-2000-****-7798	2012.1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39	7,021,200
9435-2000-****-2782	2012.2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21	2,536,150
9435-2000-****-2782	2012.3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24	3,395,500
9435-2000-****-2782	2012.4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24	3,004,690
9435-2000-****-2782	2012.5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26	3,146,230
9435-2000-****-2782	2012.6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12	1,859,710
9435-2000-****-2782	2012.7월	시정 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 간담회 등	24	3,495,371
(소사라)				

다. 우리 위원회 직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일, 사업자명, 부서명, 카드번호, 사용일, 승인번호, 매출구분, 청구금액, 가맹점명, 카드관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으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와 그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청 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이나 부분공개처 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 공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결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부존재 등 기타

[대법원 2013두43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종교인 개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26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유 0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 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를 원고의 동의하에 비 공개로 열람 · 심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원심 변론기일에 위 비공개 열람 · 심사에 이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또는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하는 재판상 변론의 원리 에 어긋나는 헌법 위반 또는 소송지휘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 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99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① 종교인의 최근 2년간 소득세 납부현황[이름(교회나 절 등 소속 단체 및 종교법인명), 신고소득, 납부세액, 세율 등]에 관한 정보, ② 최근 2년간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종교인 가운데 연소득을 1억 원 이상으로 신고한 종교인이 있는지, 해당 종교인이 있다면 이름, 소속 종교법인, 구체적 소득신고액, 세율, 납부세액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라 한다)를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피고가 전자적 형태 등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초자료를 편집하여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를 만들 수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 부분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1)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그 문언, 정보공개를 요구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 법인이나 종교단체에 속한 직업적 종교인 개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이다.
- (2) 그런데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도 종교법인 등 종교단체에서 일하며 근로소득 등을 얻고 있는데, 종교법인 등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서 일반 근로자들과 구분하여 종교인에 대한 것만 따로 신고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종교인이 종교단체와

별도로 신고 · 납부하는 기타의 소득세도 종교인이 아닌 자의 것과 별도로 취급되지 않는다.

- (3) 피고는 워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국세통합시스템에 전 산 등록하여 과세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신분이나 직위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소득세가 소득자의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 고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세법상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근로소득세 과세 목적상 종교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 (4) 종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그와 더불어 제출해야 하는 각 구비서류에 종교인의 명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5) 피고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세법 등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과세자 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피고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종교인 명단 의 수집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종교법인 등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 명단을 받는 등 실제로 종교인 명단을 수집한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 (6) 종교법인 등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인 명단을 별도로 관 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공개청구 대상인 '종교인'의 개념이 특정되어 있지 않 다고 주장하자, 원고가 2012, 11,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종교인' 은 '목사, 승려 등 직업적 종교인' 또는 '종교법인에 소속된 목사, 승려, 신부 등 직업적 종교인(성 직자)'으로서 특정되어 있다고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종교인'은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자연인인 종교인을 뜻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종교인'이 자연인인 종교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의미 또는 그 정보의 보유·관리 개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보부존재 등 기타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3833]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민원처리경위를 일지형식으로 저장한 자료 (내부적인 용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

판시사항

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甲의 민원 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하여,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에 대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 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甲의 민원 처리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위 토지의 불법성토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는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 을 통하여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하여,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는 군 청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甲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 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 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 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 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료는 위 법 제2조제1호에서 정 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 문

- 1,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유 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피고에게, '경북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29, 431, 422, 423-1, 423-2번

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내용을 경상북도청(농업정책과)에 보고한 자료(이하 '이 사건 쟁점자료'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 · 관리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참고자료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자료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경상북도청에 이메일로 발송한 문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쟁점자료는 담당공무원이 내부적인 용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에 의한 결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소속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그 문서파일(이 사건 쟁점자료)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었다.
 - (2) 이후 ○○경찰서에서 경상북도청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고, 경상북도 소속 담당공무원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 토 및 원고의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자.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문서파일(이 사건 쟁점 자료)을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여 주었다.

라. 판단

이 사건 쟁점자료가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즉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문서(제2조제1호)'인지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자료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 서이므로 이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경상북도 소속 담당공무 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 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점. ③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 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 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자료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 정보부존재 등 기타

[대법원 2008두86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

판시사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누2814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이라 가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 외에서 피고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

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 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 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 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 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보 중 소외인 변호사 관련 정보가 제3자인 소외인 변호사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 관련 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제3자 관련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이 제3자 관련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제3자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의하여 자신의 정보가 보유 · 관리되는 자와 합리적 이유 없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6

정보부존재 등 기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416]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한 경우

판시사항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

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0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의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3. 피고에게 공개의 형태를 '사본, 출력물 + 전자파일'로 하여 별 지1 정보의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13. 이 사건 정보를 방문하여 열람하라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방법만을 일부 제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공개처분일 뿐 공개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이 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원고는 2007,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후 사본할 부분을 특정하여 교부받을 예정이니 가능한 시기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열람 가능 일시 등 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2007, 10, 5,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 고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라. 판단

- (1)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 질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하겠다.
-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교부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구체적인 열람 일시 지정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양이 과다한 관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도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양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 (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정보를 교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 (라)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출력물의 형태가 아닌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를 교부한다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 (마)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 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 (2)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 개 거부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함이 명백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정보부존재 등 기타

[대법원 2003두127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처리대장,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등 (부분공개의 의미, 정보보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 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 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2] 사본출력물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정보공개처리대장에서 청구인에 관한 사 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 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3]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 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 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 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 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 [4]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과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이 폐지되었다 하여 곧바로 교도 소장이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보관 ·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5]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 · 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6]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재단법인 ○○ 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신문별구독신청자수등에 관한 정보는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1.29.법률제/127호로 전문 개정되기전의 것) 제/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03. 4. 17. 선고 2002구합186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누581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이라도 공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접수일시. 청구인. 청구목적. 내부의사 및 심의과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청구인의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결정 사항도 함께 편철되어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 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 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 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 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 결, 2003, 10, 10, 선고 2003두77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법 제8조제3항,법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법시행규칙(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인, 청구사항(정보내용, 사용목적, 청구방법), 처리사항(공개내용, 공개범위, 비공개사유, 통지 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공개수량, 담당부서)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한 문 서로서 그 중 청구인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반면 나머지 사항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청구하는 사본출력물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정보공개처리대장에서 청구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 할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보공개처리대장 전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정보공개처리대장의 부분공개의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다.

2.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교정23500-10100),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법무부 훈령 제228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위 각 정보의 존재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그 각 정보가 이미 폐지되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문건으로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무릇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관리하던 위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은 1985, 8, 8, 제정되어 2002, 4, 4,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교정 12530-507)으로 변경되면서 폐지되고, 위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은 1989, 9, 12, 제정되어 2002, 3, 28, 수용자자비부담물품 의공급에관한규칙(법무부 훈령 제460호)으로 변경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법규의 폐지는 그 적용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제 폐기하여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운영지침이나 공급규칙이 폐지되었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위 문서들을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정보를 한 때 보유·관리하고 있던 피고가 위 각 정보가 폐지된 이후 그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존기한의 경과 등으로 실제로 폐기하여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폐지된 위 각 정보에 대하여 따로 보존기한이 정하여져 있는지, 실 제로 위 각 정보가 폐기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정보의 보유 · 관리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1)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재단법인 ○○협회로 송금한 수 익금 총액과 피고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2)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3)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 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 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4)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가.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 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법 역시 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 제7조가 예외적인 공개 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 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 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 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1) 먼저,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재단법인 ○○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피고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재단법인 ㅇㅇ협회로 송금한 수

익금 총액과 피고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이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에게 악용되어 수용자들과 재단법인 ○○협회 및 피고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형집행기관인 피고의 효율적인 수용관리업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각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형법 제22조, 행형법시행령 제91조,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등에관한절차 규정(예규교정 제439호, 95. 10. 2., 기록 283쪽) 등을 종합하면, 교도소장은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판매되는 물품의 판매를 위임받은 재단법인 ○○협회 지부장으로서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판매되는 수익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도소장이 위 협회에 송금한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 총액과 교도소에 배분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는 교도소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각 정보의 내용이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판매되는 물품판매수익금과 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피고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각 정보가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 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 결과와 직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교도소 직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으로 내부적인 고유한 정보사항에 해당 하며 자치적인 직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기관도 아닌 일반 수용자에게 공개하는 경 우 국가기관의 내부통제기능 상실 및 직원회의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위 각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형법 제22조. 행형법시행령 제91조. 위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등에관한절차규정 등을 종합하면, 교도소직원회는 교도소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판매소에서 재단법인 ㅇㅇ협회로부터 수용자들을 대상으 로 하는 수용자자비부담물품 판매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지위에도 있으므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치조직이라고 하기 어렵고. 수용자자비부담물품 판매에 관한 업무 또한 결국 국가 의 업무를 위 협회를 통하여 위탁받은 것으로서 단순한 사적 업무라고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각 정보의 내용이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 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불과하 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 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7조제 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 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각 정보가 '형의 집행이나 교정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 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 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자 수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자 수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자 수는 피고가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피관리자인 원고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개할 실익이 없고. 형집행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의 고 유 정보가 수용자들에게 누설될 경우 형의 집행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위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자 수(수)라는 통계자료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정보가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병명별 현황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정보는 피고가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피관리자인 원고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개할 실익이 없고, 다른 수용자들의 진료정보 및 현황뿐만 아니라 형집행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의 고유 정보가 수용자들에게 누설될 경우 형의 집행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현저하므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 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정보는 피고가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피관리자인 원고와 직·간 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사유는 비공개사유를 규정한 법 제7조제1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각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의 고유 정보의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러한 정보가 법 제7

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이치이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정보 중 수용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법 제7조제1 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개인식 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 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의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 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7조제1항제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 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 고가 청구하는 사본출력물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정보 중 비공개대상인 개인식 별정보를 제외한 그 나머지 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각 정보 모두가 '형의 집행이나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7조제1항 제4호 및 법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를 공개하는 경우 수용자의 인 적사항이나 정치 · 사회 · 사상적 성향 또는 영치금의 보유 · 사용내역 등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알 려지는 결과가 되어 서로 간의 충돌이 생기고 그 정보를 공개한 피고를 불신하게 되는 등 피고로 서는 교정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위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수용자들의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수)라는 통계자료에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앞에 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정보가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7조제1항제4, 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보부존재 등 기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6077]

정보공개 이행청구



감사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부존재 정보)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6.14. 정보공개청구 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6.14.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처럼 법인지원사업에서 자격이 없는 업 체에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여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6.25.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맞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11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정보공개 시스템 공무원창구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6.14.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6.25.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12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되어 징계등처분요구를 받은 바 없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2012.6.25.정보 부존재 결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2012.8.8.자 답변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는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사실이 없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재결한다.

09 ⁴⁵

정보부존재 등 기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4-200]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공중연결통로 허가현황(부존재 정보)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정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13. 피청구인에게 공중연결통로(일명 구름다리, Sky Bridge) 허가 현황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를 하자, 피 청구인은 2014. 2. 21. 청구인에게 공개 요청한 정보는 별도로 취합, 가공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를 결정 ·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타자 치구 공개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교회, 병원 건물이므로 공개되어도 사생활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추출 및 가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14. 2. 1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 1) 공중연결통로(일명 구름다리, Sky Bridge) 허가 현황
- 각 건별 ① 허가일, ② 위치(주소지), ③ 통로규모(길이, 폭), ④ 지상으로부터 높이, ⑤ 연결 된 건축물들의 주용도. ⑥ 하부 토지 소유주(국가, 지자체, 개인 등)
 - 나. 피청구인은 2014. 2.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 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 · 사진 · 필 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 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 · 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 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4, 2, 21,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공중연결통로 허가현황이 별도로 취합, 가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나, 공중연결통로 허가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청구인 관할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도면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별도로 취합·가공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등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공중연결 통로 허가현황에 대해 별도의 취합·가공이 필요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부존재 등 기타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3-1096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자료(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서인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는 「행정절차법」 상 처분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필요 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113조의 2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일시 · 장소 · 안건 · 내용 · 결과 등을 기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정보들은 회의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 3제2항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동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의 의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정보공개 열람공개처분은 관련법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 열람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5, 피청구인에게 2012. 1, 1.부터 2012. 9, 30,까지의 ① 도시계획위원회 자 문 및 심의자료. ② 안건별 파워포인트(PPT) 자료. ③ 회의결과에 따른 부서 협의 및 결과통보 문 서(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를 이메일 및 정보공개통신망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 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에게 동 기간 중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3조의 2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 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통상적인 공문서와 달리 문서번호, 검토자, 결재권 자의 확인이 없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공개청구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회의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열람 공개 형태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공공기관은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을 이메일 및 정보공개통신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내부검토 후 서면보고하고 검토결과를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113조의 2에 따른 회의록의 범위에 심의자료는 회의록에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제2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5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 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이메일 및 정보공개통신망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4.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는데.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면 처분 행정청ㆍ기안 자의 성명 · 직위/직급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는 표시되어 있으나, 검토자 · 기안자 · 협조자 · 결재권자 · 시행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2013. 6. 25.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결재경 로(담당자, 협조자, 도시계획담당사무관, 도시계획과장의 서명)가 표시된 2013, 4, 11, 자 '정보공 개청구에 대한 공개방침 결정' 문서를 첨부하였다.

라. 2013. 7. 17.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2012. 1. 1.부터 2012. 9. 30.까 지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2회 포함) 회의는 총 5회 개최되었고,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일시, 장소, 상정안건, 참석자) · 회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각 심의안건 상정부서 등에 회의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 (1)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 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유를 제외 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3) 국토계획법 제113조의 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 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 보관 · 관리하여야 하며 법제1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열람하게 하되, 심의가 끝나지 않은 안건은심의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열람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문서번호, 검토자, 결재권자의 확인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의 처분서인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는 「행정절차법」 상 처분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의록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열람 공개 형태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113 조의2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을 기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정보들은 회의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동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법령 해석례 14-0292

질의요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개여부 결정 관련 시행문 법령 해석례 13-0423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 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 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 용ㆍ기관의 직인ㆍ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 야 하는지?

회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 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 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 용ㆍ기관의 직인ㆍ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기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 법령 해석례 13-0362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에 대해 결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결정 및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회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사록 법령 해석례 13-0110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법령 해석례 12-0195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 일시 · 장소 · 안건 · 내용 ·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 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 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조례에 규정된 시점으로 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만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 난 후에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회답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 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 법령 해석례 12-0203

질의요지

「국회법」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 감사 · 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부처에 요구(그 내용이 사실상 부처 업 무 관련 질문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서류제출요구"라 함)하는데, 이러한 서류 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회법」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 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7 정보공개법상 문서의 결재여부 법령 해석례 12-0188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지?

회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경우에도 해당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및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의 공개 요청 <mark>법령 해석례 11-0698</mark>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 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원사 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회답

민사소송법 제162조 법령 해석례 11-0457

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단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 162조제1항 중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체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

'동일한 민원' 및 '지체없이'의 의미 법령 해석례 11-0134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의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지?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 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1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법령 해석례 07-0376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 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2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는 정보의 공개 법령 해석례 06-0058

질의요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 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2년도 개최내역	446
2013년도 개최내역	452
2014년도 제되네여	404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2년도 개최내역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	2012 1.4	▶이의신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①구성원 정보(성. 직 업, 소속)와 12.7 ㅇㅇ아파트 재건축안 통과 도 시계획 위원회 ②회의록	부분공개 ①번사항 : 공개 ②번사항 : 비공개	도시 계획과
		▶제3자 이의신청 '서울 ○○진동저감 대책 알림' 문서에 대한 정보 중 제3자와 관련이 있는 '2011년 5월, 6 월, 7월 계측보고서'	공개(제3자 의견 기각)	문화재과
2	2012 1.11	▶이의신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00물산, 00중공 업, 00통신기술) 소속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부분공개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	정보통신 담당관
		▶이의신청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철도노선계 획에 대하여 최초계획, 변경계획, 국토해양부 로 보낸 타당성 조사자료	비공개: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지속 미칠 수 있는 사항) 규정에 의거 기각	교통 정책과
3	2012 1.18	▶이의신청 서울시립○○복지센터에 입소중인 김00에 관 한 입소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	비공개 :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규정에 의거 기각	아동복지 센터
4	2012 3.7	▶이의신청 ○ ○지방법원 △△카확 □□호 소송비용액확 정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서 통보에 대 해 ①즉시 항고 없이 사건을 확정시킨 서울 시의 음모에 대한 기록, ②변호사 선임비, 영 수증, 고문변호사 명단, ③기타 변호사 선임 기준공문서 및 사건소송기관의 예규공문서 (①,② 비공개)	부분공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문화 예술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4	2012 3.7	▶이의신청 2011년 9월 및 12월경 도시계획위원회 ①개 최당시 전체위원 성명, 소속, 직위(직책)과 ② 9월, 12월 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위원 명단과 ③회의록 및 회의결과	부분공개 공개 가능 범위(①,②) 정보만 공개	도시 계획과
5	2012 3.12	▶이 <mark>의신청</mark>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관련 정보공개청구 (①자체 추진계획, ②자치 구 시달 공문, ③자치구 회신공문, ④서울시 비정규직 자료)	부분공개 : 제5호 ①정부부존재 ②공개 ③비공개 ④대체자료로 공개	일자리 정책과
		▶이의신청 의무휴업제 등 법령 제개정에 관련 정보공개 청구(①지경부 제출 서울시 의견, ②자치구 실태조사 결과, ③자치구 회신내용)	보유중 정보(①) 공개 부분인용 (부분공개 의결) 부분공개 : 제5호 ①공개 ②요약자료 공개 ③비공개	창업소상 공인과
6	2012 4.2	▶이 <mark>의신청</mark>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각 연도별 행정심 판청구를 인용한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청구 인의 명칭	공개 다만,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부분 은 비공개	법무 담당관
7	2012 4.30	▶이 <mark>의신청</mark> 2004~2010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부분공개 위원명단 : 공개 회 의 록 : 부분공개(발언자 비공개)	도시 계획과
		▶이 <mark>의신청</mark> 2008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위원명단 : 공개 회의결과 : 공개(회의록 없음)	건축 기획과
8	2012 6.27	▶이의신청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관련, '11.11 월 00구청에서 서울 시로 접수한 공문	정보부존재	아동청소년 담당관
		▶이 <mark>의신청</mark> '12.5월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관련 기초 금액 산출내역서	공개	계약 심사과
9	2012 7.27	▶이의신청 ○○센터 임대료 금액과 임대료를 결정한 기 록물 전문 및 ○○센터 건설을 논의하고 결정 한 기록물 일체	부분공개 전체 문서목록 및 문서, 계약서 일부 공개	투자 유치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0	2012 8.7	▶이의신청 2012,7,3일 ○○대교 투신사고 관련 정보 119신고 접수 통화내용, 접수직원 이름, 직위, 나이, 경력, 방재센터 조치 사항, 경찰에 연락 한 사람, 유품발건 시간 및 발견자에 대한 사항	부분공개 19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음성파일, 접수직원 의 나이·경력은 비공개 그 외 사항은 공개	종합방재 센터
11	2012 8.10	▶이 <mark>의신청</mark> 2012년 평가기본계획안(공개) 및 상반기에 수 행된 주요사업 추진 실태 평가결과서(비공개)	부분공개 "상반기 시정 핵심사업 평가보고회" 자료는 비공개 대신 "상반기 시정 중사업 추진실태 평가 종 합" 자료를 공개	평가 담당관
		▶이 <mark>의신청</mark> 상반기 시정주요사업 집행 및 추진실태 평가 기록물 일체	합 시뇨글 증계	
12	2012. 9.18	▶ <mark>직권심의</mark> ○○구 소재 2011년 에너지 다소비 신고업체 (9개) 및 에너지 사용량	부분공개 업체명은 공개 사용량은 사업자 의견 조회 후 동의 시 공개, 부동의 시 범위만 공개	녹색 에너지과
		▶ <mark>직권심의</mark>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비공개 자치단체는 해당없음 비영리 단체는 비공개	세무과
		▶ <mark>직권심의</mark>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현황	정보부존재	의정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 시험의뢰서 내용	부분공개 시험의뢰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검사, 시험항목은 공개	보건환경 연구원
		▶ <mark>직권심의</mark> ○○○교회 공원화 결정에 따른 질의에 관한 민원서류 일체	결정 보류	균형 발전과
13	2012. 9.21	▶ <mark>직권심의</mark> ○○자△△△호 □□ 여행사로 이전 등록한 접수서류	부분공개 양도양수신고서의 양도가격과 시기는 가리 고 공개 기타 첨부서류는 비공개	버스 관리과
		▶ <mark>직권심의</mark> 풍납토성 합리적인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용 역보고서	공개 정책결정 참고용 보고서이므로 공개	문화재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3	2012. 9.21	▶ <mark>직권심의</mark> ○○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결정된 15명에 대한 성명, 당시 부서 및 직책, 현재 부서 및 직책, 과실	비공개 : 제5, 6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5호,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조사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09~'12, 현재까지 ○○택시에 보조한 콜 관 련 금액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 음	택시 물류과
		▶ <mark>직권심의</mark> ○○시고시 제□□□-△△△호로 고시된 '○○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민동의서 관련서류 일체	기각 :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지구단위 계획과	
14	2012. 11.1	▶이의신청 ①○○터널 공사전 사전조사 보고서 △△아파 트 (2011.5) 전문 ②○○터널 발파 전 시험발파 보고서 ③2000.1(~2012.9.28○○터널 관련 서울시 문 서목록	공개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제3자 이의신청 서울시 ○○시민모임 대표자 등록 변경 관련 접수서류	부분공개 : 제6호 참석자이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는 비공개	행정과	
		▶ <mark>직권심의</mark> 도시공원내 건축물 밀집지역 현황조사 (2006.1.19. 생산문서)의 모든 내용	부분공개 : 제6호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허가유무는 비 공개	공원 조성과	
	-	▶ <mark>직권심의</mark> 비공개 서울00바0000 개인택시 기사가 본인을 승차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받을 필요 거부로 허위신고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 을 묻기 위하여 소송에 필요한 개인 신상 정 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교통 지도과	
	-	▶ <mark>직권심의:유예건 재심의</mark> ○○○교회 공원화 결정에 따른 질의에 관한 민원서류 일체(12회 결정보류로 재심사)	비공개 성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는 등 부분공개하는 것 이 적절하나, 직권심의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사전고지를 하지않음에 따라 절차상 공개결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리부서의 '비공 개 결정' 을 유지함	역사도심 관리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5	2012. 12.18	▶ <mark>직권심의</mark> 교통사고 목격자의 신고내용	공개 녹취파일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 보이므로 녹취파일을 충실히 서면으로 정리 한 녹취록을 공개하되 청구인에게 녹취파일은 비공개하고 녹취록을 공개하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	종합 방재센터
		▶ <mark>직권심의</mark> 「○○터널 시점부 민원처리비의 총사업비 반 영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비공개: 제5, 7호 민원처리 관련 금액 및 이에 대한 총사업비 반영방법 등이 내부 검토과정에 있고, 민자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성격이 현저하므로 비 공개	도로 계획과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단체 추진위원회가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한 설립 동의서 명단	비공개 : 제6호 동의서 명단 공개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고, 정 당한 단체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 개	택시 물류과
		▶ <mark>직권심의</mark>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보건증 유무와 위 생문제에 대한 단속요청 관련 다산콜센터에 신고한 날짜	공개 신고한 날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적고, 일반적으로 주차위반 단속 등 각종 행정처분 일은 본인에게 통지하는 등 본인 관련 신고 사항에 대한 알 권리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	시민봉사 담당관
16	2012. 12.18	▶이의신청 법무담당관의 소송수행 관련 사무관리비 지 출내역 (12.1월~10월)	부분공개: 제6호 청구서 상의 시건번호는 공개시 법원의 정보 등과 결부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건별 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등이 정 리된 지급명세서: 공개 지급명령번호: 기 공개된 지출부에 명기된 정보 지급번호 제△△△의 지출결의서, 기안지: 공개	법무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한강변 수변경관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공개유예 후 공개: 제5호 한강변 수변경관 관리방안은 내부검토과정 에 있어 내용이 가변적이므로 현 시점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개는 곤란함 검토가 완료되면 전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 이므로 우선 공개를 유보하고, 완료 후 공표	도시 계획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6	2012. 12.18	▶직권심의 사단법인 ○○협회가 서울시에 안전관리지원기관 최초 등록시 제출한 서류 ▶직권심의 사단법인 ○○협회가 서울시에 안전관리지원기관 최초 등록시 제출한 서류 중 일부의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2)이 경력자로 인정되어 어린이 놀이 시설 지원기관으로 인증되었음을 서면으로공개요청	공개 당해 협회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최초 등록시 청구인 2인의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었고, 법정 요건에 충족되어 당해 협회를 안전관리지원 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문서를 복사해서 제공 단. 청구인이 당해 경력증명서 제출인(경력자) 과 동일인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구인 2인 에게 직접 교부 필요 제3자에게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 일의 간격을 두고 공개	도시 안전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3년도 개최내역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	2013 1.11	▶이의신청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자료 및 방문상담 일정 관련 기록」의 부분공개 결정 ※ 상담변호사의 인적사항 공개요구	비공개 : 제6호 변호사의 인적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법무 담당관
2	2013 1.29	▶ <mark>직권심의</mark> 「광진구 △△역 주변 청소년 유해 선정성 전 단지 광고주 등에 대한 내사계획」의 비공개 결정	부분공개 : 제4호 수사방법 내지 시의 판단이 노출되어 관련자 가 악용할 경우 수사의 어려움 등 직무수행 을 곤란하게 하는 사항 제외	민생사법 경찰과
		▶ <mark>직권심의</mark>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ㅁㅁ허가·준공 도면 서류일체」 비공개 결정	비공개 : 제3, 6, 7호 재산의 보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의 공 개에 따른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	건축 기획과
3	2013. 3.11	▶ 직권심의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 처분결재 공문서 사본 각1부 • 처분 통보서 사본 각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공문 사본 각1부 • 학교 폭력 단순사안 조치결과 보고 공문 사본 1부 • 제6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취소 공문 사본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각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각1부 • 재심청구에 따른 가해자 측 의견서 사본 6	부분공개: 제1, 6호 • 처분결재 공문서 사본 각1부: 공개 • 처분 통보서 사본 각1부: 공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공문 사본 각1부: 공개 • 학교폭력 단순사안 조치결과 보고 공문 사본 1부: 공개 • 제6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취소 공문 사본 1부: 공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각1부: 공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각1부: 공개 • 재심청구에 따른 가해자 측 의견서 사본 6부: 공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대해학생 상황설명서 사본 12부: 공개 나. 피해학생 상황설명서 사본 12부: 공개 다. 피해자(OOO) 사본 1부: 공개	아동청소년 담당관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3	2013. 3.11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가. 피해학생 상황설명서사본 12부 나. 피해시으(OO) 사본 1부 다. 피해자(OO) 진술서 사본 1부 라. 가해자(OO) 진술서 사본 1부 마. 가해자(OO) 진술서 사본 1부 바. 피해자(OO) 질기 사본 1부 사. 가해자(OO) 열기 사본 1부 사. 가해자(OO) 전술서 사본 1부 자. 가해자(OO) 전술서 사본 1부 자. 가해자(OO) 진술서 사본 1부 자. 가해자(OO) 지술서 사본 1부 차. 가해자(OO) 자신 가본 2 기부 차. 가해자(OO) 자신 가는을 위한 방문지원 요청공문 사본 1부 타. 피해자(OO) 재심청구서 사본 1부 파. 피해자(OO) 재심청구서 사본 1부 파. 피해자(OO) 재심청구서에 대한 답변 서 사본 1부 하.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 구두신청에 대한 답변서 사본 1부	라. 가해자(OOO) 진술서 사본 1부 : 부분공 개(열람) 마. 가해자(OOO) 진술서 사본 1부 : 부분공 개(열람) 바. 피해자(OOO) 일기 사본 1부 : 공개 사. 가해자(OOO) 편지글 사본 1부 : 비공개 아. 피해자(OOO) 진술서 사본 1부 : 공개 자. 가해자(OOO) 진술서 사본 1부 : 공개 자. 가해자(OOO) 동시글 사본 1부 : 비공개 차. 가해자(OOO) 동시글 사본 1부 : 비공개 카. 학교폭력 사안의 자문을 위한 방문지원 요청공단 사본 1부 : 공개 타. 피해자(OOO) 재심청구서 사본 1부 : 공 개 파. 피해자(OOO) 재심청구서에 대한 답변 서 사본 1부 : 공개 하.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 구두신청에 대한 답변서 사본 1부 : 공개	법무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1.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의견서 일체 2. 행정심판위원회 녹취록 3. 이외에 재결에 관련된 정보일체	비공개: 제1, 5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제(호에 의거 위원 이 발언한 내용에 해당하는 녹취록 비공개, 위원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의견서 비공 개, 이외에 재결에 관련된 정보로서 담당자 검토의견서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로 보아 비공개	법무 담당관
4	2013 4.1	▶ <mark>직권심의</mark> 최근5년간 분기별택시부가 가치세 환급금 현황 공개청구 법인별 구분, 택시기시수 포함	부분공개 : 제1호 법인별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보는 비공개 다만,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 측 면에서 세무서별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액을 공개	택시 물류과
		▶ <mark>직권심의</mark> ○ ○역 침수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부분공개: 제6호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언론 등에 기 공개 되었고, 시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는 수사기 관에 제공되어 수사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기에 시 감사결과서의 보고서 내용 중 개인 · 법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익명으로 처 리하여 공개	감사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역신설 사업) 관련 의견제출 알림」 문서	비공개: 제5, 8호 「○○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며, 현재 △△역 역사가 결정 되지 않아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특정 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교통 정책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5	2013 4.15	▶이 <mark>의신청</mark> 서울시와 ㅇㅇ도시철도 민자시업자와의 협 약서	부분공개 : 제7호 민원처리와 관련된 협약서 : 공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어떤 것인지 서울시 의견 : 공개	도시철도 공무부
			계약공기 '14.11.14일에 대해 명백한 사업시행 자의 귀책사유로 연기될 경우 위약패널티 근 거 : 공개	
			다만, 당초 총 사업비와 사업비 구성 상세내역 등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 <mark>직권심의</mark> 2012년도 12월부터 2013년도 현재 및 앞으로 짜여진 당직명령부	비공개 : 제2호 청사관리(방호) 업무경우 공개될 경우 테러 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 결정	총무과
		▶ <mark>직권심의</mark>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계 획서	부분공개: 제6호 청구인이 요청한 행정정보는 계획이 수립되 어 진행중인 사업으로 민원발생 개연성 등 을 들어 비공개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토 록 하고, 다만, 자문위원단 명단과 같은 개인정보에	보건의료 정책과
			관한 사항은 가리고 공개	
		▶ <mark>직권심의</mark>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지번(위치정보)가 더해진 자료	비공개 : 제1호 전국 사업체조사 통계자료는 비공개를 전제 로 조사된 자료이며,	정보공개 정책과
			청구인이 요청한 행정정보는 통계법 제30조 등에 따라 '통계정보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비공개	
6	2013 5.7	▶이 <mark>의신청</mark> 서울시 암사취수장 '05년 1/4분기 이후 원수 기준 오염도 측정결과 중 "불검출로 표기된	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불검출로 표기된 로우 데이터 값"은 공개하되.	상수도 연구원
		로우 데이터 값"	불검출로 표기한 값을 표시할 경우 로우데이 터값이 유효하지 않은 정량화할 수 없는 측 정 값이므로 자료의 공개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	
	2008년	▶이의신청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비밀문서 목 록, 비밀분류 이유	부분공개: 제2호 목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목록 중 제목 만으로도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는 부분은 가려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밀 분류 이유는 비공개	총무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7	2013 6.13	▶ <mark>직권심의</mark> 120 다산콜센터 각 위탁업체 운영장부(출납 장부 및 주거래은행 통장사본)	비공개 : 제7호 120 다산콜센터 각 위탁업체 운영장부는 경 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시민봉사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 북촌 한옥 지원현황	비공개: 제6호 한옥수선 등에 따른 개인별 비용지원 현황 (지번, 금액, 지원 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 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청구인에게 '북촌 한옥 지원비용 및 지원건 수'는 공개	건축 기획과												
		▶ <mark>직권심의</mark>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자료	비공개: 제6, 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현황, 기술인력 소득증명원 등은 개인 사생 활 침해 및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 한 자료로 비공개 대표이사의 재직증명원은 부존재 자료	재생 지원과												
														▶ <mark>직권심의</mark> 120 민원상담 내역	비공개 :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통신 및 대화비 밀의 보호)에 의거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 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못하도 록 되어 있어 비공개	시민봉사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인사위원회 회의록('12.7.1 〜 현재까지)	비공개 : 제5호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무원의 정계, 승진, 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 업 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 공개	인사과												
		▶이 <mark>의신청</mark> 인권센터 조사내역서 중 진정인 조사내역은 공개하고, 피진정인 조사내역은 비공개 부분 에 대한 공개 청구	비공개 : 제6호 인권센터 조사내역서 중 진정인 본인의 조사 내용이 아닌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 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에 비공개	인권 담당관												
8	2013 6.25	▶이 <mark>의신청</mark>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기준 표 정비용역 사업에 관한 정보	부분공개: 제6호 개인성명은 소속업체명, 참여임무 등의 정보 와 결합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상당성이 인정되어 비공개하 고, 그 외 제안서 및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 력 임무, 사업착수일자 등은 공개	정보공개 정책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8	2013 6.25	▶이 <mark>의신청</mark>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관련해 현재까지 실 태조사가 완료된 구역 모두의 개별자산평가 금액 목록	부분공개 : 제3, 6, 8호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은 특정 개인의 재 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 우 개인의 재산보호에 중대할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 정 및 해제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 기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고, 실태조사 감정평가 등에 관한 기준은 공개	재생 지원과
		▶ <mark>직권심의</mark> 석면피해 구제자 명단 요청	비공개 : 제6호 석면피해 구제자 명단은 석면피해 인정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질병명 등이 수록된 개인 민감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기후 대기과
		▶ <mark>직권심의</mark> 000의 2007~2010년 재직근무지 및 직명 과 보직	비공개: 제6호 OOO의 '07년~'10년까지의 재직근무지 및 직명과 보직에 대한 정보는 경력관리사항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전문성과 상관없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공개	인사과
		▶ 사전심의 토지 등 소유자명부 및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포함), 실태조사 조사인명부(전화번호 포함) 정보공개 청구시 이름, 주소 이외에 전화번호의 공개여부	부분공개: 제6호 전화번호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보호되어 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전화번호를 포 함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재생 지원과
9	2013 7.9	▶이 <mark>의신청</mark>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현황, 활동현 황, 자문현황	부분공개 : 제6호 위원회 위원명단은 이름, 직위는 공개 회의록 경우 피해아동 보호측면에서 사례개 요, 처분결과 부분공개	아동복지 센터
		▶이의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자문)결과('10. 5. 14. 명일근린 공원)	부분공개 : 제6, 7호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결과가 종료된 사항이 고, 청구인이 개인정보, 경영 · 영업비밀을 제 외하고 요청하고 있어 재결서 내용 중 이 부 분을 가리고 부분공개	토지 관리과
		▶ <mark>직권심의</mark> 금천구 워킹스쿨버스 관련 민원 정보공개 '12.2월~'13.5월까지 금천구 워킹스쿨버스 운 영 및 참여자의 근태 등에 관련된 진정 내용 및 민원(민원인 성명 포함)	비공개 : 제6호 민원내용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 보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가 리더라도 민원 내용에 포함된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보행 자전거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9	2013 7.9	▶ <mark>직권심의</mark>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관련 면접관 각각의 점수 ▶ <mark>직권심의</mark> 평생강사 면접배점 내용	비공개: 제5호 면접관 각각의 항목별 점수에 대하여는 비공 개 다만, 심사위원 이름은 가리고 각 면접관의 총점은 공개 현재 '서울시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2차 강 사공개모집이 진행중인 관계로 추후(정보공 개 청구시) 공개	평생 교육과								
10	2013 7.22	▶이의신청 2012년도 서울시 추가 임용면접시험 평정결 과 3명의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별 면접 점수(평정기록)	비공개 : 제5호 면접관 각 항목별 면접점수는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제5호의 시험 · 인사 · 의사결정과 정에 해당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인재 개발원								
		▶이의신청 2012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527호 참조)과 관련	부분공개 : 제5호 청구인이 요청한 법률자문 질의서는 공개하고, 법률자문 결과(회신)는 법률자문내용이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 토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하여 비공개	주택 정책과								
		▶ <mark>직권심의</mark>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법률 자문 결과보고	비공개: 제5호 법률자문 결과(회신)는 법률자문 내용이 지 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5호의 의사결정과 정 및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지구단위 계획과								
			_						-	▶ <mark>직권심의</mark>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갈등 해소 T/F지원팀회의결과 및 회의자료(47차)	비공개 : 제5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 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요청한 관련 자료 가 공개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심화될 우려	지구단위 계획과
		▶ <mark>직권심의</mark>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결과(세운지 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원형택지)	가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 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자료로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 <mark>직권심의</mark>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비상대책 T/F팀 회 의결과(회의록 및 회의결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0	2013 7.22	▶ <mark>직권심의</mark>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주민갈등 해소 T/F팀 실무추진단 회의결과 보고(11차)		지구단위 계획과
		▶ <mark>직권심의</mark>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비상대책 T/F팀 회 의결과(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해 서울 시 대책을 논의한 제목문서)		
11	2013 7.31	▶이의신청 '13년 1월~6월 초과근무 수당 지급(월별, 직 원별시간, 업무 내용, 금액) (부분공개) 월별, 직원별 시간과 금액 공개, 이름 비공개	비공개 : 제6호 '각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급받은 초과 근무 수당'은 공무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로 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6호에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보도환경 개선과
		▶이의신청 시장의 한달간 일정공개, 집 전화, 집주소 (부분공개) 한달간 시장 일정공개(일정사이트 포함), 집주소 공개, 집전화 비공개	비공개 : 제6호 시장의 지난 한달간 일정(6.17~7.19)과 서울 시장 홈페이지 '시장일정표' 사이트(http:// mayor.seoul.go.kr/today)를 공개하였고, 향후 한달간의 확정된 일정은 부존재한 자료로 볼 수 있어 청구를 통해 더 이상 얻을 실익이 없 다고 판단됨	총무과
			집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어 비공개	
		▶ <mark>직권심의</mark> '13.3.22 OO어린이집 지도점검 전 민원내용	비공개: 제3, 6호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은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보호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민원내용의 개인 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 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에 의거 비공개	출산육아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용마터널 면목동 방향 환기소 및 오염저감시 설 시공도면과 설비내용	비공개 단, 설계변경 완료 후 공개 : 제5호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현재 도로계획과에 서 설계변경검토 · 승인여부 중에 있어 정 보공개법 제9조제(항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비공개 결정을 인용하되, 설계변경 검 토 · 승인이 완료되면 공개	도시기반 시설본부 설비부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1	2013 7.31	▶ 직권심의 홍지문터널 측정소 적정 샘플링 위치 선정을 위한 터널주변 대기질 조사결과 ▶ 직권심의 2013년 1분기 홍지문터널 대기질 측정결과 보고	공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조사계획 등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개 다만, 대기질 측정결과가 터널인근 측정값임 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	보건환경 연구원
12	2013 8.28	▶이의신청 '08.12.31. 실시한 한강특화공원 매점설치 및 운영공고 관련 자료 (부분공개) 한강공원 카페(매점) 설치 및 운영 사업자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공개, 입찰자 들이 제출한 문서 등 비공개	부분공개 : 제6, 7호 '입찰자들이 제출한 문서' 에는 사업계획 및 재무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 노하우와 전략 등 법인의 경영 · 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 다만 선정업체의 경우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 · 영업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부분공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본 제공 '회의록'은 평가위원 이름, 소속을 가리고 부분공개 '평가배점표 및 평가서' 는 평가위원을 가리고 위원별 총점 공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통보 관련 문서일체,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체결을 위히 여 제출한 문서일체, '기타 이 공고와 관련한 문서 일체' 경우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 · 영업 이익에 해당되는 영업 노하우, 전략 등의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체결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증 관련 문서'는 부존재	한강 사업본부 (운영부)
		▶제3자 이의신청 재심회의록 및 가해 학생측 제출문서, 증거 자료 (부분공개) 위원성명 등을 제외한 재심회의 록, 이름 등을 제외한 가해학생측 의견서 공 개	부분공개: 제6호 소관부서에서 '가해자측 의견서'를 개인정보 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비공개 할 것을 제3자(가해자측) 이의신 청한 것이나, '가해자측 의견서'는 가해자측 부모가 재심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직접 진 술이 아니어서 제3자가 주장하는 심의 · 의 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라 할 수 없 는 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아동청소년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13.4.18과 '13.5.21에 서울시 조사담당관 기강 감찰팀에서 작성한 신청인 지장이 찍힌 진술 서 및 문답	공개: 제4호 비록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진행중 에 있어 수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진술 등이 일부 이루어진 현 시점에 서 지장초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문답서는 본인의 자 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	조사 담당관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2	2013 8.28	▶ <mark>직권심의</mark> 사건과 관련된 사건당일의 서울시 기강감찰 팀 직원 명단	부존재 : 제5호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부존재한 자료이며,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비노출 감찰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조사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서행심 2012-000 개별주택 가격결정취소 사건의 '13.1.28 심리기일 및 구술 심리의 녹 음기록	비공개 : 제1호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행정 심판법」제 41조「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위 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비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	법무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한강편의점 관련 공문 및 자료요청	부분공개: 제5, 7호 법률자문 질의서는 공개하고, 법률자문 결과 는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어 비공개 단속계획은 점검·단속 시기와 일정, 점검 담당공무원 등 향후 업무와 관련 해서 공개 될 경우 관리, 감독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강 사업본부 (운영부)
13	2013 9.2	▶이의신청 00운수 충전소 노사협약서 및 2013년 7월 10일 충전소 관련된 서류일체	공개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경영·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충전소명은 기 공개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공개	택시 물류과
		▶ <mark>직권심의</mark> 서울 32사 6701호 차량의 2012년 11월 12일 이후 LPG 보조금 및 카드 보조금 내역	부분공개 : 제6호 특정치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일자, 사용 리터, 보조금 등 지급내역은 개인택시 운전 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비공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보조금 지급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12.11.5~'13.6.26까지 총 50회에 걸쳐 유가보 조금 지급한 사실을 부분공개	택시 물류과
		▶ <mark>직권심의</mark> 공가(共架)회선 관련 소송 추진계획(안)	비공개 : 제5호 '공가회선 관련 소송추진계획(안)'은 재판진 행에 있어 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소송을 하	보도환경 개선과
			기 위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판단됨	
			따라서, 주관부서의 비공개 결정근거를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대신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공개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3	2013 9.2	▶ <mark>사전심의</mark> '09년 00운수에 대한 전액관리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 한바, 당시 적발 공무원의 명단	공개 : 제6호 라목 개인에 관한 정보 예외규정인 정보공개법 제 9조제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 명 · 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명 과 당시의 직위는 공개토록 결정	교통 지도과
14	2013 9.13	▶ 이의신청 서울시 지정금고 현황 (부분공개) 금고은행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관련 법령(조례) 공개, 연평균 계좌잔액, 이자 수익금, 이자율, 협력사업비	부분공개: 제7호 연평균 잔액 및 이지수익금 경우 서울시 예 산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은행의 경 영·영업상 비밀과는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개토록 하고, 시정협력사업비 및 이자율은 시 금고 입찰과 관련된 업체의 영업전략으로서 경영·영업 상 비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7호에 해당되는 정보로 비공개	재무과
		▶ <mark>직권심의</mark> 1959년부터 1962년까지의 성북구 농지분배 관련 정보	비공개 : 제6, 8호 청구인의 요청 자료는 특정되지 않은 광범위 한 정보로, 개인의 성명, 주소, 개인사 등 개 인정보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재산권 행 사 등에 도용될 소지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 는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 되는 정보로 비공개	민생 경제과
15	2013 10.10	▶이의신청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	비공개 : 제2호 교통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는 중요한 대시민 서비스 관련 정보로, 데이터의 조작 또는 손실시 교통 혼란 등 막대한 혼란을 초 래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 항제2호 의거 비공개	교통정보 센터
		▶ <mark>직권심의</mark> 2012.8월 감사과에 제출된 경위서(진술서, 의 견서 등)	부분공개: 제6호 확인서 및 경위서의 경우 이미 관련 감사 및 소송 등이 종결되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 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개토록 하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제6호 의거 비공개	민원해소 담당관
15	2013 10.10	▶ <mark>직권심의</mark> 서울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외부용 역 갈등영향보고서	비공개: 제5호 요청 자료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갈등 대응을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갈등 해소 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의거 비공개	갈등해소 담당관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 <mark>직권심의</mark>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안)	비공개 : 제5호, 8호 2030 서울플랜(안)은 현재 미확정된 자료로, 내부 검토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도시 계획과
		▶ <mark>직권심의</mark> 2009년 시행한 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설문조 사 결과 및 원자료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료 내 포함된 지역의 개발계획이 사전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의거 비공개하며, 국토교통부 심의를 득하고 계획 확정 후 설 문조사 결과와 함께 일괄 공개	
16	2013. 12.4	▶ <mark>직권심의</mark> 2012.1.1.~2013.8.31. 서울시 퇴직자 현황 (이름, 직위, 일시, 재직 기간, 재직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 퇴직 사유 등)	부분공개 : 제6호 요청 정보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 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 조제(항제6호 의거 비공개 다만 5급 이상 정년퇴직, 명예퇴직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 리 규칙 제21조에 의해 공보에 게재되는 수 준(성명, 소속, 퇴직사유, 퇴직 일자)으로 공개	인사과
16	2013. 12.4	▶ <mark>직권심의</mark>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녹음원본 파일	비공개 : 제5호 녹음 원본파일은 공개시 위원들의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개진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 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의거 비공개	버스 정책과
		▶ <mark>사전심의</mark>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제3자 발급 가능 여부	비공개: 제5, 8호 요청 정보의 제3자 발급시 무허가 건물 거래 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 성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5호 및 제8호 의거 비공개	건축 기획과
17	2013. 12.27	▶이 <mark>의신청</mark> 최근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에서 질의한 공 문서 사본과 회신한 공문서 사본 일체	비공개 : 제5호 현재 감사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원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 9조제/항제5호 의거 비공개	주거 재생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7	2013. 12.27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 국가정보통신 IP응용 서비스(인터넷 전화) 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자별 평가점수 기술평가(실적평가), 가격 평가 결과	비공개: 제7호 요청 정보는 타사의 사업실적 및 영업전략 등이 유추가능한 정보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영업상의 지위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 려가 있으며, 업체명을 가린다 하더라도 기 공개된 타 정 보와 결합하여 해당 업체를 유추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의거 비공개	총무과
		▶ <mark>직권심의</mark> 2013년 서울개인택시조합 택시요금변경신고 서 중 이사회결의결과 사본	공개 택시요금의 조정은 이미 완료된 사항 으로 그 결과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 되었으며, 요청 정보인 택시요금 변경과 관련된 이사 회 결의결과가 조합의 내부정보에 속하는 정 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 수립한 택시요금 조정안과 상이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어 공개	택시 물류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4년도 개최내역



S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	2014. 1.9	▶이 <mark>의신청</mark> 아파트비리 특별감사 연도 추가 연명부 제출	비공개: 제4, 5호 요청 정보는 경찰수사 및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향후 동종의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4호 및 제5 호 의거 비공개	공동 주택과			
		▶ <mark>직권심의</mark> 하천부지 보상금 지급 여부	정보부존재 요청 정보는 생산되지 않은 정보로 부존재 정보에 해당함	하천 관리과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에서 올빼미버스 노선을 만들 때 ○○ 에서 받은 통신 관련 빅데이터	비공개: 제7호 정보의 소유권이 정보를 생산한 업체에 있고, 해당 정보는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7호 의거 비공개	정보 시스템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아동학대상담원 근무일지 (12.13,목)	비공개: 제1호 아동학대상담원 근무일지는 통상 학대아동 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아동 복지방법원 제65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 항제1호 의거 비공개	아동복지 센터			
		▶ <mark>직권심의</mark>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 계획 열 람공고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공개: 제5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 단위계획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요청 자료는 내부검 토중인 사안 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 공개	역사도심 관리과			

버스 정책과 한강사업 제9조제 되어 있 부 내역(및 처리
제9조제 ^{본부} 되어 있 부 내역(
뚝도 : 개인의 아리수 우려가 정수센터 호 의거
도시기반 될 경우 시설본부 을 미칠 레항제4
아동 한 학교 청소년 3개하고, 담당관
상담확 경우 개 해할 우 베항제6
111 07110
마포 사신청서, 소방서 할비명세 오염토 의 안전 정보 공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3	2014. 2.17	▶이 <mark>의신청</mark> '13년 3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제도 개 선 추진 계획, '13년 10월 폐기물 처리체계 개 선 방안 숙의 관련 정보	부분공개: 제5호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 문서 중 자치구 순위 등을 제외한 평가개요 및 개략 적인 평가결 과는 공개하고, 그 밖에 중간 용역보고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및 결과보고는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 괴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대책 수립 시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의거 비공개	생활 환경과
		▶ <mark>직권심의</mark> 롯데칠성 개발구상 T/F 검토 회의 관련 롯데 칠성 부지 개발계획 및 진행 사항 등	비공개: 제5호, 8호 요청 정보는 현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으로 공개될 경우 지역개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부동산 투 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 므로 주민공람시까지 정보공 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의거 비공개	공공개발 센터
		▶ <mark>직권심의</mark>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비공개:제6호 차량별 주유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타 정보와 결합하여 운전자의 근무상황 및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개연성이 있 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의거 비공개	택시 물류과
4	2014. 3.4	▶제3자 이의신청 서울 광진구 뚝섬로 OO길 O 태양광발전사 업시 제출한 모든 서류	부분공개 : 제6호 요청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 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 항제 6호에 의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 외하고 부분공개	녹색 에너지과
		▶ <mark>직권심의</mark> '사망환자 처리현황 보고' 결재 문서	비공개 : 제1호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 공개	어린이 병원
		▶ <mark>직권심의</mark> '제약회사의 의약품 납품비리 제보에 따라 보건소, 병원 납품 실태 조사계획' 결재문서	비공개 : 제5호 해당 조사는 현재 중단된 사안 이나 향후 동 일 건을 포함한 유관 감사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 시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 9조제(항제5호 의거 비공개	조사 담당관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4	2014. 3.4	▶ <mark>직권심의</mark>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검토보고' 결재문서	부분공개: 제6호 요청 정보 중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차량번호 및 사건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분공개	조사 담당관						
		▶ <mark>사전심의</mark> 사단법인 00000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분공개 : 제7호 요청 정보 중 협회 정관에 대하 여는 공개하 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 개법 제9 조제1항제7호 의거 부분공개	생활 보건과						
5	2014. 4.2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 주요지역 주택시장 현장 조사 용역결 과 보고서	부분공개: 제5, 6, 7호 요청 정보는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및 제7호에 의거 개인정보및 업소명, 지역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주택 정책과						
	-	▶ <mark>직권심의</mark>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종합 계획 수립 및 재 해지도 작성 용역 결과 보고서	정보부존재 요청 정보는 현재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이 미완료된 상태로 부존재 정보에 해당	하천 관리과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지하철 양공사(서울 메트로, 도시철도 공사에 발송한 교통카드시 스템 구축 제안서 검토요청 건	비공개 : 제4, 7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 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 칠 위험이 있으며, 제안서 내 제안 업체의 경 영 · 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	교통 정책과						
								▶ <mark>직권심의</mark> 서초0000 0단지 마을 공동체 사업 취소 요 청 공문 및 신청인 명단	비공개: 제4, 6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 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 칠 위험이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	마을 공동체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우면동 0000 0단지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민원 내용 및 서명 자료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6	2014. 4.14	▶ <mark>직권심의</mark> 2013년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	비공개 : 제2, 5, 6호 요청 정보는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의 보안취 약점, 개인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 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시스템 보안관리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개 연성이 있으며, 평가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6	2014. 4.14	▶ <mark>직권심의</mark>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의사록 및 위원 명단	비공개 : 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서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공개	법무 담당관
		▶이 <mark>의신청</mark>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옥 내급수관 교체 지원금 관련 정보	부분공개: 제6, 7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공적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단체의 계좌번호는 단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개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를 제외 하고 부분공개	강동수도 사업소
		▶ <mark>직권심의</mark>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안) 심의 관련 진정민원	비공개: 제5, 6호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도시계획 관리전문 위원실
		▶ <mark>직권심의</mark>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임금 또는 단체협약서	비공개 : 제7호 요청 정보는 단체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7호 의 거 비공개	생활 환경과
7	2014. 4.24	▶이 <mark>의신청</mark> 주택정책실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용역 결과 전문	공개 요청 용역 결과는 주택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적 성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공개	주택 정책과
		▶이 <mark>의신청</mark> 최근 5년간 선불 교통카드 발급 현황	정보부존재 요청 정보는 서울시로부터 시업권을 부여받 은 상법상 회사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된 정보로,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 상 시에서 생산·접수하는 정 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부존재에 해당함	교통 정책과
		▶ <mark>직권심의</mark> 000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여부 등	공개 대상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 기재 사항 중 청구인이 요청한 항목의 일부는 이 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요 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 로 공개	토지 관리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7	2014. 4.24	▶ <mark>직권심의</mark> 옥인1구역 사업추진 방향 검토회의 결과보 고,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보류 심의자료 보강하여 추후 재심의	주거 재생과
8	2014. 5.26	▶이 <mark>의신청</mark>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교통 영향 관련 자 료	공개 요청 정보는 주민협의회에서 열람의 형태로 기 제공된 바 있는 자료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도로 계획과
		▶이 <mark>의신청</mark> 공공건축가 활동 현황	부분공개 : 제5호 공공건축가 활동내역은 진행중인 사업의 경 우 공공건축가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 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활동이 종료된 사안에 대하여 공개	건축 기획과
		▶ <mark>직권심의</mark> '시설관리 및 경비 근로자 직접 고용 관련 직 책수당 신설 계획(안)' 결재문서	부분공개: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대상자 의 구체적인 임금(연봉)액(산출내역 포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	은평병원 총무과
		▶ <mark>직권심의</mark> 미디어협동조합 설립동의자 명부	정보부존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자치구 위임사무로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 상 시에 서 생산ㆍ접수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존재 정보에 해당	사회적 경제과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 나눔카 서비스 운영 현황 보고' 결재 문서	비공개 : 제7호 나눔카 서비스는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 으로, 요청 정보는 민간사업자의 실적 등 경 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교통 정책과
		▶ <mark>직권심의</mark> '제2롯데월드 교통개선대책 점검 회의 결과 보고 결재문서	비공개: 제5호 요청 정보는 세부사업에 대한 협상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교통개선대책 수립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5 호 의거 비공개	교통 정책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9	2014. 6.16	▶이 <mark>의신청</mark>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서 등	부분공개: 제5호 요청 정보 중 실시협약서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사업완료 전 공개 시 업무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호에 의거 비공개 하고, 주민협의회 회의록은 발언자명을 제외하고 공개	도로 계획과
		▶이의신청 서울추모공원 관련 행정1 부시장 주재 대책 회의 및 행정1,2부시장, 복지국장 긴급회의 등 회의자료	정보부존재 내부 회의자료로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 으므로 정보부존재에 해당함	어르신 복지과
		▶이 <mark>의신청</mark> 서울시민건강위원회 일반 시민 공모위원 선 정 채점표	비공개: 제5, 6호 타인 채점표는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결 과가 담겨져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별 채점표에 기재된 심사위원명은 공개 시 면접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 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보건의료 정책과
		▶ <mark>직권심의 ※ 재심의</mark> 옥인1구역 사업추진 방향 검토회의 결과보고 및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부분공개: 제5호 요청 정보 중 붙임자료(관련도면 및 비교표, 개선비용 추산 검토서)는 공개 시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5호에 의 거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결과보고 본문에 대해서 공개	주거 재생과
		▶ <mark>직권심의</mark> 환자 CCTV 복제 신청	정보부존재 관련 지침에 의거 요청 정보가 삭제되어 공 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부존재 에 해당함	강남 소방서
		▶ <mark>직권심의</mark> 다산콜센터 OOO 팀장과 민원인(본인)의 대 화록 음성파일 원본(13.11,19.)	비공개: 제6호 녹음된 음성은 고유한 개인정보로서 요청한 음성파일에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상담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6 호에 의거 비공개	시민봉사 담당관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0	2014. 6.30	▶이 <mark>의신청</mark>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직 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비공개 :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면접평가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재 채용과
		▶ <mark>직권심의</mark>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관련 건축허가필증, 착공신고필증, 실시계획 승인공문 등 관계 인·허가서류	부분공개: 제7호 건축하가서, 착공신고필증 관련 공문은 사업 관련 개요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공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은 건축주에게 기 배부되어 현재 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며, 실시계획 승인공문은 타기관 소관사무로 정보부존재에 해당 그 밖에 관련 도면 등 관계 인·허가 서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 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 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건축 기획과
11	2014.	▶이 <mark>의신청</mark>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검토회의 결과보고	비공개: 제5호 임시사용 승인여부에 대해 내부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 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 공개	건축 기획과
		▶이의신청 다산콜센터 운영 등 관련 정보	부분공개: 제6, 7호 다산콜센터 업무조정계획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6호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위탁사업 용역보고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호에 의거 비공개	시민봉사 담당관
		▶이 <mark>의신청</mark>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운영 시간 미준수 등을 현장 점검한 결과보고서	비공개 : 제7호 점검대상 기관의 민감한 경영 · 영업에 관한 사항을 다수 포함하여 공개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출산육아 담당관
	_	▶이의신청 '어린이집 점검결과 통보(2014. 7.8.노원구)' 외 결재문서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 법 제9조제(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2	2014. 8.8	▶이의신청 한방의료관광 체험프로그램 공모단체의 공모자료	비공개 : 제7호 공모단체의 공모 제출문서에는 사업추진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해당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관광 사업과
		▶이의신청 2007-19차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등 심 의 관련 자료	부분공개 : 제6호 2007-19차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은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공인에 해당하 므로 위원 명단은 공개하되 위원 연락처는 공개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 항제6호에 의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건축 기획과
		▶이의신청 '서울과학관 건립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방문(협의) 결과' 결재문서	비공개: 제5호 청구 문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기 관간 협의내용을 담은 문서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공개 시 향후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정보공 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경제 정책과
13	2014. 8.26	▶이의신청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 관련 임시사용승인 거부 후 제출된 시민자문단 자문내용(롯데 측이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 던 보고서 관련 자문내용)	비공개 : 제5호 임시사용 승인여부에 대해 내부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 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 공개	건축 기획과
		▶ <mark>직권심의</mark>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2—516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청구심판 관련 심리 당시 피청구인 진술 녹취록	비공개 : 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 이 발언한 내용을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체 녹취록 중 피청구인 진술만을 분 리하여 공개할 경우 발언내용이 왜곡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거 비공개	법무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투자심사 의뢰(여의천 하천 정비사업)' 결재 문서 관련 여의천 하천 정비사업 내용 일체	공개 현재 투자심사업무가 종료되어 공개시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 므로 공개	하천 관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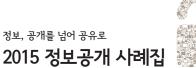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4	2014. 9.12	▶ 이의신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 련 종결된 행정소송 정보	공개 요청 정보는 이미 재판이 종결된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하천 관리과
		▶이 <mark>의신청</mark> 공원조성과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목록과 심사분석의뢰서 관련 서류	부분공개 : 제5, 8호 보상이 미완료된 사업의 심사분석의뢰서는 공개시 보상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호 및 제8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사업목록 및 보상 이 완료된 사업의 심사분석의뢰서는 공개	공원 조성과
	-	▶ <mark>직권심의</mark>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민 원이 발생 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 례(주소, 소유주, 연락처)	비공개 : 제6호 민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로 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생산되지 않 은 정보로서 정보 부존재에 해당	공원 조성과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 토목7급 5년치 (2009~2013) 기출문 제	부분공개: 제5호 공통과목을 제외한 소수직렬 과목 기출문제 의 경우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5 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공통과목 기출문제는 공개	인재 채용과
15	2014. 10.2	▶이의신청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2차년도 사업제안 서	비공개 : 제6, 7호 공모단체의 사업제안서에는 개인정보 및 사 업추진전략 등 경영 ·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 어 있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	마을 공동체 담당관
		▶이의신청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신청 및 보완 관 련 서류	비공개 : 제5, 7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	건축 기획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5	2014. 10.2	▶이의신청 ○○아파트 실태조사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하도록 구청에 통보한 문서	공개 현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요청 자료는 기 공개된 바 있는 실태 조사 결과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절차를 포함 하고 있으며, 정보 내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단체명 등은 익명화 되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단 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공동 주택과
16	2014. 10.22	▶이의신청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00마을 2차년도 심사자료	비공개 : 제6, 7호 사업제안서 및 심사자료에는 개인정보 및 사 업추진전략 등 경영 ·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 어 있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 나머지 기타 취득자료 및 확인자료는 생산 · 접수되지 않은 정보로 부존재에 해당함	마을 공동체 담당관
	-	▶ <mark>직권심의</mark> 잠실야구장 편의시설 확충 관련 검토 답변내 용	공개 요청정보에 포함된 사업계획은 개괄적인 사 항으로서 공개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	▶ <mark>직권심의</mark> '버스운행실태점검원 근무 명령(2014년 4월)' 결재문서	비공개 : 제5호 요청정보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공개될 경우 비노출 방식의 업무 수행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다만 해당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개	버스 정책과
	-	▶ <mark>직권심의</mark> 택시불편 관련 민원사항 내용 (승차거부 시 간)	각 하 해당 청구는 질의적 성격으로 정보공개법 시 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의거 정보공개 청 구가 아닌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각하	시민봉사 담당관
17	2014. 11.4	▶이의신청 0001파트 절수조사 보고서	부분공개: 제3호 배관배치도 및 설치도는 공개시 테러 및 범 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나머지 보고서는 공개	토목부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7	2014. 11.4	▶ <mark>직권심의</mark> 우이~신설간 경전철 사업 서울시, 출자자간 실시협약서 전부(등본)	비공개: 제7호 요청 정보에 다수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도시철도 사업부
		▶ <mark>직권심의</mark> '아파트지구 및 한강변 관리 방안 용역 관계 관 검토회의' 결재문서	비공개: 제5, 8호 관련 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공개시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으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의거 비공개	공동 주택과
		▶ <mark>직권심의</mark> '부모와 함께 하는 녹색식 생활 체험교육 일 일추진현황 보고' 결재문서	부분공개: 제6호 붙임문서는 교육대상자의 이름, 사진 등 개 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나머지 결재문 본문은 공개	농업기술 센터
		▶이의신청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결과 단지별 적출사항	비공개 : 제6, 7호 요청 정보 내 개인정보 및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단체 등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	공동 주택과
18	2014. 12.3	▶ <mark>직권심의</mark> 일반행정 9급 선택과목 원점수별 조정점수	공개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에서는 비공개 사항은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는 바, 안행부 지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인재 채용과
		▶ <mark>직권심의</mark>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개장 관련 회의결 과 보고' 결재문서	공개 당시 내부검토중에 있던 사안이나 공개시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발생의 우려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 거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원녹지 정책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8	2014. 12.3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 상기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데 이터	부분공개: 제7호 개별 상가가 특정된 형태로 공개될 경우 해당 상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호에의거 상기명 및 주소 중 상세지번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소상공인 지원과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평가결과 보고' 결재문서	비공개 : 제7호 기관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기관의 사회적 지위 저하 및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아동 청소년 담당관
		▶ <mark>직권심의</mark> 민원인 000의 행정심판 접수서류 일체	비공개: 제5, 6호 행정심판 계류중인 건으로 내부검토과정에 있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법무 담당관
19	2014. 12.26		부분공개: 제6호 요청 정보에 포함된 회원의 성명, 주소, 전 화번호, 직위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해 당하 며, 회사명은 공개	경제 정책과
		▶이의신청 김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공동수행 계약 자료 및 공유 수면매립면허 권리 양도양수 관련 협약	부분공개: 제5, 7호 계약서 본문 중 부지보상비 상세내역은 정 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부지보상비 상세내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타 기관 간 계약서 등의 붙임문서는 정보공 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경영·영업상 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	자원 순환과
	_	▶ <mark>직권심의</mark> 「쓰레기 매립지」 민원회신 결재문서	부분공개: 제6호 민원인 성명 등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답변 서는 공개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원인의 신상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자원 순환과

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9	2014. 12.26	▶ <mark>직권심의</mark>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및 '실태 조사 매뉴얼' 송부」 결재문서	비공개 : 제5호 인권실태 조사표 및 매뉴얼은 조사의 특성상 공개시 동종의 인권실태 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 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 공개	장애인 복지 정책과



발행일

 발행처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015년 2월 13일

T. 02-2133-5681 / F. 02-2133-0791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기획·편집 행정국장 김의승

정보공개정책과 **조영삼**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담당 주무관 **주서진**

제 작 이매진커뮤니케이션(02-6224-4061)

ISBN 979-11-5621-360-4

※ 본 책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